公私年金制度의 役割定立과 連繫强化를 위한 政策方案

元 鍾 旭
李 蓮 喜

韓國保健社會硏究院

머 리 말

우리 나라의 노후보장체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에 의한 사적제도로 구성되어있다.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으로 시작되어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제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이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 또한 재정불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상태로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수년 안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이후 지속적인 확대적용으로 외형적으로는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였으나 특수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하여 2048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공통적으로 재정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제도도입당시 가입자의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에 비해 과도한 급여수준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에만 몰두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공적연금의 특징중의 하나는 일단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라 하더라도 공적인 약속으로 인식되어 가입자나 운영자 모두 제도개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공적연금의 속성 때문에 특수직역연금과 같이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기금고갈

까지는 아직도 40여 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지금이라도 잘못 설계된 제도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제도개선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하고 아직 제도적 미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사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우리 원 종욱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이연희 책임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저자는 이 연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퇴직보험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금융감독원의 신기철 팀장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고를 읽고 논평을 해 주신 윤병식 연구위원, 석재은 책임연구원께 사의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0年　12月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 13

第1章 序 論 ····· 18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8
第2節 公的年金制度의 現況 ····· 20
第3節 私的年金制度의 現況 ····· 27

第2章 公私年金의 適正所得代替率 ····· 36

第1節 1996年度 都市家計調査資料分析을 통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現況 ····· 37
第2節 1999年度 都市家計資料分析을 통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 現況 ····· 43
第3節 國民年金과 企業年金에 의한 所得代替率 ····· 48

第3章 國民年金財政의 後世代轉嫁防止를 위한 收支均等保險料率 ·· 53

第1節 1999年度 基準 國民年金 保險料收入 不足額 推定 ····· 53
第2節 1988年度 基準 年齡別, 巨視變數假定別
收支均等保險料率 推計 ····· 67

第4章　公的年金의 貯蓄行態에 미치는 波及效果 ····· 91

第1節　保險料引上에 따른 加入種別 保險料 追加負擔規模 ····· 91
第2節　國民年金保險料가 家計의 貯蓄率에 미치는 影響分析 ····· 96
第3節　一般銀行의 運用資産減少에 따른 波及效果分析 ····· 109

第5章　私的年金의 活性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 115
第1節　年金制度와 課稅體系 ····· 115
第2節　退職金制度의 企業年金化 方案 ····· 132
第3節　企業年金의 導入과 最適勤勞者寄與率 選擇 ····· 155

第6章　公私年金制度間 役割分擔을 위한 制度改善 ····· 163
第1節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 163
第2節　持續可能한 老後所得保障體系 ····· 167

參 考 文 獻 ····· 176

表 目 次

〈表 1-1〉 現在의 給與 및 保險料 負擔水準이 維持되는
경우의 長期 財政推計結果 ····· 21
〈表 1-2〉 公務員年金財政 現況 ····· 22
〈表 1-3〉 公務員年金의 財政收支 展望 ····· 23
〈表 1- 4〉 私立敎員年金의 財政 展望 ····· 24
〈表 1- 5〉 軍人年金 財政 現況 및 展望 ····· 26
〈表 1- 6〉 公的年金制度別 保險料 및 給與方式 ····· 26
〈表 1- 7〉 退職金制度 適用者 推移 ····· 28
〈表 1- 8〉 退職金 支給方法別 企業分布 ····· 28
〈表 1- 9〉 金融機關別 退職保險(退職信託) 現況 ····· 31
〈表 1-10〉 取扱機關別 個人年金 販賣額 推移 ····· 35
〈表 1-11〉 金融機關別 個人年金商品 市場占有率 推移 ····· 35
〈表 2- 1〉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所得構成內譯(1996) ····· 38
〈表 2- 2〉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消費構成內譯(1996) ····· 39
〈表 2- 3〉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平均消費比重(1996) ····· 40
〈表 2- 4〉 家口主年齡階層別 平均所得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構成內譯(1996) ····· 42
〈表 2- 5〉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所得構成內譯(1999) ····· 44

〈表 2- 6〉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消費構成內譯(1999) ····· 45
〈表 2- 7〉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平均消費比重(1999) ····· 45
〈表 2- 8〉 家口主年齡階層別 平均所得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構成內譯(1999) ····· 46
〈表 2- 9〉 國民年金의 加入期間別 所得代替率 ····· 48
〈表 2-10〉 退職金의 企業年金轉換時 所得代替率 ····· 49
〈表 2-11〉 國民年金과 退職金에 의한 平均所得者(26等級)
所得代替率 ····· 51
〈表 3- 1〉 年度別加入者數 推移 ····· 54
〈表 3- 2〉 加入種別保險料率(1999年 以後) ····· 55
〈表 3- 3〉 標準所得等級別 所得代替率 ····· 57
〈表 3- 4〉 確定醵出型에 의한 保險料水準別 月給與額 및
所得代替率 ····· 62
〈表 3- 5〉 賃金上昇率 및 利子率 水準別 年間保險料收入
不足額(累計) ····· 64
〈表 3- 6〉 加入期間別 所得代替率 ····· 67
〈表 3- 7〉 年齡階層別 事業場加入者 現況 ····· 70
〈表 3- 8〉 35年加入 事業場 加入者 收支均等保險料率 ····· 73
〈表 3- 9〉 35年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 75
〈表 3-10〉 30年加入者의 收支均等保險料率 ····· 76
〈表 3-11〉 30年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 77
〈表 3-12〉 25年加入者의 收支均等保險料率 ····· 79
〈表 3-13〉 25年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 81
〈表 3-14〉 20年加入者의 收支均等保險料率 ····· 82

〈表 3-15〉 20年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 83
〈表 3-16〉 賃金上昇率 4%, 利子率 5% 時의 收支均等保險料 ····· 85
〈表 3-17〉 賃金上昇率 4%, 利子率 6% 時의 收支均等保險料 ····· 86
〈表 3-18〉 賃金上昇率 5%, 利子率 5% 時의 收支均等保險料率 ····· 87
〈表 3-19〉 賃金上昇率 5%, 利子率 6% 時의 收支均等保險料率 ····· 88
〈表 3-20〉 賃金上昇率 6%, 利子率 6% 時의 收支均等保險料率 ····· 89
〈表 4- 1〉 加入種別 所得申告者數 및 平均所得月額 ····· 91
〈表 4- 2〉 保險料引上에 따른 事業場加入者의 保險料追加負擔額 ····· 92
〈表 4- 3〉 保險料引上에 따른 地域加入者의 保險料追加負擔額 ···· 93
〈表 4- 4〉 保險料引上에 따른 全體加入者의 追加負擔 ····· 94
〈表 4- 5〉 年齡階層別 年平均 都市勤勞者 家計黑子額 規模 ····· 95
〈表 4- 6〉 所得階層別 都市勤勞者 家計黑子額 規模 ····· 96
〈表 4- 7〉 分析對象別 主要變數의 平均값 ····· 103
〈表 4- 8〉 年間 貯蓄率의 推定式 ····· 105
〈表 4- 9〉 保險 및 年金資産所有決定 Probit 推定式 ····· 107
〈表 4-10〉 金融資産 保有形態 ····· 109
〈表 4-11〉 國民年金基金運用 現況 ····· 111
〈表 4-12〉 一般銀行의 資金調達, 店鋪數, 從事者數 現況 ····· 112
〈表 4-13〉 一般銀行의 年度別 資産, 店鋪數, 人員의 增加率 ····· 113
〈表 4-14〉 一般銀行의 店鋪數 및 從事者數當 資産比率 ····· 113
〈表 5- 1〉 金融商品의 課稅體系 ····· 116
〈表 5- 2〉 居住, 非居住에 따른 所得稅(法人稅) 및 住民稅率 現況 ····· 117
〈表 5- 3〉 金融所得의 區分 ····· 118
〈表 5- 4〉 稅制優待金融商品種類 ····· 119
〈表 5- 5〉 年金稅制現況 ····· 120
〈表 5- 6〉 私學年金의 課稅體系 ····· 122

〈表 5- 7〉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限度 ····· 123
〈表 5- 8〉 團體退職保險料의 損金算入限度 ····· 123
〈表 5- 9〉 退職所得의 種類 ····· 125
〈表 5-10〉 退職所得稅 算出過程 ····· 126
〈表 5-11〉 個人年金의 種類別 課稅體系 ····· 126
〈表 5-12〉 退職金制度 適用者 推移 ····· 133
〈表 5-13〉 經歷平均方式과 最終給與方式下의 年金額 比較 ····· 140
〈表 5-14〉 5年 1% 積立 最終給與年金額으로 轉換할 경우의
勤續平均積立率 ····· 142
〈表 5-15〉 國民年金의 標準所得等級別 所得代替率 ····· 157
〈表 5-16〉 標準報酬月額 最高等級者(45等級)의 確定醵出 保險料 ··· 158
〈表 5-17〉 標準報酬月額 25等級者의 確定醵出 保險料 ····· 158
〈表 5-18〉 標準報酬月額 15等級者의 確定醵出 保險料 ····· 159
〈表 6- 1〉 加入年度에 따른 所得代替率 ····· 169
〈表 6- 2〉 1988年 加入者의 加入期間에 따른 所得代替率 ····· 169
〈表 6- 3〉 加入期間에 따른 退職年金의 所得代替率 ····· 171

圖 目 次

〔圖 3-1〕 所得分位別 加入期間에 대한 所得代替率 增加率 ····· 58
〔圖 3-2〕 國民年金 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賃金上昇率: 4%, 利子率: 4%) ····· 60
〔圖 3-3〕 財政再計算延期에 따른 保險料 收入 損失 ····· 65
〔圖 3-4〕 年齡別 國民年金 總加入者 現況 ····· 68
〔圖 3-5〕 年齡階層別 事業場加入者 現況 ····· 69
〔圖 3-6〕 國民年金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 ····· 90
〔圖 3-7〕 國民年金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 ····· 90
〔圖 6-1〕 老後所得保障體系圖 ····· 168

要 約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우리 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구성요소와 제도로서의 기본틀은 갖추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상태에 있으며 사적연금제도는 제도가 미성숙단계에 있어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도입당시부터 저부담·고급여의 잘못된 수급구조로 인하여 특수직역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국민연금제도도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를 유지하는 경우 2048년에 기금고갈이 예상됨.
-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직적인 기업연금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실정임.

□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사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公私年金의 適正所得代替率

□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소비분석에 의하면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는 도시근로자들의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비지출의 비율은 최저 53%에서 최고 71%로 조사되었음.

-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중에서 홑벌이 근로자가구인 5,323가구의 소득과 소비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총 소비는 50대까지 증가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60세 이상 소득이 있는 도시근로자들 중 평균소득수준인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소비분석에서는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비지출의 비율이 71%로 나타났음.
- 60세 이상 소득이 있는 도시근로자들 중 평균소득수준과 그 이하 소득수준의 근로자가구를 포함시킨 분석에서는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비지출의 비율이 53%로 나타났음.

□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을 기업연금화 하였을 때의 근로자의 평균통합소득 대체율은 66%에서 74.7%로 분석되었음.

-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자 기준(26등급)으로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의 가정 하에서 소득대체율은 66.9%로 분석되었음.
- 임금상승률을 4% 그리고 이자율을 6%로 가정하는 경우 30년 가입에 대한 통합소득 대체율은 79.3%로 분석되었음.

3. 國民年金財政의 後世代轉嫁防止를 위한 收支均等保險料率

□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제도하에서 현재의 사업장근로자가 2000년에 신규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확정각출보험

료는 18%가 되며 이로 인한 보험료수입부족액은 1년에 1조 7천억 원에서 7조 8천억 규모가 됨.

- 국민연금제도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확정각출형으로 운영되어 후세대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로는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35년 가입 53%를 충족시킬 수 없음.
- 35년 가입에 53%의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의 가정 하에서 보험료율이 18%가 되어야 하고 18%를 내지 않을 경우의 보험료수입부족액은 7조 8천억으로 추정됨.

□ 1988년 제도도입당시 3%의 보험료율 그리고 6%로 인상되었다가 9%의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계층별로 수지균등 보험료율은 25.6%에서 42.1%로 추계되었음.

- 1988년 국민연금제도도입당시 20~24세였던 사업장가입자 계층이 35년을 가입하는 경우 2001년부터 후세대 전가가 되지 않기 위해 내야할 수지균등보험료는 25.6%가 됨.
- 1988년 제도도입당시 40~44세였던 사업장가입자계층이 20년을 가입하는 경우 2001년부터 후세대 전가가 되지 않기 위해 내야 할 보험료는 42.1%로 추계 되었음.

4. 公的年金의 貯蓄行態에 미치는 波及效果

□ 국민연금보험료가 18%로 인상되는 경우 금융산업 특히 일반은행의 운용자산감소로 점포수의 감소와 인력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私的年金制度活性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상 적격기준이 없는 실정임.

-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 등」에 대한 규정은 퇴직보험 등의 적립을 법정퇴직금제도의 설정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실상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적격기준이 없는 상태임.
- 공적연금의 경우 퇴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퇴직소득과 비과세상속증여재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퇴직보험 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사적연금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적격 개인연금은 비적격 개인연금에 비해 세제우대조건은 엄격하나 실질적인 혜택이 적음.

□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를 점차 축소해야 하며 근로자의 추가갹출분에 대비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함.

- 이와 함께 적격개인연금의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차익 비과세제도의 폐지 또는 저율과세를 실현해야 함.

6. 公私年金制度間 役割分擔을 위한 制度改善

□ 공사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평적 보장, 그리고 제도간 연계강화를 위한 2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

〔圖 1〕 老後所得保障體系圖[1)]

<table>
<tr><td rowspan="2">2층 보장</td><td rowspan="2">70%
(10%)</td><td>기업연금
(30%)
기업: 8.3%
본인: 1.7%</td><td>자영자
퇴직연금[2)]
(30%)
본인: 10%</td><td>공무원퇴직연금
(30%)
정부: 8.3%
본인: 1.7%</td><td>교직원퇴직연금
(30%)
법인: 8.3%
본인: 1.7%</td></tr>
<tr><td colspan="2">국민연금
(40%)
사업장가입자: 본 인: 6.75%
사업주: 6.75%
자영업자: 본인 13.5%</td><td>공무원연금
(40%)
본인: 6.75%
정부: 6.75%</td><td>사학연금
(40%)
본인: 6.75%
정부: 6.75%</td></tr>
<tr><td>1층 보장</td><td>40%
(13.5%)</td><td colspan="4"></td></tr>
<tr><td></td><td></td><td>근로자</td><td>자영자</td><td colspan="2">공적직역</td></tr>
</table>

註: 1)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대비 기준임(35년 가입기준).
2) 자영자의 퇴직연금은 비강제 가입임.

第 1章 序 論

第 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硏究의 背景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제도와 사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상실의 위험에 봉착하게 될 때 국민들에게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하에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특수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가 있다.

사적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제도로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구성요소와 제도로서의 기본틀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고급여의 잘못된 수급구조로 인하여 특수직역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재정파탄에 이르렀고 국민연금 또한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을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경우 2048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상태는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공무원연금재정은 금년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지적자를 정부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은 가입대상인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공적직역연금에 비해 수급자격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제도도입 초기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군인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적자를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보전 받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상태는 제도시행의 역사가 짧고 높은 교원의 정년 때문에 연금수급개시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나 사학연금 역시 2016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硏究의 目的

이와 같이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되었거나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불되어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기업연금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일부분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제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만 한다. 공적연금의 제도개혁과 사적연금의 관련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한 균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연금제도간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보존, 소득재분배, 근로유인 등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기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이 되지 못한 것을 본 연구의 제약으로 생각한다.

第 2 節 公的年金制度의 現況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國民年金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5~9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으며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자영업자,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되었다. 2000년 2월 현재 총가입자는 1623만명이며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1070만 4천명이고 530만 8천명이 사업장가입자이다. 보험료는 1998년부터 6%에서 9%로 인상되고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11%대로 인상된 후 2025년까지 18%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여수준은 1999년 제도개선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급여산식을 적용하고 1999년 4월 제도개선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급여산식을 적용하게된다. 현행 급여산식에 의하면 최하위 20%계층은 30년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평균소득의 100%, 최상위 20%계층은 40년을 가입하는 경우 평균소득의 48%, 그리고 중간소득계층은 평균소득의 70%를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비율은 최하위계층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최상위계층은 평균소득의 46%로 그리고 증간소득계층은 40년 가입을 하는 경우, 평균소득의 60%로 조정되었다.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까지는 60세이고 그 이후부터는 5년 간격으로 1세씩 65세까지 상향조정된다.

〈表 1-1〉 現在의 給與 및 保險料 負擔水準이 維持되는 境遇의 長期 財政推計結果

(단위: 억원, 2000년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률(배)
2000	565,846	141,131	45,207	95,923	12.5
2010	2,489,249	414,791	90,782	324,008	27.4
2020	5,166,792	524,016	260,537	395,068	19.8
2030	6,309,898	768,113	603,656	164,458	10.5
2035	5,724,852	752,459	789,806	△37,346	7.2
2040	4,256,564	726,316	984,919	△258,603	4.3
2050	△1,852,905	576,343	1,355,556	△779,212	△1.4
2060	△9,489,135	679,952	1,680,338	△1,000,386	△5.6
2070	△17,930,476	810,449	2,107,488	△1,297,039	△8.5
2080	△13,029,064	980,586	2,515,657	28,232	5.1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0.

2. 特殊職域年金

가. 公務員年金

우리 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1월에 도입되었다. 1960년 제도도입 당시 23만 여명의 가입자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제도는 1998년 말 현재 약 95만명을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재원은 연금가입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제도도입 당시 2.3%에 불과하였던 가입자의 보험료는 1965년 3.5%, 1970년에 5.5%, 1996년에 6.5%, 그리고 1999년에 7.5%(가입자와 사용자 합 15%)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퇴직 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전형적인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재정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까지 5조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이 적자로 반전하였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금잠식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년단축 등으로 장기 재직한 퇴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재직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료 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수준에 기인하고 있다.

〈表 1-2〉 公務員年金財政 現況

(단위: 억원)

연도	연금수입 (a)	연금지출 (b)	수지차 (a-b)	기금수익 (c)	총수지차 (a-b+c)	기금잔액
1993	16,082	16,147	△65	4,150	4,085	49,003
1994	17,520	19,351	△1,831	5,242	3,411	52,414
1995	19,988	26,373	△6,385	5,466	△919	51,495
1996	24,760	24,321	439	4,871	5,310	56,805
1997	27,312	28,076	△764	5,974	5,210	62,015
1998	33,164	50,699	△17,535	3,363	△14,171	47,844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8.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1999년에는 3.3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01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이후 매년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 2030년 9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및 보험료 부담수준의 상향조정 등의 개선 조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表 1-3〉 公務員年金의 財政收支 展望

(단위: 억원)

연도	연금수입 (a)	연금지출 (b)	수지차 (a-b)	기금수익 (c)	총수지차 (a-b+c)	기금잔액
1999	19,995	33,572	△13,577	4,700	△8,877	44,910
2000	20,609	35,196	△14,587	3,762	△10,826	34,084
2001	21,504	46,090	△24,586	1,961	△22,625	11,459
2002	21,782	50,596	△28,814	-	△28,814	△17,355
2003	22,178	38,689	△16,511	-	△16,511	△33,866
2004	23,286	41,955	△18,669	-	△18,669	△52,535
2005	24,451	45,425	△20,974	-	△20,974	△73,509
2006	25,673	49,132	△23,459	-	△23,459	△96,968
2007	26,957	53,087	△26,130	-	△26,130	△123,098

資料: 최재식, 『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나. 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국·공립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1975년부터 시행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40,347명의 가입자로 제도가 도입된 후 1998년 현재 206,278명이 가입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제도시행의 역사가 짧아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나 공무원연금과 기여 및 급여구조가 유사하여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재정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동일한 급여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학연금이 아직까지 기금고갈과 같은 연금재정의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았던 것은 제도시행의 역사가 짧은 것 이외에도 교직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원인이 있다.

사학연금재정 전망에 의하면 2003년에 연금수지(부담금수입 대비

급여지출)의 적자전환을 시발로 2010년에는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의 적자가 예상되고, 201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학연금의 재정불안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表 1-4〉 私立敎員年金의 財政 展望

(단위: 백만원)

연도	퇴직자수 (명)	연금수지		재정수지		기금액 추이	분석결과
		부담금수입	급여지출	총수입	총지출		
1999	17,402	521,196	767,579	824,854	793,059	3,474,578	
2000	14,872	558,899	650,170	880,313	677,140	3,677,751	
2003	14,928	756,071	758,588	1,174,627	793,710	4,789,287	연금수지 적자전환
2010	18,024	1,479,276	2,052,778	2,019,519	2,096,981	6,182,807	재정수지 적자전환
2015	20,642	2,181,404	3,965,739	2,324,426	4,009,942	1,604,313	
2016	21,029	2,351,562	4,451,101	2,351,562	4,495,304	-539,429	기금고갈 시점
2020	22,337	3,176,443	6,801,203	3,176,443	6,845,406	-12,575,954	
2030	23,672	6,518,182	14,276,207	6,518,182	14,320,409	-74,626,229	
2040	29,669	13,336,258	33,485,719	13,336,258	33,529,922	-216,473,823	

註: 1999년과 2000년에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은 정년단축(65세→62세)으로 인한 퇴직자수 증가에 따른 급여지급 증가에 기인하며, 2003년부터 연금수지가 영구히 적자로 전환됨.

資料: 김현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도현황」,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내부자료, 1999.

다. 軍人年金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에 대한 노후 대책은 1960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비롯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제정된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도입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소급적용에 따라 제도 도입당시부터 수급자가 생겨난 군인연금제도는 1997년 현재 약 66,000명에게 각종 연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는 총 15종류로서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연금급여와 각종 재해에 대한 공적부조 성격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퇴직시의 최종보수월액을 기준으로 50~76%까지 지급하며 퇴직일시금은 5년 미만인 경우에 보수월액×근무연수, 5년 이상인 경우에 50%를 가산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과 국가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가입대상자인 직업군인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계급정년제 도입에 따른 조기퇴직 경향의 일반화 등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증으로 여타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재정불안정 요인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1997년 현재 7300여 억원에 달하는 결손보전금은 중앙정부에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表 1-5〉 軍人年金 財政 現況 및 展望

(단위: 억원,%)

구분	국방비 (A)	연금소요 (B)	자체수입		국고부담 및 지원			구 성	
			기여금 본인 부담금	반환금 및 기타[1]	기여금 국가부담	퇴직수당 재해급여 법정경비[2]	부족 국고지원 (C)	B/A	C/B
1994	101,003	7,876	951	5	951	1,411	4,558	7.8	57.9
1995	110,744	8,530	998	9	998	1,523	5,002	7.7	58.6
							(+446)		(55.1)
1996	122,434	9,208	1,252	455	1,252	1,623	4,626	7.5	50.2
1997	134,677	10,037	1,416	9	1,416	1,769	5,427	7.5	54.1
1998	150,789	10,940	1,593	10	1,593	1,928	5,816	7.4	53.2
1999	162,960	11,925	1,673	11	1,673	2,102	6,466	7.3	54.2
2000	179,256	12,998	1,756	12	1,756	2,290	7,183	7.3	55.3
2001	197,182	14,168	1,888	13	1,888	2,473	7,906	7.2	55.8

註: 1) 군인연금기금에서 1996년 446억원이 연금지급금으로 사용
2) 업무비 및 학자금대부금(1996년 14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국방부, 내부자료. 1999.

〈表 1-6〉 公的年金制度別 保險料 및 給與方式

연금 제도	도입 시기	보험료율	급여수준	급여수령연령
국민 연금	1988	· 1993~1997년: 6%(본인,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2%씩) · 1998년 이후: 9%(본인,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3%씩) · 1999~2009년: 9%(본인, 사용자 4.5%씩 부담) · 2010~2014년: 11.5%(예정) · 2015~2020년: 14.1%(예정)	· 1999년 개정이전: 생애 평균 소득의 48~100% · 1999년 개정이후: 생애평균소득의 46~100%	· 2013년 이전: 60세 · 2013년 이후: 5년 간격 1세씩 상향 조정
공무원 연금	1960	· 1996년 이전: 11% (본인: 5.5%+정부: 5.5%) · 1996년 이후: 13% (본인: 6.5%+정부: 6.5%) · 1999년 이후: 15% (본인: 7.5%+정부: 7.5%)	· 퇴직시 보수월액의 50~76% (20~33년)	· 1996년 이전 임용자: - 20년 가입 후 연금 또는 일시금 - 20년 미만 가입: 일시금 · 1996년 이후 임용자: - 20년 가입 후 60세 이상: 연금 또는 일시금 - 20년 미만: 일시금

〈表 1-6〉 계속

연금 제도	도입 시기	보험료율	급여수준	급여수령연령
군인 연금	1960	· 1996년 이전: 11% (본인: 5.5%+정부: 5.5%) · 1996년 이후: 13% (본인: 6.5%+정부: 6.5%) · 1999년 이후: 15% (본인: 7.5%+정부: 7.5%)	· 공무원연금과 동일	· 20년 가입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사학 연금	1975	· 1995년 이전: 11%(본인: 5.5%+법인: 3.5%+국가: 2.0%) · 1996~1998년: 13%(본인: 6.5% +법인:4.0%+국가: 2.5%) · 1999년 이후: 15%(본인: 7.5%+법인: 4.5%+국가: 3.0%)	· 공무원연금과 동일	· 공무원연금과 동일

第 3 節 私的年金制度의 現況

1. 退職保險制度現況

가. 退職金制度現況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년당 30일의 임금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당 60일분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정제도로 강제되었다. 그리고 적용사업 대상 사업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表 1-7〉 退職金制度 適用者 推移

연 도	대상자수(천명)	취업자에 대한비율(%)
1970	945	9.7
1975	1,448	12.2
1980	2,841	20.7
1985	3,583	23.9
1990	5,366	29.8
1994	5,734	29.9
1998	5,786	29.0

資料: 노동부, 『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는 1998년 현재 전 산업에서 578만 6천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55.3%이다. 이와 같이 퇴직금 대상자의 증가와 퇴직 후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 퇴직금의 지급방법 및 전반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퇴직금지급 방법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1978년 누진제를 적용하던 기업이 5.8%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20.1%로, 1996년에는 24.6%로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는 IMF의 한파로 인하여 누진제 요구자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

〈表 1-8〉 退職金 支給方法別 企業分布

(단위: %, 개소)

구 분	1978[1)]	1982[2)]	1991[3)]	1996[4)]
법 정 률	94.2	78.4	79.9	75.4
누 진 율	5.8	21.6	20.1	24.6
조사대상수	15,251	1,686	2,071	500

註: 1) 16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 가스업, 운수창고업 만 포함한 것으로서 노동부의 조사치임(노동부, 내부자료).
2)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재성, 박제용)의 조사결과임.
3) 상용고용인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박영범)의 조사 결과임.
4) KLI 3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임(방하남).

資料: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1998, p.33에서 전재.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영실태조사』에 의하면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의 평균지급률은 1991년에 근속연수 5년에 6.5개월, 10년에 14.7개월, 20년에 34.1개월, 30년에 55.3개월이었다(박영범, 1992). 1996년 현재 근속연수 10년에 13.3개월, 20년에 30.3개월, 30년에 47.9개월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퇴직금의 누진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율의 적용 기업은 증가하고 있다.

나. 退職保險制度의 導入背景

퇴직보험이 도입된 배경은 최근 들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정퇴직금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실직기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누적되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퇴직보험이 도입됨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획적으로 적립함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절세효과로 기업의 실질부담이 경감된다. 근로자측면에서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이 도산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 기업연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退職保險制度의 槪要

퇴직보험의 주요특징으로는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적립금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년 금융기관은 각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과 퇴직금예상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법정퇴직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실패한 경우라도 원본은 보전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당초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은행 및 투신신탁회사는 채권 및 주식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원본보전이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 상품개발 안을 확정짓지 못하였으며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도입되는 퇴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장기근속 할 경우에만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제한 적인 형태이다.

퇴직보험의 종류는 적립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연 6.0%)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자산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그중 일부를 수익자에게 배당하고 일부는 적립하였다가 자산수익률이 6%를 하회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공시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의 평균)의 80~120%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회사가 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형태이다. 지급방식에는 연금지급식과 일시금지급식, 그리고 혼합식이 있다. 퇴직보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년퇴직시, 중도퇴직시, 사망퇴직시, 중간정산기 등이다. 지급기준은 적립비율방식으로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되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 중 퇴직 근로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금 규정상 금액과의 차액은 기업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表 1-9〉 金融機關別 退職保險(退職信託) 現況(2000年 6月 現在)

구 분		퇴직보험	종퇴보험	합계
생명보험	취급기관	22개사 (17개사 판매중)	22개사 (21개사 판매중)	
	수 탁 고	4조 9829억원	9조 1057억원	14조 886억원
손해보험	취급기관	11개사		
	수 탁 고	3714억원		3714억원
은 행	취급기관	21개 국내은행 (19개 은행 판매중)	21개 국내은행 (6개 은행 판매중)	
	수 탁 고	3071억원	1678억원	4749억원
투 신	취급기관	운용: 10개 투신사 판매: 11개 증권사		
	수 탁 고	2000년 10월 판매예정		
합 계	수 탁 고	5조 6614억원	9조 2735억원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2. 個人年金制度 現況

가. 個人年金制度의 現況

1994년 3월에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을 삽입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내용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였다. 조감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동법 제80조의 2의 ①).

둘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80조의 2의 ②).

셋째,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동법 제80조의 2의 ②).

넷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함)을 중도해약 추징세액으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받은 감면세액이 중도해약 추징세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동법 제80조의 2의 ③).[1)]

다섯째, 개인연금저축자가 다음의 경우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80조의 2의 ④, 규칙 제40조의 2(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 사망, 해외이주, 법 제80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 천재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1) 중도해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금액이상의 세금 추징이 없기 때문에, 개인 연금저축의 가입이 어떤 형태로든 가입자에게 항상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됨. 세금추가 추징이 필요함. 또한 세제혜택을 먼저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한 후 해약할 경우 추징벌과금이 없으므로 일단 가입이 더욱 유리함. 따라서 세제혜택 전액 추징 외에 해약추징세금이 필요함. 매년 중도해약시의 수익률계산이 필요함.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이에 따라, 세제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 등 그 사항에 필요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1994년 6월 15일 공포되었다.[2)]

1994년 6월부터 개인연금 상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신탁 등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나. 個人年金의 槪要

개인연금 가입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가이다. 개인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인연금 상품들은 기존의 다양한 저축과 보험기능을 상당히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상품을 노후생계의 보장을 위하여서 뿐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의 자금동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즉,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 가입기간 중 은행의 다양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 금전이나 주택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에게 적합하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은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등이 가능하

2) 대통령령 제14278호 조세감면 규제법 중 개정령, 재무부령 제1983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참조.

여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비하여 사망시까지 연금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나 퇴직기간 동안의 특정 위험사고에 대하여 보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사고위험에 대한 위험기피자나 노후생존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에게 선호된다.

개인연금신탁은 가입자를 위하여 대출서비스나 특정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부가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은행이나 보험회사보다 제약을 덜 받도록 한다. 따라서, 어떤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개인연금신탁 납입기간 동안 인출할 필요가 적은 가입자에 의하여 선호될 것이다. 특히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의 교육이 끝난 50대에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집단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입당시의 연령, 경제상태, 가족구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할 경우, 연령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의 수요가 변화할 수도 있다.

〈表 1-10〉 取扱機關別 個人年金 販賣額 推移

(단위: 억원, 천명, %)

구 분	은 행	생 보	손 보	투 신	합 계
1994년 6월	2,028	216	173	246	2,663
1994년 9월	6,718	2,464	1,131	2,534	12,847
1994년 12월	10,957	6,530	2,305	4,150	23,942
1995년 3월	12,418	10,443	3,603	5,887	32,351
1998년 12월	63,329 (1,545)	60,548 (1,878)	18,684 (608)	24,078 (303)	166,639 (4,333)
구성비	53.0	18.5	8.9	20.0	100.0

註: 1) ( )은 보유 건수임.

資料: 재무부, 생명보험협회 자료; 생명보험협회,『생협』, 각호.

〈表 1-11〉 金融機關別 個人年金商品 市場占有率 推移

(단위: %)

구 분	1994. 7.	1994. 9.	1994. 12.	1995. 3.
은 행	65.0	55.3	45.3	38.9
보 험 사	15.1	23.1	36.5	43.5
생 보	9.2	15.1	26.0	32.2
손 보	5.9	8.0	10.5	11.3
투 신 사	19.9	21.6	18.2	17.9

資料: 금융경제연구원,『주간 금융동향』, '95. 4. 15~21. p.17; 해당협회 문의에 의함.

第 2 章 公私年金의 適正所得代替率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인 가입대상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입자수의 증가와 연기금의 적립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제도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여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결과 현재의 보험료수준은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고 보험료도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가 설정한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정부가 설정한 소득대체율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야함은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감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평균소득자의 경우에 국한하여 적정한 수준[3]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3) 길버트(Gilbert, et al., 1998:72)에 따르면 적절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본질적으로 분배의 정의,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가입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계연보의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第 1 節 1996年度 都市家計調査資料 分析을 통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現況

1. 1996年度 都市家計調査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72개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그리고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어 있다. 1996년의 도시가계는 총 15,787가구가 조사되었고 이중에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는 9,787가구 그리고 홑벌이 가구가 5,562가구이다. 국민연금에 사업장으로 가입된 가구가 분석의 대상이므로 가구주가 비근로자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근로자 1인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홑벌이가구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근로자가구 중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를 제외시켰다.

2.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現況

아래 <表 2-1>은 199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 홑벌이가구의 월 평균소득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월평균소득을 5개 연령계층으로 구분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급여수급시점이 60세이므로 60세 이후의 소득과 소비와 60세 미만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 보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총소득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40~50대를 정점으로 하여 60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근로소득의 평균은 153만원으로 근로소득의 일부가 평균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평균보수월액인 129만원(26등급)에 상응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소득의 경우 5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계층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재산소득이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에서는 이전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소득은 사회보장수혜나 타 가구로부터의 생활비보조가 이에 해당된다.

〈表 2-1〉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所得構成內譯(1996)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사회 보장	생활 보조[2]	합계	
20~29세	935	159	118	0.3	2.4	0.6	9	9.6	15.3
30~39세	2,569	185	153	1.0	2.1	0.2	4.9	5.1	12.8
40~49세	1,250	210	176	1.5	5.9	1.8	6.1	7.9	10.6
50~59세	580	224	170	1.5	12.2	1.1	7.2	8.3	13.4
60세 이상	228	190	114	0.6	8.1	5.5	11.2	16.7	13.9
전체	5,562	191	153	1.08	4.3	1.0	6.4	7.4	12.8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생활보조는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생활비보조를 의미함.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과 타 가구로부터의 생활비보조 둘 다 다른 연령계층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表 2-2>는 199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 홑벌이가구의 소비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총 소비는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50대를 정점으로 60세 이상가구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

비내역별로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는 연령계층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보건의료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항목 중 연령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교육비이다. 교육비는 40대에 정점을 이루고 50대에 약간 감소하다가 60대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의 교육비지출은 40대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통통신비 지출도 50대가 가장 많아 22만원이지만 60대는 7.4만원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지출인 식료품, 주거, 광열은 연령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교육, 문화, 피복신발, 교통통신비 등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항목은 보건의료 뿐이다. <表 2-2>의 소비내역은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가구도 가구주가 60세를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의 소비수준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의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소득수준의 감소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생애주기(life-cycle)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表 2-2〉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消費構成內譯 (1996)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비	식료품	주거	광열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피복 신발	교통 통신	비소 비지출
20~29세	935	115	28.1	4.6	6.0	5.6	5.6	7.1	8.3	17.7	10.7
30~39세	2,569	135	32.4	4.8	7.3	5.7	10.2	7.3	7.9	13.7	17.0
40~49세	1,250	173	37.0	4.5	8.5	5.6	32.5	8.3	10.9	15.2	21.9
50~59세	580	186	38.4	3.8	8.9	7.8	26.6	6.5	10.5	22.7	27.6
60세 이상	228	128	30.7	5.9	8.2	7.5	5.8	3.1	6.9	7.4	15.9
전체	5,562	145	33.3	4.6	7.5	6.0	16.0	7.2	8.9	15.4	18.1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表 2-3>은 연령계층별로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 것이다.

평균소비 비중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평균소비비중이 60세 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은 생애주기에 의한 소비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적정소득 대체율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가구주의 연령이 60세를 넘는 경우 가구원의 수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3〉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平均消費比重(1996)

가구주연령 계층[1)]	표본수	평균소득등급[2)]	평균소비비중[3)]	평균가구원수
20~29세	935	5.5	0.72	2.9
30~39세	2,569	6.4	0.72	3.7
40~49세	1,250	7.1	0.82	3.9
50~59세	580	7.2	0.83	3.3
60세 이상	228	5.8	0.67	2.6
전체	5,562	6.4	0.75	3.5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의 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평균소득등급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3등급화 한 것의 평균임. 1등급: 30만원 이하, 2등급: 31~60만원 13등급: 361만원 이상
3) 평균소비비중은 평균소비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임.

3. 平均所得者의 所得·消費分析을 통한 適正所得代替率推定

평균소득자의 소득과 소비를 통하여 국민연금내의 소득대체율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인 만큼 도시근로자가구 중 홑벌이가구 그 중에서도 평균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소득과 소비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아래 <表 2-4>는 도시근로자가구중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한 것이다.

<表 2-1>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20대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159만원이고, 30대는 185만원, 40대는 210만원, 50대는 224만원 그리고 60대는 19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평균소득을 구간별로 분류하면 <表 2-3>의 평균소득등급이 된다. 따라서 <表 2-4>는 <表 2-3>의 연령별 평균소득등급에 해당되는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60세 이상 평균소득자들은 월평균 128만원을 소비하며 전연령계층의 평균소득은 191만원이고 가구주의 평균근로소득은 153만원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4]에서 평균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생애평균소득(B부분)과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A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구소득은 평균 191만원이지만 가구주근로소득은 153만원이고 근로소득의 일부는 표준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계층은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자인 26등급(129만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1만원을 1996년도 현재 60세 이상인 가구의 생애평균소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이면서 평균소득을 벌고 있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가 근로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것이 아래 <表 2-4>의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비지출비율이다. 1996년 현재 60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생애평균소득대비 소비비율은 67%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수치는 60세 이상이면서 평균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수준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60세를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는 거이 일반

4) 연금급여 기본연금액 산식: 1.8(A+B)(1+0.05N)
A: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가입연수
1.8: 가입기간이 20년일 때의 연금액 수준을 정하는 재정수리적인 비례상수

적인 현상은 아니며 60세 이상이면서 평균소득자의 소비는 근로자출신 60세 이상 전체인구의 소비수준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67%는 평균이상으로 추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이면서 평균소득 이하를 버는 근로자를 포함시킨 경우의 비율이 <表 2-4>의 ( )안의 수치로 44%에 해당한다. 50대까지 평균소득자로 종사한 경우일지라도 60대에 계속 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며 60대에서도 평균소득자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무리한 가정이다. 따라서 60대의 경우 평균소득 이하를 버는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보다 현실적인 60대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表 2-4〉 家口主年齡階層別 平均所得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構成內譯(1996)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총소비	소비지수[2]	가구주근로 소득비중[3]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소 비지출비율[4]
20~29세	240	159	118	115	0.72	0.74	
30~39세	965	185	153	135	0.72	0.82	
40~49세	403	210	176	173	0.82	0.82	
50~59세	139	224	170	186	0.83	0.75	0.67(128/191)
60세 이상	34 (210)	190 (96)	114 (65)	128 (80)	0.67 (0.83)	0.60 (0.67)	0.44(80/179)
전체	1,763 (1,957)	191 (179)	153 (151)	145 (137)	0.75 (0.76)	0.80 (0.84)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의 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소비지수는 평균소비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3)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은 가구주 근로소득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임.
4) 생애평균 소득대비 노후 소비지출 비율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소비수준을 전 연령계층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5) 60세 이상과 전체에서 ( )안의 수치는 60세 이상 도시근로자 중 평균소득자뿐만 아니라 평균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경우임.

따라서 1996년 현재 60세 이상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적정소득 대체율은 44%에서 67%구간 내가 됨을 알 수 있다.

第 2 節 1999年度 都市家計資料分析을 통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 現況

1. 1999年度 都市家計調査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는 총 15,76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근로자가구가 8,655가구이다. 소득자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들 가구 중에서 총 5,323 홑벌이가구의 소득과 소비관계를 분석하였다.

2.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 現況

1999년도 홑벌이가구의 평균소득은 193만원이고 연령계층별로는 50대의 평균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21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6년과 마찬가지로 60대의 평균소득은 50대보다 낮은 1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1996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60세 이상에서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1996년과 동일하고 절대액도 1996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60대인 가구는 소득 및 가구주 근로소득은 감소하였고 이전소득은 1996년에 비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2-5〉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所得構成內譯 (1999)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사회 보장	생활 보조[2]	합계	
20~29세	735	149	120	1.1	1.5	1.1	9.8	10.9	13.1
30~39세	2,510	191	166	1.8	2.1	0.6	5.5	6.1	13.3
40~49세	1,278	218	186	2.9	6.4	2.3	5.6	7.9	12.8
50~59세	571	215	169	3.2	11	4.9	4.8	9.7	19.8
60세 이상	217	166	110	2.6	4.9	5.2	15.1	20.3	25.7
전체	5,311	193	162	2.1	4.2	1.3	5.5	6.8	15.5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생활보조는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생활비보조를 의미함.

아래 <表 2-6>은 1999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총소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교육비지출은 40대와 50대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60대에 들어서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9년도의 소비내역도 1996년도와 같이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表 2-6〉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月平均消費構成內譯(1999)

(단위: 만원, %)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비	식료품	주거	광열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피복 신발	교통 통신	비소비 지출
20~29세	735	112	28.6	3.4	7.8	4.5	4.7	5.8	6.3	17.7	12.6
30~39세	2,510	139	35.1	4.0	8.9	6.4	12.2	6.3	6.5	21.3	20.9
40~49세	1,278	168	39.8	4.9	10.5	6.3	35.1	7.5	8.9	19.7	28.8
50~59세	571	184	40.0	4.3	10.9	7.1	32.3	6.1	8.9	19.6	44.4
60세 이상	217	143	25.7	2.1	9.9	7.5	2.1	3.5	5.5	11.9	39.0
전체	5,311	148	35.7	4.1	9.4	6.1	18.4	6.3	7.3	19.8	25.0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아래 <表 2-7>은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계층별로 나타낸 것이다. 1996년의 경우 60대의 소비비중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0.67 이었으나 1999년도에는 가장 높은 0.86을 나타내고 있다.

〈表 2-7〉 家口主年齡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의 平均消費比重(1999)

가구주연령 계층[1]	표본수	평균소득 등급[2]	평균소비 비중[3]	평균가구원수
20~29세	735	5.0	0.75	2.8
30~39세	2,510	6.4	0.72	3.6
40~49세	1,278	7.1	0.77	3.8
50~59세	571	6.9	0.85	3.2
60세 이상	217	5.3	0.86	2.5
전체	5,311	6.3	0.76	3.5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의 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평균소득등급은 가구의 월 총소득을 13등급화 한 것의 평균임. 1등급: 30만원 이하, 2등급: 31~60만원, 13등급: 361만원 이상
3) 평균소비비중은 평균소비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임.

1999년도에는 가구주가 60대인 가구의 총소득은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 平均所得者의 所得·消費分析을 통한 適正所得代替率推定

1996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정소득 대체율을 추정해 보았다.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자에 대한 소득대체율과 비교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중 연령계층별로 평균소득수준에 해당하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하여 소득과 소비를 분석해 보았다. 앞에서 이미 설명되었지만 국민연금제도에서 평균소득자의 생애평균소득과 수급전년도 가입자평균소득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연보가 특정연도에 대한 횡단면적 자료이지만 평균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체평균소득이 생애평균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表 2-8〉 家口主年齡階層別 平均所得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消費構成內譯(1999)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1]	표본수	총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총소비	소비지수[2]	가구주근로 소득비중[3]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소비 지출비율[4]
20~29세	202	184	161	125	0.67	0.87	
30~39세	793	185	172	145	0.78	0.92	
40~49세	379	189	172	167	0.88	0.91	
50~59세	143	190	155	182	0.95	0.81	0.71(135/188)
60세 이상	32 (197)	192 (95)	131 (69)	135 (95)	0.70 (1.0)	0.68 (0.72)	0.53(95/178)
전체	1,516 (1,714)	188 (178)	168 (158)	151 (145)	0.80 (0.81)	0.89 (0.88)	

註: 1)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의 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소비지수는 평균소비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3)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은 가구주근로소득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임.
4) 생애평균 소득대비 노후 소비지출 비율은 60세 이상 도시근로자의 소비수준을 평균소비자의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5) 60세 이상과 전체에서 ( )안의 수치는 60세 이상 도시근로자 중 평균소득자뿐만 아니라 평균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경우임.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대비 급여비율을 의미한다. 1999년도 60대 이상 가구주의 생애평균소득과 소비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적정소득 대체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60대 이상 가구주 중 소득이 없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경우 소비수준은 매우 낮을 것이 분명하다. 60대 가구주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포함시킨다면 소비수준은 전자에 비해 높게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노인들의 평균소비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상 가구주 중 평균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비수준과 그들의 생애평균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대체율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表 2-8>은 60대 이상 가구주가구의 평균소비금액과 전체가구의 평균소득금액(평균소득자의 생애평균소득)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60대 이상의 연령에도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 내에서 평균소득수준을 벌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소비금액은 135만원이고 1999년도의 도시근로자 중 홑벌이가구의 평균소득액은 188만원이므로 적정소득 대체율은 71%로 추정할 수 있다. 1996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속의 수치는 60대 이상 가구주 중 평균소득 및 그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경우의 적정소득 대체율이다. 이 경우의 소득대체율은 53%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도시근로자로 은퇴한 노인가구의 경우 적정소득 대체율은 53~7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第 3 節 國民年金과 企業年金에 의한 所得代替率

1. 國民年金의 加入期間別 所得代替率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평균소득자(평균 보수월액 기준 26등급)의 경우 40년을 가입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이 60%로 정해져 있다. 20년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30%이고 1년 추가가입시 약 1.5%의 소득대체율이 추가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40년을 가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가입기간은 30년 내외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表 2-9〉 國民年金의 加入期間別 所得代替率

(단위: %)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수준	
	1,290,000(26등급)	1,560,000(29등급)
20년	30	27
25년	38	34
30년	45	41
35년	53	48
40년	60	55

2. 退職金의 企業年金轉換에 따른 所得代替率

근로자의 경우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국민연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법정퇴직금의 적립률인 8.3%이므로 퇴직금이 기업연금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당시부터 자신의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므로 보험료 수준이나 기금의 수익과 급여수준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가입기간

에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퇴직금이 기업연금화되는 경우 적립금의 규모와 운영수익률을 무시한 급여수준의 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하게 확정갹출형 연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가입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적립금이 형성되고 적립금의 운영수익률에 따라 최종급여가 결정될 것이다. 아래 <表 2-10>은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의 수준에 따른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낸 것이다.

〈表 2-10〉 退職金의 企業年金轉換時 所得代替率

(단위: %)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62세 수급개시, 17년간 수급)			
	20년	25년	30년	35년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4%	14.1	17.7	21.2	24.8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5%	16.9	21.7	26.7	31.9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6%	20.2	26.6	33.6	41.3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5%	15.4	19.3	23.0	27.0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6%	18.4	23.5	29.0	34.6

註: 가입기간 만기 후 개인별 기여금 수입총액을 62세 이후 17년간 일정수준의 연금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frac{\text{개인별기여금수입총액}}{\frac{1-(1+r)^{-n}}{r}}$ 이 사용되었음(r: 이자율, n: 17년(기대여명)).

연금제도가 확정갹출형으로 운영되는 경우 소득대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자율 수준이다. 예를 들어 확정 갹출형 기업연금에 20년 가입하고 20년간 평균이자율이 4%, 임금상승률이 4%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14.1%이다. 동일한 20년 가입에 대해 임금상승률은 동일한 가운데 이자율을 평균 2% 높게 가정하는 경우의 소득대체율은 20.2%가 된다. 이는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 가정하의 30년 가

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자율을 2% 높게 가정하는 것이 가입기간 10년과 동일한 소득대체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확정 갹출형 기업연금의 운영을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4%, 이자율 6%를 가정하는 경우 25년 가입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26.6%, 30년은 33.6% 그리고 35년은 41.3%로 추정된다.

3. 國民年金과 企業年金을 합한 所得代替率

1996년과 1999년의 도시가계조사를 근거로 한 적정소득 대체율은 1996년의 경우 44~67% 그리고 1999년에는 53~71%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적정소득 대체율을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이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알아보았다. 앞의 1)과 2)에서 추계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을 합한 수치는 아래 <表 2-11>과 같다. 적정소득 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25년 가입되는 경우 적정소득 대체율의 하한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며 30년을 가입하는 경우 적정소득 대체율의 상한선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表 2-11〉 國民年金과 退職金에 의한 平均所得者(26等級)所得代替率

(단위: %)

	20년			25년			30년			35년		
	기업연금 1)	국민연금	합계	기업연금	국민연금	합계	기업연금	국민연금	합계	기업연금	국민연금	합계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4%	14.1	30.3	44.4	17.7	38.0	**55.7**	21.2	45.7	**66.9**	24.8	53.4	78.2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5%	16.9	30.3	47.2	21.7	38.0	**59.7**	26.7	45.7	**72.4**	31.9	53.4	85.3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6%	20.2	30.3	50.5	26.6	38.0	**64.6**	33.6	45.7	**79.3**	41.3	53.4	94.7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5%	15.4	30.3	45.7	19.3	38.0	**57.3**	23.0	45.7	**68.7**	27.0	53.4	80.4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6%	18.4	30.3	48.7	23.5	38.0	**61.5**	29.0	45.7	**74.7**	34.6	53.4	88.0

註: 1)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확정갹출형으로 운영되어 62세에 수급개시하여 기대여명인 17년간 수급하는 것을 가정하였고, 현행 퇴직금 적립비율인 8.3%가 확정 갹출형 기업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함.

소득대체율이 적절하다는 것은 근로기간과 은퇴기간 간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한계효용이란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근로기간의 한계효용과 은퇴기간의 한계효용이 동일할 때 전생애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소득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일부가 보험료나 저축의 형태로 지불되어져야하며 보험료나 저축수준이 과다할 경우 근로기간 중의 소비가 적정수준이하로 줄게된다. 이와는 반대로 근로기간 중 보험료나 저축의 수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은퇴기간 중의 소비가 적정수준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1999년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또는 평균소득수준을 벌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

하여 추계하였다. 소득이 있는 노인가구주를 선정한 것은 소득에 구애받아 소비수준을 제한 받기보다는 생애주기에 의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소비수준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생애주기를 감안한 총소득 대비 적정소득 대체율은 53%에서 71% 범위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직금이 기업연금화되는 경우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20%내외(表 2-11 참조)를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책임져야할 소득대체율은 30~50%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8년도 국민연금법개정에 의해 평균소득자의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 것은 가입자의 자산이 과연금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98년에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러나 자영자들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은퇴시점에 대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들에 대한 적정소득대체율은 근로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자영업의 특성상 구속받는 은퇴연령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운영소득이 노후소득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근로자들과 달리 기업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후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여 자영업종사 평균소득자들의 적정소득 대체율은 근로자 보다 훨씬 낮아 질 수 있다. 즉, 자영자들에게 국가가 국민연금을 통해 책임져야 할 적정소득 대체율은 30~50%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第 3 章 國民年金財政의 後世代轉嫁防止를 위한 收支均等保險料率

第 1 節 1999年度 基準 國民年金 保險料收入 不足額 推定

1. 後世代轉嫁의 問題點

국민연금재정의 건실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분석이 있어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급여산식의 불합리성을 들 수 있다. 즉, 보험료부담과 급여수준간의 수준차이로 인해 연금재정을 압박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8년에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산식을 수정하여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이 70%이던 것이 60%로 떨어졌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당시 이와 같이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한 것은 제도도입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후세대가 현세대에 의해 조성된 연금재정 적자분을 부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과 같이 두 자리수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도도입당시의 전망은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보아도 연금재정적자의 과도한 후 세대 전가는 연금제도의 근본을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도 현세대의 문제는 현세대가 해결하는 수지균등의 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연금제도의 개혁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2. 加入者 및 保險料率 現況

1988년 도입당시 443만명 수준이던 가입자가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의 확대가입으로 인해 1999년 말 현재 1620만명을 넘고있다. 이로서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하게되었다. 1988년 도입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된 후 1995년에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사업장가입자는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4~8%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5%가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경제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전년대비 8% 증가하였다.

〈表 3-1〉 年度別加入者數 推移

(단위: 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임의/지역임의계속가입자
1988	4,432,695	4,431,039	1,656
1990	4,651,678	4,640,335	11,343
1992	5,021,159	4,977,441	43,718
1994	5,444,818	5,382,729	62,089
1996	7,425,700	5,677,631	1,748,069
1998	6,580,265	4,849,926	1,730,339
1999	16,261,889	5,238,149	11,023,740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1999.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간의 수준차이가 큰 상태에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그 만큼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므로 전국민이 국민연금제도권으로 흡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확대와 동시에 추진해야할 과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확보이다. 1999년 현재 보험료수준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9%를 부담하고 있다. 제도도입당시인 1988년에는 보험료가 3%이었으며 1993년에 6% 그리고 1999년부터 9%의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도 급여산식에서 보장하는 급여수준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보험료가 3%, 또는 6%였던 1998년 이전 기간에는 연금재정의 적자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表 3-2〉 加入種別保險料率(1999年 以後)

(단위: %)

	사업장종사자			사업장종사 임의계속 가입자		지역/지역임의계 속가입자
	사용자	근로자	보험료			
1988～1992	1.5	1.5	3	3	1995～2000. 6	3
1993～1998	3	3	6	6		
1999	4.5	4.5	9	9		
2000	4.5	4.5	9	9	2000. 7	4
2001	4.5	4.5	9	9	2001. 7	5
2002	4.5	4.5	9	9	2002. 7	6
2003	4.5	4.5	9	9	2003. 7	7
2004	4.5	4.5	9	9	2004. 7	8
2005～2009	4.5	4.5	9	9	2005. 7	9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법령집』1999.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9%까지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씩 인상되어 2005년에 9%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다음세대에서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급여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급여수준이 수지균등원칙 하에서의 급여수준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확정갹출 보험료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급여수준을 내리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재정재계산의 시점 즉 보험료의 인상시점이 연금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3. 現行 國民年金의 給與水準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5]에 의하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또한 표준소득월액에 의거하여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표준소득월액은 45등급으로 되어있으며 최하등급인 1등급은 월 소득 220,000원이며 최고등급인 45등급은 3,600,000원이다. 연금보험료는 자신의 소득등급에 따라 납부하지만 은퇴 후 지급 받는 급여는 자신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퇴직당시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받게된다. 이와 같은 장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를 반영한 것이다.

아래 <表 3-3>에 의하면 최하등급인 1등급자의 월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800원이고 30년을 가입한 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

---

5) 1999년 1.1 이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급여산식은 2.4(A+0.75B) 이며 이후 가입기간은 1.8(A+B)(1+0.05N) 임.
A: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가입자전체의 평균치) B:가입자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 가입연수 임.

은 1999년 불변가격으로 220,000원이 된다. 즉, 자신의 평균보수월액 만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가 된다.

이와 같이 소득대체율이 100%인 즉, 자신의 표준보수월액 만큼 매월 지급 받는 계층은 30년 가입기준으로 10등급까지 해당된다. 1999년 현재 전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은 1,271,595원이며 등급 상으로는 25등급과 26등급 사이에 해당된다. 25등급의 30년 가입 소득대체율은 대략 47%이고 26등급의 소득대체율은 45%수준이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380,000원이고 27등급에 해당된다. 사업장가입 25등급자의 경우, 월 평균 108,900원을 부담하고 은퇴 후 수령하는 월연금액은 571,790원이 된다.

〈表 3-3〉 標準所得等級別 所得代替率

(단위: 원)

등급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소득대체율				완전노령연금[1]
		지역(3%)	사업장(9%)	20년	30년	35년	40년	(30년가입)
1	220,000	6,600	19,800	0.86	1	1	1	220,000
5	260,000	7,800	23,400	0.79	1	1	1	260,000
10	370,000	11,100	33,300	0.67	1	1	1	370,000
15	570,000	17,100	51,300	0.50	0.75	0.87	1	427,790
20	850,000	25,500	76,500	0.38	0.57	0.67	0.77	490,790
25	1,210,000	36,300	108,900	0.31	0.47	0.55	0.63	571,790
30	1,660,000	49,800	149,400	0.26	0.40	0.47	0.54	673,040
35	2,190,000	65,700	197,100	0.23	0.36	0.42	0.48	792,290
40	2,800,000	84,000	252,000	0.21	0.33	0.38	0.44	929,540
45	3,600,000	108,000	324,000	0.20	0.31	0.36	0.41	1,109,540

註: 1) 완전노령연금액은 1999년 현재 불변가치예상액이며 6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19년, 65세에 수령하는 경우 15년간 수령하는 것을 예상한 액수임.

이와 같이 소득등급별 소득대체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圖 3-1]과 같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연금소득 대체율은 10

년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圖 3-1]의 제일 밑에 있는 선이 40등급자의 소득대체율선이고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최하위 등급이 1등급자의 소득대체율선이다. 표준보수월액등급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올수록 소득대체율선의 기울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이 되는 동시에 발생하는 소득대체율 또한 표준보수월액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기능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를 급여산식에 반영시킨 결과이다. [圖 3-1]에서 흥미로운 점은 45등급에서 10등급으로 갈수록 소득대체율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만 10등급에서 1등급에서는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가입기간에 대해 1등급자가 10등급자에 비해 절대적인 소득대체율은 높지만 1년을 추가로 가입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소득대체율의 증가는 1등급자보다 10등급자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에서 30년 이내에서의 근로유인효과는 1등급자보다 10등급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圖 3-1〕 所得分委別 加入期間에 대한 所得代替率 增加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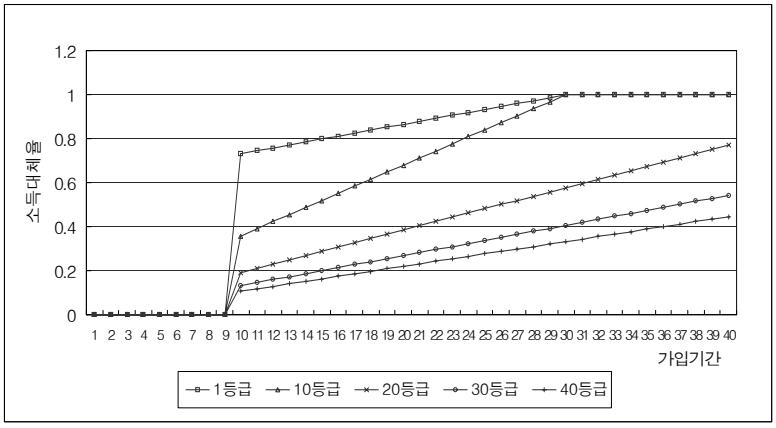

4. 國民年金給與水準과 確定醵出年金給與間의 水準比較

[圖 3-1] 과 <表 3-3>에서와 같은 소득대체율에 의한 급여액이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 서론 및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보험료수준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게 보장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아는 것이 대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만약 국민연금이 확정갹출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확정갹출형 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을 운영하여 보험료수입원금과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합한 적립금에 기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자소득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갹출방식하에서 30년을 가입하는 경우 3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매월 일정한 연급급여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0년 가입자가 60세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약 19년간 급여를 수령하고 사망하는 경우 30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은 소진되어 잔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불입한 보험료와 보험료의 이자수익의 60세 당시 합계는 60세 이후 평균기대여명(19세)동안 수령할 연금급여액의 60세 당시 현재가치와 동일하게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확정갹출형 하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은 자신의 수지균등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은 자신의 수지균등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확정갹출방식하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방식이 과도하게 후세대 전가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연금급여는 현세대가 불입한 보험료수입으로 해결한다고 가정하는 경

우 현재의 보험료수준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며 혹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까지 떨어져야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 [圖 3-2]는 평균소득자라 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26등급자가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를 내고 35년간 가입하는 경우 35년 후 소득대체율이 확정갹출형하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圖 3-2]에 의하면 9%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에 약 27%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은 임금상승률이 연 4%, 그리고 이자율이 연 4%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추정치이다. [圖 3-2]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에 52%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어 두 방식간의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3-2〕 國民年金 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賃金上昇率: 4%, 利子率: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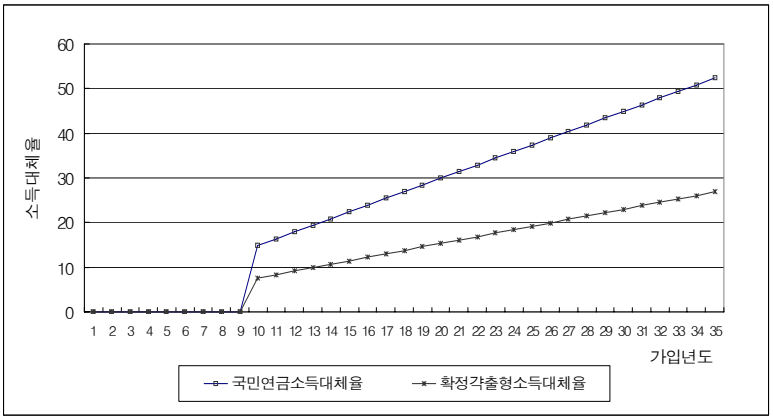

아래 <表 3-4>는 현재 평균소득자인 27등급자가 9%의 보험료로 앞으로 3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보험료수입총액과 그 총액에서 지급될 수 있는 월급여액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득월액이 연평균 4%로 인상되고 보험료수입에 대한 이자수익이 연간 4%라 할 때 10년 후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합계는 22,061,560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62세부터 17년간 지급될 수 있는 월 급여액은 151,119원이 된다. 이와 같은 계산은 가입종료 후 바로 62세가 되어 대기기간 없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62세를 지급개시연령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지급개시연령이 2013년 이후 5년간 1년씩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62세부터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1999년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60세의 기대여명이 19.52, 65세의 기대여명이 15.75이므로 62세의 기대여명을 17년으로 정하여 17년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 평균소득자가 35년을 가입하는 경우 월급여액은 약 1,410,005원이 된다. <表 3-4>에서 평균소득자가 보험료를 18%로 불입하는 경우 35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총액은 411,687,573원(35년 후 경상가치)이 되고 월급여액은 약 2,820,009원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상승률 4%, 이자율 5%를 가정할 경우 35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52%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정갹출 보험료는 14%가 되어야 하고 임금상승률 4%, 이자율 6%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11%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소득대체율은 이자율의 가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表 3-4〉 確定醵出型[1]에 의한 保險料水準別 月給與額 및 所得代替率

(단위:원)

가입 연수	표준 보수월액	보험료 9%, 62세 수령개시, 17년간수급			보험료 18%, 62세 수령개시, 17년간수급		
		연간보험료+ 이자수익(누적)	월급여액	소득 대체율	연간보험료+ 이자수익(누적)	월급여액	소득 대체율
1	1,380,000	1,550,016	-	-	3,100,032	-	-
2	1,435,200	3,224,033	-	-	6,448,066	-	-
3	1,492,608	5,029,491	-	-	10,058,984	-	-
4	1,552,312	6,974,228	-	-	13,948,458	-	-
5	1,614,405	9,066,497	-	-	18,132,995	-	-
6	1,678,981	11,314,988	-	-	22,629,978	-	-
7	1,746,140	13,728,853	-	-	27,457,706	-	-
8	1,815,986	16,317,722	-	-	32,635,445	-	-
9	1,888,625	19,091,735	-	-	38,183,471	-	-
10	1,964,170	22,061,560	151,119	7.6	44,123,122	302,237	13.84
11	2,042,737	25,238,435	172,880	8.37	50,476,685	345,760	15.38
12	2,124,447	28,634,141	196,140	9.14	57,268,282	392,280	16.92
13	2,209,424	32,261,132	220,984	9.91	64,522,264	441,969	18.46
14	2,297,807	36,132,468	247,503	10.68	72,064,936	495,005	20.0
15	2,389,713	40,261,893	275,789	11.45	80,523,786	551,578	21.54
16	2,485,302	44,663,860	305,941	12.22	89,327,720	611,883	23.08
17	2,584,714	49,353,565	338,065	12.99	98,707,131	676,131	24.62
18	2,688,103	54,346,984	372,270	13.76	108,693,970	744,540	26.16
19	2,795,627	59,660,912	408,669	14.53	119,321,824	817,339	27.7
20	2,907,452	65,312,998	447,386	15.3	130,625,997	894,772	29.24
21	3,023,750	71,321,794	488,545	16.07	142,643,589	977,091	30.78
22	3,144,700	77,706,793	532,282	16.84	155,413,587	1,064,564	32.32
23	3,270,488	84,488,477	578,735	17.61	168,976,954	1,157,471	33.86
24	3,401,307	91,688,364	628,054	18.38	183,376,729	1,256,108	35.4
25	3,537,360	99,329,061	680,391	19.15	198,658,123	1,360,784	36.94
26	3,678,854	107,434,313	735,911	19.92	214,868,626	1,471,824	38.48
27	3,826,008	116,029,058	794,784	20.69	232,058,116	1,589,570	40.02
28	3,979,049	125,139,488	857,190	21.46	250,278,976	1,714,380	41.56
29	4,138,211	134,793,106	923,316	22.23	269,586,211	1,846,632	43.1
30	4,303,739	145,018,789	993,360	23.0	290,037,579	1,986,722	44.64
31	4,475,889	155,846,959	1,067,532	23.77	311,693,718	2,135,064	46.18
32	4,654,924	167,309,144	1,146,047	24.54	334,618,288	2,290,094	47.72
33	4,841,121	179,439,057	1,229,135	25.31	358,878,114	2,458,271	49.26
34	5,034,766	192,271,669	1,317,037	26.08	384,543,337	2,634,074	50.8
35	5,236,157	205,843,786	1,410,005	26.85	411,687,573	2,820,009	52.34

註: 1) 임금상승률 4%, 연간 이자율 4%를 가정한 경우의 확정갹출 방식임.

5. 現行 國民年金과 確定醵出方式間의 保險料收入差額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에 의한 보험료수준은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表 3-5>는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가정별로 부족한 보험료수입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사업장가입자에 국한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表 3-5>는 1999말 현재규모의 사업장가입자가 지속적으로 35년간 가입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들이 35년 가입 후 평균 62세부터 17년간 수령하고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즉, 현재 9%의 보험료와 가정별 확정갹출보험료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수입의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소득대체율 수준은 소득수준별로 달라 평균소득 월액별로 분석을 해야하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전체사업장 가입자를 평균소득자로 간주하여 추계하였다. 따라서 1999년 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수는 5,238,149명이고 평균소득자의 보험료차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수를 곱하여 보험료수입부족액을 구하였다.

〈表 3-5〉 賃金上昇率 및 利子率 水準別 年間保險料收入 不足額(累計)[1)]

(단위: 10억)

추계기준 시점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수준별 보험료수입부족액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4% 확정각출보험료: 18%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5% 확정각출보험료: 14%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6% 확정각출보험료: 11%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5% 확정각출보험료: 16%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6% 확정각출보험료: 12.5%
2000	7,806	4,337	1,734	6,072	3,036
2001	16,335	9,120	3,666	12,833	6,448
2002	25,559	14,344	5,795	20,287	10,247
2003	35,536	20,048	8,143	28,506	14,475
2004	46,327	26,277	10,731	37,567	19,180
2005	57,999	33,079	13,584	47,556	24,418
2006	70,623	40,507	16,729	58,570	30,247
2007	84,278	48,618	20,196	70,713	36,734
2008	99,046	57,476	24,018	84,100	43,955
2009	115,020	67,148	28,231	98,859	51,992

註: 1) 보험료수입 손실액은 확정각출 보험료 수준과 현행 9% 보험료수준과의 차액을 계산한 것이며 급여지급 개시연령은 62세로 가정하였으며, 지급기간은 1999년 통계청 생명표를 참조하여 17년으로 하였음.

<表 3-5>에 의하면 2000년 1년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수입 부족액 즉, 확정각출형 보험료 보다 낮은 보험료로 인한 수입부족액은 적게는 1조 7천억원(임금상승률 4%, 이자율 6%)에서 많게는 7조 8천억원(임금상승률 4%, 이자율 4%)에 이른다. 현재와 같이 보험료가 9%로 2009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부족한 보험료수입 누적액은 적게는 28조 3천억원에서 많게는 115조 5천억원에 이른다.

아래 [圖 3-3]은 보험료가 9%로 앞으로 5년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즉, 재정재계산에 의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경우, 부족한 보험료수입(임금상승률 4%, 이자율 4%)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있다.

〔圖 3-3〕 財政再計算延期에 따른 保險料 收入 損失

(단위: 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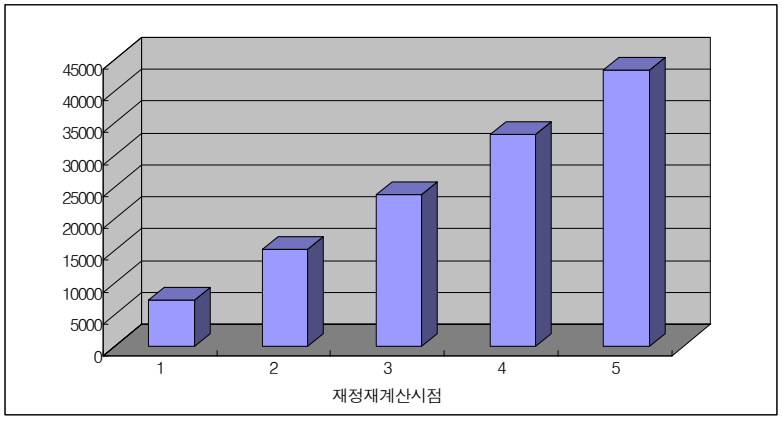

현행 국민연금법 상에는 2010년 이후에는 재정재계산제 적용으로 연금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재정재계산시점을 앞으로 10년 후로 규정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보험료 부족분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재계산시점을 10년 후로 연기한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만을 키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현세대가 급여를 수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까지 지속되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재계산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현세대의 문제를 다음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분석한 것은 현재 4%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배제한 사업장가입자에 한한 보험료 부족 분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의 1999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수입 부족분은 계산되지 않은 결과이다. 보험료를 3%, 6% 내

고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 기준 70%까지 보장하던 1998년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분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수입 부족분을 합한다면 현시점에서의 보험료 부족분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앞에서 추계한 확정갹출보험료는 적어도 현재시점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수입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족분을 청산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보험료수입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0년 현재 위의 <表 3-5>와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재계산 시점을 2000년이 아닌 시점으로 연기하는 경우 확정갹출보험료는 <表 3-5>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재계산은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간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정재계산의 시점은 10년 후가 아닌 현재 시행되어야만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였음에도 30여 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교하게 재정재계산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도 여론을 인식한 안일한 재정재계산 정책에서 벗어나서 현시점의 문제는 당시에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만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第 2 節 1988年度 基準 年齡別, 巨視變數假定別 收支均等保險料率

1. 現行 國民年金의 給與水準

현행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6]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기본연금액은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의 소득 수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소득비례부분인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그리고 가입기간에 의하여 계산된다.

〈表 3-6〉 加入期間別 所得代替率

(단위: 원)

등급	표준 소득월액	보험료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완전노령연금[1]	
		지역	사업장	20년	30년	35년	40년	30년	40년
1	220,000	6,600	19,800	0.86	1.00	1.00	1.00	220,000	220,000
5	260,000	7,800	23,400	0.79	1.00	1.00	1.00	260,000	260,000
10	370,000	11,100	33,300	0.67	1.00	1.00	1.00	370,000	370,000
15	570,000	17,100	51,300	0.50	0.75	0.87	1.00	427,790	570,000
20	850,000	25,500	76,500	0.38	0.57	0.67	0.77	490,790	654,500
25	1,210,000	36,300	108,900	0.31	0.47	0.55	0.63	571,790	762,300
30	1,660,000	49,800	149,400	0.26	0.40	0.47	0.54	673,040	896,400
35	2,190,000	65,700	197,100	0.23	0.36	0.42	0.48	792,290	1,051,200
40	2,800,000	84,000	252,000	0.21	0.33	0.38	0.44	929,540	1,232,000
45	3,600,000	108,000	324,000	0.20	0.31	0.36	0.41	1,109,540	1,476,000

註: 1) 완전노령 연금액은 1999년 현재 불변가치예상액이며 6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19년, 65세에 수령하는 경우 15년간 수령하는 것을 예상한 액수임.

6) 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주는 일종의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로서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연금제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18～19세 연령을 제외하면 각 연령층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圖 3-4 참조). [圖 3-4]를 살펴보면 1995년은 농어민연금가입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33%의 현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6년 이후 경제적인 불안정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모든 연령층의 연금가입자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圖 3-4〕 年齡別 國民年金 總加入者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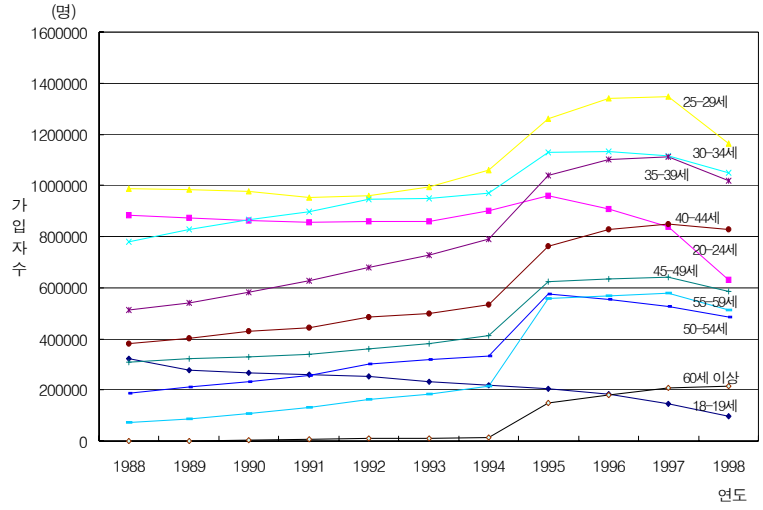

사업장가입자의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앞에서 보았던 총가입자의 변화추이와 마찬가지로 1997년까지는 꾸준히 가입자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圖 3-5참조).

〔圖 3-4〕 年齡階層別 事業場加入者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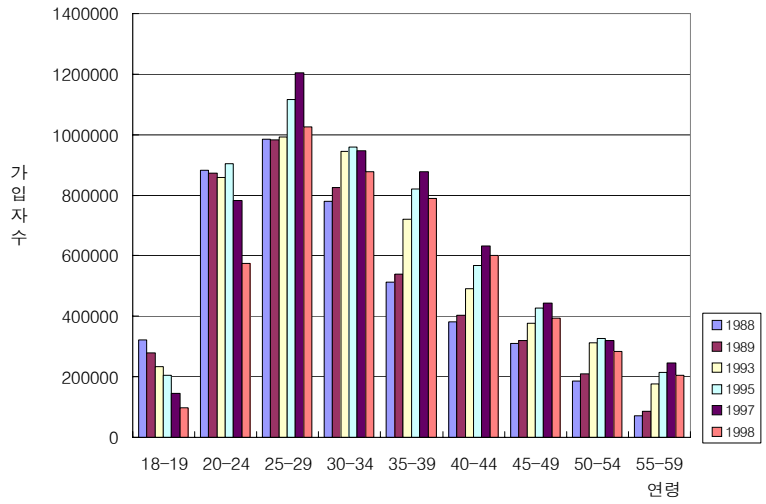

2. 加入期間 및 巨視變數假定別 收支均等保險料率 推計

가. 加入期間別 收支均等保險料率

현 국민연금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이 확정갹출방식 즉, 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을 운영하여 보험료 수입원금과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합한 적립금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세대의 연금급여는 현세대가 불입한 보험료수입으로 해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료의 수준과 연금급여수준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1988년 제도도입당시의 가입자의 연령을 계층별로 나누어 가입가능기

간에 상응하는 수지균등보험료를 구해 보았다. 연령은 현재 국민연금 통계연보에서 분류하고 있는 연령계층을 사용하였고, ① 1계층은 18～19세, ② 2계층 20～24세, ③ 3계층 25～29세, ④ 4계층 30～34세, ⑤ 5계층 35～39세, ⑥ 6계층 40～44세, ⑦ 7계층 45～49세로 구분해 보았다.

〈表 3-7〉 年齡階層別 事業場加入者 現況

(단위: 명)

연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88	321,235	882,739	985,836	780,753	788,321	600,190
1989	277,908	873,323	982,857	825,753	511,985	381,628
1990	265,630	863,462	975,314	863,246	538,239	402,327
1991	258,793	854,543	952,788	894,361	580,825	428,544
1992	252,615	858,829	958,103	941,622	622,934	441,123
1993	233,600	859,222	992,025	945,030	673,576	480,934
1994	219,832	898,650	1,057,261	965,435	720,859	491,649
1995	205,192	903,661	1,116,970	959,563	781,180	526,489
1996	182,129	864,486	1,194,654	960,136	820,759	567,192
1997	146,543	781,114	1,205,512	947,761	867,321	614,484
1998	98,058	575,825	1,026,678	877,936	878,493	632,104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이들 연령계층 중에서 20～24세 계층이 평균적으로 35년 가입 가능한 연령대로 가정하였고 25～29세 계층이 평균 30년, 35～39세 계층이 평균 25년, 그리고 40～44세 계층이 20년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로 가정하여 수지균등 보험료를 각각 추계 하였다.

이와 같이 연령계층별로 분리하는 이유는 제도도입당시 연령별로 가입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입가능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나. 加入期間 35年 事業場加入者(1988年 當時 20～24歲)

첫 번째 연령계층은 제도도입 당시 20～24세인 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수지균등보험료를 구하였다.

① 연금제도시작연도(1988년)부터 추정하기 위하여 이 계층은 연금가입기간을 35년으로 한다.
② 연금가입기간 35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3%이다.
③ 보수월액 및 보험료 납입액 추정을 위하여 임금상승률 연 4%, 이자율 년 4%을 가정한다.
④ 62세부터 17년간 급여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사업장 가입자수의 추정은 1988년부터 1996년까지의 가입자수 증가율을 평균한 3%의 증가율로 가정한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 1988년부터 1998년 기간은 62%(35년가입)이나 확정각출보험료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동안 단일소득대체율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53%(35년가입)로 통일하였다.

위의 가정 ③에서 보수월액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실제값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임금상승률 4%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5년 등급별 소득월액이 53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1999년까지의 실제보수월액을 적용하기 위하여 1988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 375,000원과 1999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 1,380,000원까지의 증가율 12.57%를 1999년까지 소득월액으로 적용시켰다.

가정 ④ 또한 가입시기나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62세로 통일하였다.

또한 가정 ⑤에서 1996년까지의 사업장가입자수를 기초로 증가율을

구한 것은 1997년 IMF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자료만을 가지고 증가율을 계산하고, 2000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까지는 실 가입자수를 적용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가정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입기간 35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3%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적정보험료율은 25.6%로 추정되었다. 적정보험료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과거 즉, 1999년까지는 그 당시의 보험료율 3%, 6%, 9%를 그대로 적용시켰고, 2000년부터 얼마의 보험료율을 적용시켜야만 가입기간 35년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53%)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이다.

〈表 3-8〉 35年 加入 事業場 加入者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료율	보험료 납부액 (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35년 후 가치(B)	B의 누적치 (C)	월 급여액1) (D)	소득 대체율 (D/A)
1988	240,000	0.03	86,400	340,942	340,942	2,335	0.010
1989	290,000	0.03	104,400	396,126	737,068	5,048	0.017
1990	350,000	0.03	126,000	459,696	119,6764	8,197	0.023
1991	410,000	0.03	147,600	517,789	1,714,554	11,744	0.029
1992	480,000	0.03	172,800	582,877	2,297,431	15,737	0.033
1993	540,000	0.06	388,800	1,261,033	3,558,464	24,375	0.045
1994	570,000	0.06	410,400	1,279,894	4,838,359	33,142	0.058
1995	670,000	0.06	482,400	1,446,574	6,284,933	43,051	0.064
1996	790,000	0.06	568,800	1,640,060	7,924,993	54,285	0.069
1997	920,000	0.06	662,400	1,836,484	9,761,477	66,864	0.073
1998	920,000	0.09	662,400	1,765,850	11,527,327	78,960	0.086
1999	956,800	0.09	1,033,344	2,648,775	14,176,102	97,104	0.101
2000	995,072	0.09	1,074,677.8	2,648,775	16,824,877	115,248	0.116
2001	1,034,874.9	0.256	3,179,135.6	7,534,293	24,359,170	166,857	0.161
2002	1,076,269.9	0.256	3,306,301.1	7,534,293	31,893,464	218,466	0.203
2003	1,119,320.7	0.256	3,438,553.1	7,534,293	39,427,757	270,075	0.241
2004	1,164,093.5	0.256	3,576,095.2	7,534,293	46,962,050	321,684	0.276
2005	1,210,657.2	0.256	3,719,139.0	7,534,293	54,496,343	373,293	0.308
2006	1,259,083.5	0.256	3,867,904.6	7,534,293	62,030,637	424,902	0.337
2007	1,309,446.9	0.256	4,022,620.8	7,534,293	69,564,930	476,511	0.364
2008	1,361,824.7	0.256	4,183,525.6	7,534,293	77,099,223	528,120	0.388
2009	1,416,297.7	0.256	4,350,866.6	7,534,293	84633,517	579,729	0.409
2010	1,472,949.6	0.256	4,524,901.3	7,534,293	92167,810	631,338	0.429
2011	1,531,867.6	0.256	4,705,897.3	7,534,293	99702,103	682,947	0.446
2012	1,593,142.3	0.256	4,894,133.2	7,534,293	107,236,396	734,556	0.461
2013	1,656,868.0	0.256	5,089,898.6	7,534,293	114,770,690	786,165	0.474
2014	1,723,142.7	0.256	5,293,494.5	7,534,293	122,304,983	837,774	0.486
2015	1,792,068.5	0.256	5,505,234.3	7,534,293	129,839,276	889,383	0.496
2016	1,863,751.2	0.256	5,725,443.7	7,534,293	137,373,570	940,992	0.505
2017	1,938,301.2	0.256	5,954,461.4	7,534,293	144,907,863	992,601	0.512
2018	2,015,833.3	0.256	6,192,639.9	7,534,293	152,442,156	1,044,210	0.518
2019	2,096,466.6	0.256	6,440,345.5	7,534,293	159,976,449	1,095,818	0.523
2020	2,180,325.3	0.256	6,697,959.3	7,534,293	167,510,743	1,147,427	0.526
2021	2,267,538.3	0.256	6,965,877.7	7,534,293	175,045,036	1,199,036	0.529
2022	2,358,239.8	0.256	7,244,512.8	7,534,293	182,579,329	1,250,645	0.530

註: 1) 월급여액= $\frac{C}{\frac{1-(1+r)^{-n}}{r}}$, r : 이자율, n : 수급기간(17년)

연금제도 도입당시 극히 낮은 보험료인 3%, 6%, 9%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25.6%의 보험료를 내야만 53%의 소득대체율을 후세대 전가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 거시경제변수가정과 같이 앞으로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즉,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 2001년부터 25.6%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25.6%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53%의 소득대체율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수령한다면 보험료차액만큼의 부담이 후세대로 전가될 것이다.

2001년부터 수지균등 보험료인 25.6%가 아닌 9%를 2022년까지 납부하고 은퇴하는 경우 이 연령계층 1인당 평균 덜 내는 보험료는 2001년에 3,432,500원이고 2022년에는 17,824,232원이 된다. 결국 제도도입당시 20～24세인 사업장가입자 연령계층이 후세대에 전가하는 부담액은 총 111조 7천억원이 된다.

이 금액은 세 가지 가정이 변함에 따라 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 첫째, 보험료가 9%가 아니라 2001년 이후에 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 후세대 전가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둘째, 1988년 가입당시 20～24세였던 사업장가입자의 수가 1988년에는 985,836명이었고 2001년 이후에는 연 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증가율이 3%보다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부담규모는 줄 수 있다. 셋째, 거시변수에 대한 가정으로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를 가정한 결과이므로 이자율 수준과 임금상승률 수준이 변하는 경우 또한 부담의 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거시변수별 수지균등 보험료추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表 3-9〉 35年 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보험료수입 부족액(A)	A×가입자수 (B)	B×(1+가입자 증가율(3%))(C)	C의 누적합계 (백억)
1988	240,000	0.03	86,400	0	0	0	0
1989	290,000	0.03	104,400	0	0	0	0
1990	350,000	0.03	126,000	0	0	0	0
1991	410,000	0.03	147,600	0	0	0	0
1992	480,000	0.03	172,800	0	0	0	0
1993	540,000	0.06	388,800	0	0	0	0
1994	570,000	0.06	410,400	0	0	0	0
1995	670,000	0.06	482,400	0	0	0	0
1996	790,000	0.06	568,800	0	0	0	0
1997	920,000	0.06	662,400	0	0	0	0
1998	920,000	0.09	662,400	0	0	0	0
1999	956,800	0.09	1,033,344	0	0	0	0
2000	995,072	0.09	1,074,677	0	0	0	0
2001	1,034,874	0.09	1,117,664	3,432,500	1.97652E+12	1.97454E+12	197.454299
2002	1,076,269	0.09	1,162,371	3,712,592	2.1378E+12	2.13567E+12	411.020869
2003	1,119,320	0.09	1,208,866	4,015,539	2.31225E+12	2.30994E+12	642.014472
2004	1,164,093	0.09	1,257,221	4,343,208	2.50093E+12	2.49843E+12	891.857152
2005	1,210,657	0.09	1,307,509	4,697,613	2.705E+12	2.7023E+12	1,162.08699
2006	1,259,083	0.09	1,359,810	5,080,939	2.92573E+12	2.92281E+12	1,454.36759
2007	1,309,446	0.09	1,414,202	5,495,543	3.16447E+12	3.16131E+12	1,770.49828
2008	1,361,824	0.09	1,470,770	5,943,980	3.42269E+12	3.41927E+12	2,112.42524
2009	1,416,297	0.09	1,529,601	6,429,008	3.70198E+12	3.69828E+12	2,482.25344
2010	1,472,949	0.09	1,590,785	6,953,615	4.00407E+12	4.00006E+12	2,882.2596
2011	1,531,867	0.09	1,654,417	7,521,031	4.3308E+12	4.32647E+12	3,314.90631
2012	1,593,142	0.09	1,720,593	8,134,747	4.68419E+12	4.67951E+12	3,782.8569
2013	1,656,868	0.09	1,789,417	8,798,542	5.06642E+12	5.06135E+12	4,288.99239
2014	1,723,142	0.09	1,860,994	9,516,503	5.47984E+12	5.47436E+12	4,836.42847
2015	1,792,068	0.09	1,935,433	10,293,050	5.927E+12	5.92107E+12	5,428.5353
2016	1,863,751	0.09	2,012,851	11,132,963	6.41064E+12	6.40423E+12	6,068.95812
2017	1,938,301	0.09	2,093,365	12,041,412	6.93375E+12	6.92681E+12	6,761.63940
2018	2,015,833	0.09	2,177,100	13,023,992	7.49954E+12	7.49204E+12	7,510.84348
2019	2,096,466	0.09	2,264,184	14,086,749	8.1115E+12	8.10339E+12	8,321.18260
2020	2,180,325	0.09	2,354,751	15,236,228	8.7734E+12	8.76463E+12	9,197.64540
2021	2,267,538	0.09	2,448,941	16,479,505	9.48931E+12	9.47982E+12	10,145.6275
2022	2,358,239	0.09	2,546,899	17,824,232	1.02636E+13	1.02534E+13	11,170.9650

註: 연간보험료수입부족액은 수지균등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와 3%, 6%, 9%를 납부 할 때의 보험료 납부액 차액임.

다. 加入期間 30年 事業場加入者(1988年 當時 25~29歲)

국민연금이 도입될 1988년 당시 향후 30년 가입이 가능한 연령계층은 더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25~29세 계층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연금가입기간이 30년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35년 가입자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다. 추계결과 2001년부터 27.6%의 보험료를 2017년까지 납부하여야만 소득대체율 45%를 충족시킬 수 있다.

〈表 3-10〉 30年加入者의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30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C)	월급여액[1] (D)	소득 대체율 (D/A)
1988	350,000	0.03	126,000	408,668	408,668	2,799	0.01
1989	430,000	0.03	154,800	482,767	891,435	6,106	0.01
1990	510,000	0.03	183,600	550,561	1,441,997	9,877	0.02
1991	570,000	0.03	205,200	591,667	2,033,664	13,930	0.02
1992	660,000	0.03	237,600	658,738	2,692,403	18,442	0.03
1993	770,000	0.06	554,400	1,477,939	4,170,342	28,566	0.04
1994	820,000	0.06	590,400	1,513,374	5,683,717	38,932	0.05
1995	920,000	0.06	662,400	1,632,627	7,316,345	50,116	0.05
1996	1,060,000	0.06	763,200	1,808,722	9,125,067	62,505	0.06
1997	1,210,000	0.06	871,200	1,985,262	11,110,330	76,104	0.06
1998	1,290,000	0.09	928,800	2,035,115	13,145,445	90,044	0.07
1999	1,341,600	0.09	1,448,928	3,052,672	16,198,118	110,955	0.08
2000	1,395,264	0.09	1,506,885.1	3,052,672	19,250,790	131,865	0.09
2001	1,451,074	0.2765	4,814,665.4	9,378,489	28,629,279	196,107	0.14
2002	1,509,117	0.2765	5,007,252.0	9,378,489	38,007,768	260,348	0.17
2003	1,569,482	0.2765	5,207,542.1	9,378,489	47,386,258	324,590	0.21
2004	1,632,261	0.2765	5,415,843.8	9,378,489	56,764,747	388,831	0.24
2005	1,697,552	0.2765	5,632,477.5	9,378,489	66,143,236	453,073	0.27
2006	1,765,454	0.2765	5,857,776.6	9,378,489	75,521,725	517,314	0.29
2007	1,836,072	0.2765	6,092,087.7	9,378,489	84,900,214	581,556	0.32
2008	1,909,515	0.2765	6,335,771.2	9,378,489	94,278,703	645,797	0.34
2009	1,985,895	0.2765	6,589,202.0	9,378,489	103,657,192	710,039	0.36
2010	2,065,331	0.2765	6,852,770.1	9,378,489	113,035,681	774,280	0.37
2011	2,147,944	0.2765	7,126,880.9	9,378,489	122,414,170	838,522	0.39

〈表 3-10〉 계속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30년 후 가치 (B)	B의 누적합계 (C)	월급여액 (D)	소득 대체율 (D/A)
2012	2,233,862	0.2765	7,411,956	9,378,489	131,792,660	902,763	0.40
2013	2,323,217	0.2765	7,708,434	9,378,489	141,171,149	967,005	0.42
2014	2,416,145	0.2765	8,016,771	9,378,489	150,549,638	1,031,246	0.43
2015	2,512,791	0.2765	8,337,442	9,378,489	159,928,127	1,095,488	0.44
2016	2,613,303	0.2765	8,670,940	9,378,489	169,306,616	1,159,729	0.44
2017	2,717,835	0.2765	9,017,778	9,378,489	178,685,1055	1,223,971	0.45

註: 1) 월급여액= $\frac{C}{\frac{1-(1+r)^{-n}}{r}}$, r: 이자율, n: 수급기간(17년)

만약 27.65%를 납부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9%를 2017년까지 납부하는 경우 이들 연령계층이 후세대에 전가하는 부담규모는 194조 8천억으로 추계된다.

물론 이 금액 역시 35년 가입 가능 사업장에 대한 후세대 전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가정이 변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表 3-11〉 30年 加入者의 後世代轉嫁 規模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보험료수입 부족액(A)	A×가입자수 (B)	B×(1+가입자 증가율(3%)) (C)	C 의 누적합계 (백억)
1988	350,000	0.03	126,000	0	0	0	0
1989	430,000	0.03	154,800	0	0	0	0
1990	510,000	0.03	183,600	0	0	0	0
1991	570,000	0.03	205,200	0	0	0	0
1992	660,000	0.03	237,600	0	0	0	0
1993	770,000	0.06	554,400	0	0	0	0
1994	820,000	0.06	590,400	0	0	0	0
1995	920,000	0.06	662,400	0	0	0	0

〈表 3-11〉 계속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보험료수입 부족액(A)1)	A×가입자수 (B)	B×(1+가입자 증가율(3%)) (C)	C 의 누적합계 (백억)
1996	1,060,000	0.06	763,200	0	0	0	0
1997	1,210,000	0.06	871,200	0	0	0	0
1998	1,290,000	0.09	928,800	0	0	0	0
1999	1,290,000	0.09	1,448,928	0	0	0	0
2000	1,290,000	0.09	1,506,885	0	0	0	0
2001	1,290,000	0.09	1,567,160	5,407,334	5.55159E+12	5.69038E+12	569.0381
2002	1,290,000	0.09	1,629,846	5,848,572	6.0046E+12	6.15472E+12	1,184.5097
2003	1,290,000	0.09	1,695,040	6,325,816	6.49458E+12	6.65694E+12	1,850.2038
2004	1,290,000	0.09	1,762,842	6,842,002	7.02453E+12	7.20015E+12	2,570.2185
2005	1,290,000	0.09	1,833,356	7,400,310	7.59774E+12	7.78768E+12	3,348.9864
2006	1,290,000	0.09	1,906,690	8,004,175	8.21771E+12	8.42315E+12	4,191.3018
2007	1,290,000	0.09	1,982,958	8,657,316	8.88828E+12	9.11048E+12	5,102.3502
2008	1,290,000	0.09	2,062,276	9,363,753	9.61356E+12	9.8539E+12	6,087.7400
2009	1,290,000	0.09	2,144,767	10,127,835	1.0398E+13	1.0658E+13	7,153.5377
2010	1,290,000	0.09	2,230,558	10,954,267	1.12465E+13	1.15277E+13	8,306.3045
2011	1,290,000	0.09	2,319,780	11,848,135	1.21642E+13	1.24683E+13	9,553.1370
2012	1,290,000	0.09	2,412,571	12,814,943	1.31568E+13	1.34857E+13	10,901.7111
2013	1,290,000	0.09	2,509,074	13,860,642	1.42304E+13	1.45862E+13	12,360.3288
2014	1,290,000	0.09	2,609,437	14,991,671	1.53916E+13	1.57764E+13	13,937.9697
2015	1,290,000	0.09	2,713,815	16,214,991	1.66476E+13	1.70638E+13	15,644.3462
2016	1,290,000	0.09	2,822,367	17,538,134	1.8006E+13	1.84562E+13	17,489.9629
2017	1,290,000	0.09	2,935,262	18,969,246	1.94753E+13	1.99622E+13	19,486.1820

註: 1) 연간 보험료수입부족액은 수지균등보험료를 적용할 때와 3%, 6%, 9%를 납부할 때와의 차액임.

라. 加入期間 25年 事業場加入者(1988年 當時 35~39歲)

이들 연령계층에 대한 수지균등 보험료율 추계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정하에서 추계되었다. 다만 가입기간만이 25년으로 적

용되었다.

〈表 3-12〉 25年 加入者의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25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 (C)	월급여액[1] (D)	소득 대체율 (D/A)
1988	480,000	0.03	172,800	460,656	460,656	3,155	0.01
1989	570,000	0.03	205,200	525,990	986,646	6,758	0.01
1990	690,000	0.03	248,400	612,235	1,598,881	10,952	0.02
1991	770,000	0.03	277,200	656,941	2,255,823	15,452	0.02
1992	920,000	0.03	331,200	754,728	3,010,551	20,621	0.02
1993	1,020,000	0.06	734,400	1,609,160	4,619,712	31,644	0.03
1994	1,160,000	0.06	835,200	1,759,640	6,379,352	43,697	0.04
1995	1,290,000	0.06	928,800	1,881,578	8,260,931	56,586	0.04
1996	1,560,000	0.06	1,123,200	2,187,881	10,448,812	71,573	0.05
1997	1,860,000	0.06	1,339,200	2,508,296	12,957,109	88,754	0.05
1998	1,860,000	0.09	1,339,200	2,411,823	15,368,932	105,275	0.06
1999	1,934,400	0.09	2,089,152	3,617,735	18,986,668	130,056	0.07
2000	2,011,776	0.09	2,172,718.1	3,617,735	22,604,403	154,837	0.08
2001	2,092,247	0.324	8,134,656.5	13,023,847	35,628,250	244,049	0.12
2002	2,175,936	0.324	8,460,042.8	13,023,847	48,652,097	333,260	0.15
2003	2,262,974	0.324	8,798,444.5	13,023,847	61,675,944	422,472	0.19
2004	2,353,493	0.324	9,150,382.2	13,023,847	74,699,792	511,684	0.22
2005	2,447,633	0.324	9,516,397.5	13,023,847	87,723,639	600,896	0.25
2006	2,545,538	0.324	9,897,053.4	13,023,847	100,747,486	690,107	0.27
2007	2,647,360	0.324	10,292,935.6	13,023,847	113,771,333	779,319	0.29
2008	2,753,254	0.324	10,704,653.0	13,023,847	126,795,180	868,531	0.32
2009	2,863,384	0.324	11,132,839.1	13,023,847	139,819,027	957,743	0.33
2010	2,977,919	0.324	11,578,152.7	13,023,847	152,842,874	1,046,954	0.35
2011	3,097,036	0.324	12,041,278.8	13,023,847	165,866,721	1,136,166	0.37
2012	3,220,918	0.324	12,522,929.9	13,023,847	178,890,569	1,225,378	0.38

註: 1) 월급여액= $\frac{C}{\frac{1-(1+r)^{-n}}{r}}$, r: 이자율, n: 수급기간(17년)

추계결과 25년 가입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38%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32.4%의 보험료를 2012년까지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2001년부터 32.4%가 아닌 9%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들 연령계층이 후세대에 전가하는 보험료부담액은 156조 6천억원이 된다. 이 부담규모는 앞에서의 추계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表 3-13〉 25年 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보험료수입 부족액[1] (A)	A×가입자수 (B)	B×(1+가입자 증가율)(3%) (C)	C의 누적합계 (백억)
1988	480,000	0.03	172,800	0	0	0	0
1989	570,000	0.03	205,200	0	0	0	0
1990	690,000	0.03	248,400	0	0	0	0
1991	770,000	0.03	277,200	0	0	0	0
1992	920,000	0.03	331,200	0	0	0	0
1993	1,020,000	0.06	734,400	0	0	0	0
1994	1,160,000	0.06	835,200	0	0	0	0
1995	1,290,000	0.06	928,800	0	0	0	0
1996	1,560,000	0.06	1,123,200	0	0	0	0
1997	1,860,000	0.06	1,339,200	0	0	0	0
1998	1,860,000	0.09	1,339,200	0	0	0	0
1999	1,860,000	0.09	2,089,152	0	0	0	0
2000	1,860,000	0.09	2,172,718	0	0	0	0
2001	1,860,000	0.09	2,259,626	9,782,356	7.71164E+12	8.17434E+12	817.4335
2002	1,860,000	0.09	2,350,011	10,580,596	8.34091E+12	8.84136E+12	1,701.5696
2003	1,860,000	0.09	2,444,012	11,443,973	9.02152E+12	9.56282E+12	2,657.8512
2004	1,860,000	0.09	2,541,772	12,377,801	9.75768E+12	1.03431E+13	3,692.1654
2005	1,860,000	0.09	2,643,443	13,387,830	1.05539E+13	1.11871E+13	4,810.8796
2006	1,860,000	0.09	2,749,181	14,480,276	1.14151E+13	1.21E+13	6,020.8808
2007	1,860,000	0.09	2,859,148	15,661,867	1.23466E+13	1.30874E+13	7,329.6182
2008	1,860,000	0.09	2,973,514	16,939,875	1.33541E+13	1.41553E+13	8,745.1486
2009	1,860,000	0.09	3,092,455	18,322,169	1.44438E+13	1.53104E+13	10,276.1862
2010	1,860,000	0.09	3,216,153	19,817,258	1.56224E+13	1.65597E+13	11,932.1565
2011	1,860,000	0.09	3,344,799	21,434,347	1.68971E+13	1.7911E+13	13,723.2540
2012	1,860,000	0.09	3,478,591	23,183,389	1.8276E+13	1.93725E+13	15,660.5050

註: 1) 연간 보험료수입 부족액은 수지균등 보험료를 적용할 때와 3%, 6%, 9%를 납부할 때와의 차액임.

마. 加入期間 20年 事業場加入者(1988年 當時 40~44歲)

이들 연령계층에 대한 수지균등 보험료율 추계도 다른 연령계층과 동일한 가정에서 이루어 졌다.

〈表 3-14〉 20年 加入者의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20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 (C)	월급여액[1] (D)	소득 대체율 (D/A)
1988	510,000	0.03	183,600	402,290	402,290	2,755.638	0.01
1989	600,000	0.03	216,000	455,079	857,369	5,872.876	0.01
1990	690,000	0.03	248,400	503,212	1,360,582	9,319.822	0.01
1991	820,000	0.03	295,200	575,020	1,935,602	13,258.640	0.02
1992	920,000	0.03	331,200	620,331	2,555,934	17,507.834	0.02
1993	1,020,000	0.06	734,400	1,322,612	3,878,546	26,567.569	0.03
1994	1,160,000	0.06	835,200	1,446,296	5,324,843	36,474.520	0.03
1995	1,380,000	0.06	993,600	1,654,417	6,979,260	47,807.073	0.03
1996	1,560,000	0.06	1,123,200	1,798,279	8,777,539	60,125.065	0.04
1997	1,760,000	0.06	1,267,200	1,950,796	10,728,335	73,487.779	0.04
1998	1,860,000	0.09	1,339,200	1,982,343	12,710,678	87,066.585	0.05
1999	1,934,400	0.09	2,089,152	2,973,514	15,684,193	107,434.795	0.06
2000	2,011,776	0.09	2,172,718	2,973,514	18,657,708	127,803.004	0.06
2001	2,092,247.0	0.421	10,570,032	13,909,441	32,567,149	223,080.963	0.11
2002	2,175,936.9	0.421	10,992,833	13,909,441	46,476,590	318,358.921	0.15
2003	2,262,974.4	0.421	11,432,546	13,909,441	60,386,031	413,636.879	0.18
2004	2,353,493.4	0.421	11,889,848	13,909,441	74,295,472	508,914.837	0.22
2005	2,447,633.1	0.421	12,365,442	13,909,441	88,204,913	604,192.796	0.25
2006	2,545,538.4	0.421	12,860,060	13,909,441	102,114,354	699,470.754	0.27
2007	2,647,360.0	0.421	13,374,462	13,909,441	116,023,795	794,748.712	0.30

註: 1) 월급여액= $\frac{C}{\frac{1-(1+r)^{-n}}{r}}$, r: 이자율, n: 수급기간(17년)

추계결과 20년 가입 후 30%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2.1%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에 현재와 같은 수준인 9%를 납부하고 2008년에 소득대체율 30%에 해당하는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들 연령계층이 후세대에 전

가하는 부담규모는 78조 5천억원이 된다.

〈表 3-15〉 20年 加入者의 後世代轉嫁規模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보험료 부족액(A)	A×가입자수 (B)	B×(1+가입자수 증가율(3%))(C)	C의 누적합계 (백억)
1988	510,000	0.03	183,600	0	0	0	0
1989	600,000	0.03	216,000	0	0	0	0
1990	690,000	0.03	248,400	0	0	0	0
1991	820,000	0.03	295,200	0	0	0	0
1992	920,000	0.03	331,200	0	0	0	0
1993	1,020,000	0.06	734,400	0	0	0	0
1994	1,160,000	0.06	835,200	0	0	0	0
1995	1,380,000	0.06	993,600	0	0	0	0
1996	1,560,000	0.06	1,123,200	0	0	0	0
1997	1,760,000	0.06	1,267,200	0	0	0	0
1998	1,860,000	0.09	1,339,200	0	0	0	0
1999	1,934,400	0.09	2,089,152	0	0	0	0
2000	2,011,776	0.09	2,172,718	0	0	0	0
2001	2,092,247	0.09	2,259,626	13,837,435	8.30509E+12	8.76042E+12	876.04
2002	2,175,936	0.09	2,350,011	14,966,570	8.98279E+12	9.47526E+12	1,823.57
2003	2,262,974	0.09	2,444,012	16,187,842	9.71578E+12	1.02484E+13	2,848.41
2004	2,353,493	0.09	2,541,772	17,508,770	1.05086E+13	1.10847E+13	3,956.88
2005	2,447,633	0.09	2,643,443	18,937,486	1.13661E+13	1.19892E+13	5,155.81
2006	2,545,538	0.09	2,749,181	20,482,784	1.22936E+13	1.29676E+13	6,452.56
2007	2,647,360	0.09	2,859,148	22,154,180	1.32967E+13	1.40257E+13	7,855.13

註: 연간보험료수입부족액은 수지균등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와 3%, 6%, 9%를 납부할 때의 보험료 납부액 차액임.

가입기간에 따른 수지균등 보험료 추계결과 가입기간이 35년, 30년, 25년, 20년으로 줄어들면서 수지균등보험료가 25.6%에서 27.6%, 32.4%, 42.1%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높은 수지균등보험료를 내야하는 계층이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막대한 규모

의 후세대 전가를 방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3. 巨視變數假定別 收支均等保險料率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수지균등 보험료는 거시변수에 대한 가정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거시변수인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동일 연령계층에 대한 수지균등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편의상 20년 가입가능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가. 賃金上昇率 4%, 利子率 4%

앞에서 <表 3-14>에서 추계한 바와 같이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를 가정한 경우에는 20년 가입가능 사업장가입자의 수지균등 보험료는 42.1%임을 알 수 있다.

나. 賃金上昇率 4%, 利子率 5%

가. 의 경우보다 이자율이 1% 상승된 가정 하에서는 수지균등보험료가 36%로 인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16〉 賃金上昇率 4%, 利子率 5% 時의 收支均等保險料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20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C)	월급여액 (D)	소득 대체율 (D/A)
1988	510,000	0.03	183,600	487,145	487,145	3,600	0.01
1989	600,000	0.03	216,000	545,821	1,032,966	7,635	0.01
1990	690,000	0.03	248,400	597,804	1,630,770	12,054	0.02
1991	820,000	0.03	295,200	676,603	2,307,374	17,055	0.02
1992	920,000	0.03	331,200	722,968	3,030,342	22,399	0.02
1993	1,020,000	0.06	734,400	1,526,764	4,557,107	33,684	0.03
1994	1,160,000	0.06	835,200	1,653,638	6,210,746	45,907	0.04
1995	1,380,000	0.06	993,600	1,873,580	8,084,327	59,756	0.04
1996	1,560,000	0.06	1,123,200	2,017,105	10,101,433	74,665	0.05
1997	1,760,000	0.06	1,267,200	2,167,342	12,268,775	90,685	0.05
1998	1,860,000	0.09	1,339,200	2,181,415	14,450,191	106,809	0.06
1999	1,934,400	0.09	2,089,152	3,240,960	17,691,151	130,765	0.07
2000	2,011,776	0.09	2,172,718	3,210,094	20,901,245	154,493	0.08
2001	2,092,247	0.36	9,051,060	12,735,751	33,636,996	248,631	0.12
2002	2,175,936	0.36	9,413,103	12,614,458	46,251,455	341,872	0.16
2003	2,262,974	0.36	9,789,627	12,494,320	58,745,776	434,224	0.19
2004	2,353,493	0.36	10,181,212	12,375,327	71,121,103	525,698	0.22
2005	2,447,633	0.36	10,588,460	12,257,466	83,378,570	616,300	0.25
2006	2,545,538	0.36	11,011,999	12,140,729	95,519,299	706,039	0.28
2007	2,647,360	0.36	11,452,479	12,025,103	107,544,402	794,924	0.30

다. 賃金上昇率 4%, 利子率 6%

임금상승률은 4%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자율을 6%로 2% 인상시키는 경우 수지균등 보험료가 31%로 인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자율 1% 증가에 수지균등 보험료 5%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17〉 賃金上昇率 4%, 利子率 6%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20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C)	월급여액 (D)	소득 대체율 (D/A)
1988	510,000	0.03	183,600	588,830	588,830	4,683	0.01
1989	600,000	0.03	216,000	653,529	1,242,359	9,881	0.02
1990	690,000	0.03	248,400	709,017	1,951,377	15,520	0.02
1991	820,000	0.03	295,200	794,906	2,746,283	21,843	0.03
1992	920,000	0.03	331,200	841,364	3,587,648	28,535	0.03
1993	1,020,000	0.06	734,400	1,760,032	5,347,680	42,534	0.04
1994	1,160,000	0.06	835,200	1,888,306	7,235,987	57,553	0.05
1995	1,380,000	0.06	993,600	2,119,277	9,355,265	74,409	0.05
1996	1,560,000	0.06	1,123,200	2,260,099	11,615,364	92,385	0.06
1997	1,760,000	0.06	1,267,200	2,405,523	14,020,888	111,518	0.06
1998	1,860,000	0.09	1,339,200	2,398,303	16,419,191	130,593	0.07
1999	1,934,400	0.09	2,089,152	3,529,578	19,948,769	158,667	0.08
2000	2,011,776	0.09	2,172,718.08	3,462,982	23,411,752	186,210	0.09
2001	2,092,247	0.31	7,695,284.6	11,570,862	34,982,615	278,242	0.13
2002	2,175,937	0.31	8,003,096.0	11,352,544	46,335,159	368,537	0.17
2003	2,262,974	0.31	8,323,219.8	11,138,345	57,473,505	457,128	0.20
2004	2,353,493	0.31	8,656,148.6	10,928,188	68,401,693	544,048	0.23
2005	2,447,633	0.31	9,002,394.6	10,721,995	79,123,689	629,328	0.26
2006	2,545,538	0.31	9,362,490.4	10,519,694	89,643,383	712,999	0.28
2007	2,647,360	0.31	9,736,990.0	10,321,209	99,964,593	795,091	0.30

라. 賃金上昇率 5%, 利子率 5%

임금상승률을 5%로 그리고 이자율을 5%로 가정하는 경우 수지균등 보험료는 38%가 됨을 알 수 있다. 임금상승률 4% 이자율 5%를 가정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수지균등 보험료가 2% 인상된다. 즉, 이

자율을 동일하게 한 가운데 임금상승률을 1% 증가시키는 데 수지균등보험료가 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8〉 賃金上昇率 5%, 利子率 5%시의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20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C)	월급여액 (D)	소득 대체율 (D/A)
1988	510,000	0.03	183,600	487,145	487,145	3,600	0.01
1989	600,000	0.03	216,000	545,821	1,032,966	7,635	0.01
1990	690,000	0.03	248,400	597,804	1,630,770	12,054	0.02
1991	820,000	0.03	295,200	676,603	2,307,374	17,055	0.02
1992	920,000	0.03	331,200	722,968	3,030,342	22,399	0.02
1993	1,020,000	0.06	734,400	1,526,764	4,557,107	33,684	0.03
1994	1,160,000	0.06	835,200	1,653,638	6,210,746	45,907	0.04
1995	1,380,000	0.06	993,600	1,873,580	8,084,327	59,756	0.04
1996	1,560,000	0.06	1,123,200	2,017,105	10,101,433	74,665	0.05
1997	1,760,000	0.06	1,267,200	2,167,342	12,268,775	90,685	0.05
1998	1,860,000	0.09	1,339,200	2,181,415	14,450,191	106,809	0.06
1999	1,953,000	0.09	2,109,240	3,272,123	17,722,314	130,996	0.07
2000	2,050,650	0.09	2,214,702	3,272,123	20,994,438	155,182	0.08
2001	2,153,182	0.38	9,766,835	13,742,918	34,737,356	256,764	0.12
2002	2,260,841	0.38	10,255,177	13,742,918	48,480,275	358,346	0.16
2003	2,373,883	0.38	10,767,936	13,742,918	62,223,194	459,928	0.19
2004	2,492,577	0.38	11,306,333	13,742,918	75,966,113	561,510	0.23
2005	2,617,206	0.38	11,871,649	13,742,918	89,709,032	663,092	0.25
2006	2,748,067	0.38	12,465,232	13,742,918	103,451,951	764,674	0.28
2007	2,885,470	0.38	13,088,494	13,742,918	117,194,869	866,257	0.30

마. 賃金上昇率 5%, 利子率 6%

임금상승률을 5%로 그리고 이자율을 6%로 조정하는 경우 수지균등

보험료는 32%로 인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19〉 賃金上昇率 5%, 利子率 6%시의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A)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 납부액의 20년 후 가치 (B)	B의 누적합계(C)	월급여액 (D)	소득 대체율 (D/A)
1988	510,000	0.03	183,600	588,830	588,830	4,683	0.01
1989	600,000	0.03	216,000	653,529	1,242,359	9,881	0.02
1990	690,000	0.03	248,400	709,017	1,951,377	15,520	0.02
1991	820,000	0.03	295,200	794,906	2,746,283	21,843	0.03
1992	920,000	0.03	331,200	841,364	3,587,648	28,535	0.03
1993	1,020,000	0.06	734,400	1,760,032	5,347,680	42,534	0.04
1994	1,160,000	0.06	835,200	1,888,306	7,235,987	57,553	0.05
1995	1,380,000	0.06	993,600	2,119,277	9,355,265	74,409	0.05
1996	1,560,000	0.06	1,123,200	2,260,099	11,615,364	92,385	0.06
1997	1,760,000	0.06	1,267,200	2,405,523	14,020,888	111,518	0.06
1998	1,860,000	0.09	1,339,200	2,398,303	16,419,191	130,593	0.07
1999	1,953,000	0.09	2,109,240	3,563,516	19,982,708	158,937	0.08
2000	2,050,650	0.09	2,214,702	3,529,898	23,512,606	187,013	0.09
2001	2,153,182.5	0.32	8,345,735	12,548,900	36,061,506	286,823	0.13
2002	2,260,841.6	0.32	8,763,022	12,430,514	48,492,021	385,692	0.17
2003	2,373,883.7	0.32	9,201,173	12,313,245	60,805,266	483,628	0.20
2004	2,492,577.9	0.32	9,661,231	12,197,082	73,002,349	580,641	0.23
2005	2,617,206.8	0.32	10,144,293	12,082,015	85,084,365	676,738	0.26
2006	2,748,067.1	0.32	10,651,508	11,968,034	97,052,399	771,928	0.28
2007	2,885,470.5	0.32	11,184,083	11,855,128	108,907,528	866,221	0.30

바. 賃金上昇率 6%, 利子率 6%

임금상승률을 6%로 하고 이자율을 6%로 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5% 이자율 6%에 비해 수지균등 보험료가 2% 인상된 34%가 된다.

〈表 3-20〉 賃金上昇率 6%, 利子率 6%時의 收支均等保險料率

(단위: 원)

연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 료율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보험료납 부액의 20년 후 가치(B)	B의 누적합계(C)	월급여액 (D)	소득 대체율 (D/A)
1988	510,000	0.03	183,600	588,830	588,830	4,683	0.01
1989	600,000	0.03	216,000	653,529	1,242,359	9,881	0.02
1990	690,000	0.03	248,400	709,017	1,951,377	15,520	0.02
1991	820,000	0.03	295,200	794,906	2,746,283	21,843	0.03
1992	920,000	0.03	331,200	841,364	3,587,648	28,535	0.03
1993	1,020,000	0.06	734,400	1,760,032	5,347,680	42,534	0.04
1994	1,160,000	0.06	835,200	1,888,306	7,235,987	57,553	0.05
1995	1,380,000	0.06	993,600	2,119,277	9,355,265	74,409	0.05
1996	1,560,000	0.06	1,123,200	2,260,099	11,615,364	92,385	0.06
1997	1,760,000	0.06	1,267,200	2,405,523	14,020,888	111,518	0.06
1998	1,860,000	0.09	1,339,200	2,398,303	16,419,191	130,593	0.07
1999	1,971,600	0.09	2,129,328	3,597,454	20,016,646	159,207	0.08
2000	2,089,896	0.09	2,257,087	3,597,454	23,614,101	187,820	0.09
2001	2,215,289.8	0.34	9,025,090	13,570,399	37,184,500	295,755	0.13
2002	2,348,207.1	0.34	9,566,595	13,570,399	50,754,899	403,690	0.17
2003	2,489,099.6	0.34	10,140,591	13,570,399	64,325,298	511,626	0.21
2004	2,638,445.5	0.34	10,749,027	13,570,399	77,895,697	619,561	0.23
2005	2,796,752.3	0.34	11,393,968	13,570,399	91,466,096	727,496	0.26
2006	2,964,557.4	0.34	12,077,606	13,570,399	105,036,496	835,432	0.28
2007	3,142,430.9	0.34	12,802,263	13,570,399	118,606,895	943,367	0.30

결론적으로 임금상승률의 1% 인상은 수지균등보험료의 2% 인상을 그리고 이자율 1% 인상은 수지균등보험료의 4% 인하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3-5〕 國民年金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

(임금상승률 4%, 이자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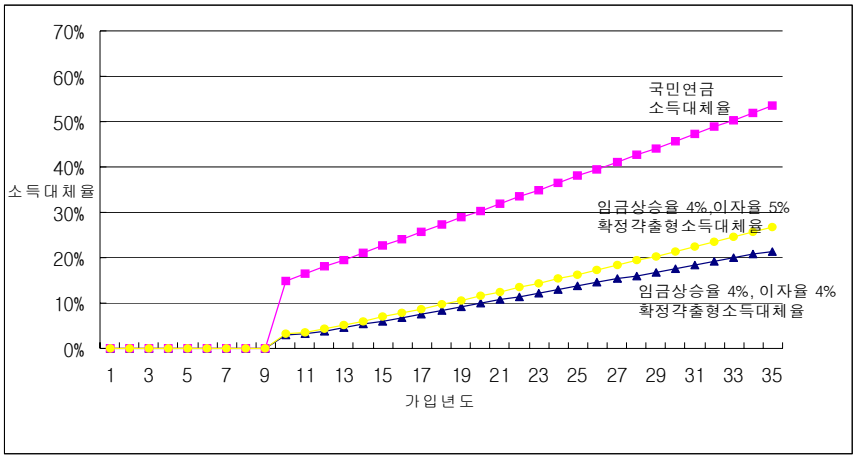

〔圖 3-7〕 國民年金對比 確定醵出型年金의 所得代替率

(임금상승률 4%, 이자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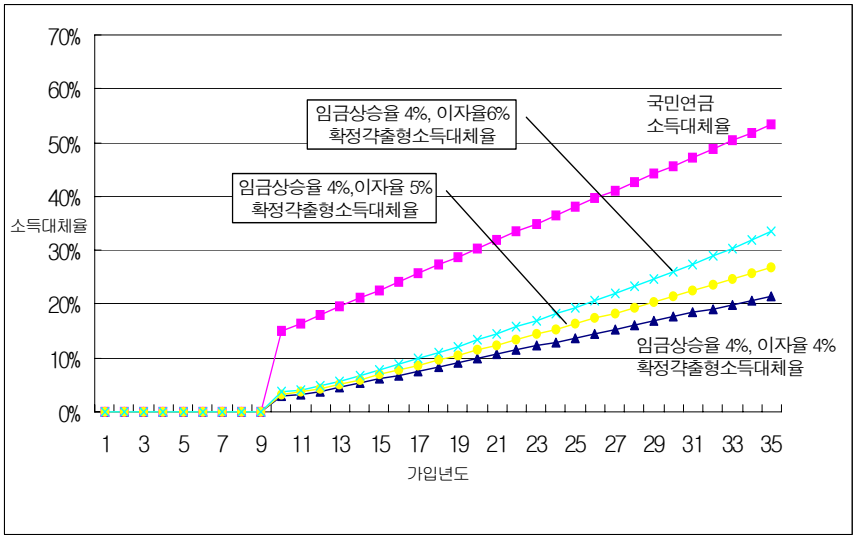

第 4 章 公的年金의 貯蓄行態에 미치는 波及效果

第 1 節 保險料引上에 따른 加入種別 保險料 追加負擔 規模

1. 事業場加入者의 保險料追加負擔

앞의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의 보험료수준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 현 제도상으로는 2010년 이후에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하여 보험료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동일해 지는 2005년 이후 즉 2006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추가부담규모를 추계해 보았다.

〈表 4-1〉 加入種別 所得申告者數 및 平均所得月額

(단위: 명, 원)

구분	소득신고자수	평균소득월액
전체	10,547,884	1,130,528
사업장가입자	5,238,1490	1,386,097
지역가입자	5,309,735	878,405
도시지역	3,914,291	956,490
농어촌지역	1,395,444	659,371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1999.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사업장가입자의 수에 곱하여 추계하였다.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인상의 1/2만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추가인상액의 1/2만을 근로자부담으로 계산하였다. 1999년 12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은 138만원이고 가입자수는 5,238,149명이다. 아래 <表 4-2>는 제3장에서 확정갹출 보험료 추계시 사용된 거시변수의 가정별로 사업장 근로자의 본인부담규모를 추계한 것이다.

〈表 4-2〉 保險料引上에 따른 事業場加入者의 保險料追加負擔額

(단위: 10억)

보험료 인상 시점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수준별연간보험료추가부담[1]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4% 보 험 료: 18%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5% 보 험 료: 14%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6% 보 험 료: 11%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5% 보 험 료: 16%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6% 보 험 료: 12.5%
2006	4,988(3,942)[2]	2,771(2,190)	1,108(876)	4,109(3,066)	2,054(1,533)
2007	5,188	2,882	1,152	4,314	2,157
2008	5,395	2,802	1,199	4,530	2,265
2009	5,611	2,997	1,246	4,756	2,378
2010	5,835	3,117	1,296	4,994	2,497
2011	6,069	3,242	1,348	5,244	2,622
2012	6,312	3,371	1,402	5,506	2,753
2013	6,564	3,506	1,458	5,782	2,891
2014	6,827	3,646	1,517	6,071	3,035
2015	7,100	3,792	1,577	6,374	3,187

註: 1) 추가 보험료부담액은 연구의 편의상 평균소득자(129만원)의 경우를 전체 가입자수(사업장: 5,238,149명)로 곱하여 구하였음.
2) ( )의 수치는 표준보수 월액이 2000년과 동일한 경우의 금액임.

표준보수월액이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추가부담 규모는 최저 1조 1080억원에서 최고 4조 988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표준보수월액이 현재의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최저 8760억원에서 최고 3조 9420억원으로 추계된다.

2. 地域加入者의 保險料追加負擔

지역가입자도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추가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87만원이므로 인상되는 보험료와 2006년 당시 보험료인 9%와의 차이를 가입자수인 5,309,735명에 곱하여 구하였다.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인상되는 보험료전액이 지역가입자부담이 된다.

〈表 4-3〉 保險料引上에 따른 地域加入者의 保險料追加負擔額

(단위: 10억)

보험료 인상 시점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수준별 연간보험료추가부담[1]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4% 보 험 료: 18%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5% 보 험 료: 14%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6% 보 험 료: 11%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5% 보 험 료: 16%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6% 보 험 료: 12.5%
2006	6,375(5,038)[2]	3,542(2,799)	1,416(1,119)	5,252(3,919)	2,626(1,959)
2007	6,630	3,683	1,473	5,514	2,757
2008	6,896	3,831	1,532	5,790	2,895
2009	7,171	3,984	1,593	6,079	3,039
2010	7,458	4,143	1,657	6,383	3,191
2011	7,757	4,309	1,723	6,703	3,351
2012	8,067	4,481	1,792	7,038	3,519
2013	8,390	4,661	1,864	7,390	3,695
2014	8,725	4,847	1,939	7,759	3,879
2015	9,074	5,041	2,016	8,147	4,073

註: 1) 추가 보험료부담액은 연구의 편의상 평균소득자(87만원)의 경우를 전체 가입자수(지역: 5,309,735명)로 곱하여 구하였음.
2) ( )의 수치는 표준보수월액이 2000년과 동일한 경우의 금액임.

<表 4-3>에 의하면 2006년에 표준보수월액이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추가부담규모는 최저 1조 4603억원에서 최고 6조 375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표준보수월액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최저 1조 1190억원에서 최고 5조 380억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3. 全加入者의 保險料 追加負擔規模

사업장가입자의 추가부담과 지역가입자의 추가부담을 합하여 전가입자의 추가부담규모를 구하였다. 추가부담의 규모는 보험료인상 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최저 2조 5240억원에서 최고 11조 363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 된다.

〈表 4-4〉 保險料引上에 따른 全體加入者의 追加負擔

(단위: 10억)

보험료 인상 시점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수준별 연간보험료추가부담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4% 보 험 료: 18%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5% 보 험 료: 14%	임금상승률: 4% 이 자 율: 6% 보 험 료: 11%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5% 보 험 료: 16%	임금상승률: 5% 이 자 율: 6% 보 험 료: 12.5%
2006	11,362(8,980)	6,313(4,989)	2,524(1,968)	9,361(6,985)	4,626(3,492)
2007	11,818	6,485	2,625	9,828	4,914
2008	12,291	6,713	2,731	10,320	5,160
2009	12,782	6,981	2,839	10,835	5,417
2010	13,293	7,260	2,953	11,377	5,688
2011	13,826	7,551	3,071	11,947	5,973
2012	14,379	7,852	3,194	12,544	6,272
2013	14,954	8,167	3,322	13,172	6,586
2014	15,552	8,493	3,456	13,830	6,914
2015	16,174	8,833	3,593	14,521	7,260

4. 都市勤勞者家計의 收支現況

이와 같은 보험료 추가부담은 가입자들의 저축이나 소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양인 경우 즉, 가계가 흑자를 내는 경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저축으로 간주된다. 가계가 흑자인 경우 저축을 줄여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자인 경우에는 소비를 줄여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表 4-5>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흑자액은 1996년

과 1999년이 거의 동일한 45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근로자가구의 가계흑자액은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노인근로자가구의 소득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表 4-5〉 年齡階層別 年平均 都市勤勞者 家計黑子額[7]規模

(단위: 원)

가구주 연령계층[1]	'96년도 가계흑자액평균	표본수	'99년도 가계흑자액평균	표본수
20~29세	433,726	935	373,387	735
30~39세	501,094	2,569	518,427	2,510
40~49세	372,365	1,250	494,022	1,278
50~59세	375,000	580	307,309	571
60세 이상	623,998	228	225,123	217
전체	453,144	5,562	456,215	5,311

註: 1) 도시근로자가구 중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소득계층별로는 소득계층 3등급 이하에 속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계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1999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계층 8등급 이하인 가구의 흑자액은 1999년에 감소한 반면 11등급 이상인 가구의 흑자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7) 가계흑자액은 가계의 소득에서 소비를 감한 금액을 의미함.

〈表 4-6〉 所得階層別 都市勤勞者 家計黑子額規模

(단위: 원)

소득계층	1996년도 가계흑자액평균	표본수[1)]	1999년도 가계흑자액평균	표본수
30만원 이하	-628,774	73	-690,300	126
31~60만원	-135,615	202	-190,489	254
61~90만원	29,162	536	-60,060	539
91~120만원	136,269	782	49,024	746
121~150만원	252,311	899	158,194	801
151~180만원	375,866	753	253,668	650
181~210만원	449,853	597	415,451	499
211~240만원	591,176	413	534,835	369
241~270만원	671,915	311	731,453	365
271~300만원	843,590	261	795,671	224
301~330만원	854,705	190	1,128,282	181
331~360만원	963,661	150	1,146621	167
361만원 이상	1,795,583	395	2,409,789	402
전체	453,144	5,562	456,215	5,325

註: 1) 도시근로자가구 중 홑벌이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資料: 통계청,『도시가계조사』, 각연도.

第 2 節 國民年金保險料가 家計의 貯蓄率에 미치는 影響分析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장,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 확대되어 1997년 12월 현재 적용대상인구는 783만명에 이른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도시지역자영자 890만명에게도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전망에 따르면 9%에서 2009년까지 유지되다가 2025년까지 18%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

인 확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강제저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취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후대책에 실패한다는 가정하에서 또는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나름대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준비해 왔다고 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민간저축을 위축시키는 대체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저축수준과 비교함으로 써 간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수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들의 경우 직역연금제도가 정착되어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의 저축수준과 봉급생활자 및 자영자의 수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 및 보험료의 인상이 민간저축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1. 生涯週期別 效用函數를 이용한 貯蓄率變化 分析

가. 年金制度의 導入과 貯蓄率變化

국민연금의 도입이 민간의 저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위해 아래 식 1)과 같은 효용함수를 정의하였다.

$$V=\int_0^R U_1[(W(t)-sW(t))]dt+\int_R^T U_2[S(s(t),R,W(t))]dt \quad 1)$$

$$(U_i'>0,\ U_i''<0)$$

근로자의 생애를 근로기간(R)과 은퇴기간(T-R)으로 양분하였고 근로기간에는 총소득(W)에서 저축률 s에 소득(W)을 곱한 저축액을 감한 잔여소득수준이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퇴기간(T-R)에는 근로기간 중 저축의 총합에 의해 조성된 저축 S(·)가 이기간의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 1)에서 근로기간의 저축총합은 은퇴기간의 소득과 동일하다($\int_0^R (sW(t))dt = \int_R^T S(s,R,W(t))dt$).

식 1)에서 주어진 소득수준 (W)과 은퇴시기(R)에 대해 전생애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저축률(S)은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의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하는 수준일 것이다.

$$\frac{\partial V}{\partial s} = \int_R^T U'_2(s) - \int_0^R U'_1(s) = 0 \qquad 2)$$

식 2)가 의미하는 바는 연금제도이전에도 근로자들은 저축을 통하여 전생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준의 노후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 1)과 같은 생애주기효용함수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효용함수는 아래의 식 3)과 같다.

$$V = \int_0^R U_1[(W(t) - \Theta W(t) - sW(t)(1-\Theta))]dt + \int_R^T U_2[S(s,R,W(t)) + P(R,W(t))]dt \qquad 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 ΘW 를 내야만 하며 은퇴기간동안은 $P(R,W)$ 만큼의 연금을 받게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구조에 따라 두가지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1) 確定醵出方式 年金制度

첫 번째로, 확정갹출방식(Defined Contribution)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시점 R에서 납입보험료총액의 미래가치와 은퇴 후 급여총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한 경우이다. 즉, $\int_0^R \Theta W(t)dt = \int_R^T P(R, W(t))dt$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비해 소득수준(W)과 은퇴시기(R)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생애효용극대화를 충족시키는 저축수준은 이전경우와 같이 근로기간의 한계효용함수와 은퇴기간의 한계효용함수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frac{\partial V}{\partial s} = \int_R^T U'_2(s^*) - \int_0^R U'_1(s^*) = 0 \quad 4)$$

이 경우 저축률 s^*은 식 2)의 저축률 s 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s > s^*$). 즉,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연금보험료의 지출(ΘW)이 발생되므로 저축을 줄이지 않고는 은퇴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한계효용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갹출급여방식의 연금제도 도입은 기존의 저축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確定給與方式 年金制度

두 번째는,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점 R에서 납입보험료의 총액의 미래가치가 은퇴 후 급여총

액의 현재가치 보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우선 큰 경우만을 고려 해보자. 즉, $\int_0^R \Theta W(t)dt < \int_R^T P(R, W(t))dt$을 의미하며 연금부담의 후세대 전가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경우의 전생애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저축수준은 아래 식 5)에서 구해진다.

$$\frac{\partial V}{\partial s} = \int_R^T U'_2(s^*) - \int_0^R U'_1(s^*) = 0 \quad 5)$$

이 경우 식 3)의 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은퇴기간에 수령하는 연금총액은 식 3)보다 크다. 한계효용을 동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축률, s^*는 s°보다 더 낮아야 한다($s > s^\circ > s^*$). 즉, 후세대 전가가 되는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확정갹출시 보다 저축률이 더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나. 隱退時期와 貯蓄率

직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은퇴시기는 달리 결정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 은퇴시기는 직업의 분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직장근로자보다 자유스럽게 은퇴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은퇴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 직장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은퇴시점의 차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저축률의 변화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사망직전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은퇴기간은 0(R=T)이 된다. 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은퇴기

간이 없는 자영업자의 전생애 효용함수는 아래 6)과 같다.

$$V=\int_0^T U_1[W(t)-\Theta W(t)]dt \qquad 6)$$

이 경우 이들은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로기간의 저축은 0이 된다. 위의 식 1), 3), 5)에서 은퇴기간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저축은 모두 0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기간이 없는 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장근로자보다 은퇴시기가 일반적으로 늦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저축률의 하락은 직장근로자 보다 규모가 클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은퇴시기(R^s)가 직장근로자들의 은퇴시기(R) 보다 늦은 경우 이들의 생애주기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V=\int_0^{R^s} U_1[(W(t)-\Theta W(t)-s^s W(t)(1-\Theta))]dt+ \int_{R^s}^T U_2[S(s^s, R^s, W(t))+P(R^s, W(t))]dt \qquad 7)$$

앞의 식 3)과 비교해 여타조건이 동일하고 은퇴시기만 늦어지는 경우 저축률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s > s^s$). 은퇴시기가 늦어지면 근로기간이 길어져 낮은 저축률로도 짧은 노후에 동일한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int_0^{R^s} U'_1(s^s)-\int_0^R U'_1(s)=0$). 즉, 국민연금이 도입됨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은 직장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計量分析

계량분석의 목적은 위 모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연금제도의 도입

으로 인해 실제로 세 집단간 저축률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이다. 1993년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6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보험료도 1992년의 3%에서 6%로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일반직장근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직역연금의 보험료는 1993년에 11%로 국민연금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연금급여도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당시 급여수준을 적용하여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경우 연금을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계량분석에서는 일반직장 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간의 저축률의 차이가 1993년에 나타나고 있는 지와 자영업자들의 은퇴시기결정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가. 統計資料

한국가구패널조사는 총 4,500가구의 10,460 가구원에 대한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 대한 각종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총 4,500가구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누락된 가구와 직장근로자나 자영업, 자유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나 가구월소득이 60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제외 시켰다. 가구월소득 하한선을 60만원으로 정한 것은 각 직역별로 소득의 하한선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직장근로자를 특수직역 연금대상자와 일반직장 근로자로 분류하였는데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최저가구소득이 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이 39세에서 59세 이하인 가구만을 포함시켰다. 39세 이하의 계층은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그룹별 차별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59세

이상계층은 이미 은퇴하여 노후대책을 관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이다.

〈表 4-7〉 分析對象別 主要變數의 平均값

변수명	변수설명	표본 전체	직장 근로자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	자영 업자
Group0	· 직장근로자(명)	1,020	426		
Group1	· 특수직역연금대상자(명)	1,020		136	
Group2	· 자영업자(명)	1,020			458
Saverate	· 연간저축률(연간소득-연간소비지출) /연간소득(%)	0.369	0.394	0.435	0.327
Hold	· 연금보험상품보유여부 (1: 보유, 0: 미보유)	0.399	0.424	0.477	0.351
Income	· 월가구소득(만원)	179	171	183	185
House	· 주택소유여부(%) (1: 소유, 0: 무소유)	0.72	0.69	0.88	0.70
Age	· 가구주 연령(세)	46.7	46.2	48.9	46.6
Education	· 가구주 교육수준(년) (9: 중졸, 12: 고졸 14: 전문대졸)	10.9	10.9	12.4	10.4
Sex	· 성별(%) (남성: 1, 여성: 0)	0.95	0.96	0.97	0.94
City	· 서울 및 광역시 거주여부(%) (1: Yes, 0: No)	0.63	0.64	0.55	0.63
Jongyo	· 종교소유 여부(%) (1: 소유, 0: 무교)	0.57	0.59	0.61	0.55
Health	· 건강에 대한 만족정도: (1: 매우불만 ~ 5: 매우만족)	3.36	3.37	3.38	3.35
Leisure	· 여가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용의가 있는지 여부(%) (1: Yes, 0: No)	0.33	0.30	0.38	0.36
Expect	· 내년가구경제사정에 대한 기대정도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2.9	2.9	2.7	3.1

최종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구의 수는 1,020가구였다. 총 1,020가구 중 가구주가 일반직장 근로자인 가구는 426가구였고, 가구주가 특수직역 연금대상자인 가구의 수가 136가구, 그리고

가구주가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458가구이다. 특수직역연금 대상자 136명 중 사학연금 대상자가 54명,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75명 그리고 군인연금 대상자가 7명이다.

나. 計量모델

1) 貯蓄率推定式

위의 전생애효용함수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저축효과를 보기 위해서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들을 proxy로 이용하였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되고 보험료수준도 상향조정되는 경우 현재의 직역연금과 유사한 영향을 가입자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저축효과에 있어서는 일반직장 근로자와 직역연금 대상자간의 차이를 봄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성숙이 가입자들에게 미칠 저축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Saverate = \beta_0 + \beta_1 Group0 + \beta_2 Group1 + \beta_3 Age + \beta_4 Education + \beta_5 Sex + \beta_6 Health + \beta_7 Income + \beta_8 House + \beta_9 Jongyo + \beta_{10} City + \beta_{11} Leisure + \beta_{12} Expect \quad 8)$$

저축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변수가 없어 연간소득에서 연간소비지출을 감한 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Saverate)을 사용하였다. 아래 <表 4-8>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저축률을 의미하는 Saverate는 일반직장근로자(Group0)는 자영업자(Group2)에 비해 저축률이 높을 확률이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Group1)들 또한 자영업자(Group2)에 비해 저축률이 높을 확률이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수직역연금대상자(Group1)와 일반직장근로자(Group0)는 저축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에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6%로 인상되어 일반직장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表 4-8〉 年間 貯蓄率의 推定式

종속변수(Saverate)		추정계수	t-value	P>|t|
Group0		0.0808	3.220	0.001
Group1		0.1009	2.721	0.007
	Group1	0.0201	0.540	0.589
	Group2	-0.0808	-3.220	0.001
Age		-0.0006	-0.305	0.760
Education		-0.0081	-4.100	0.000
Sex		-0.1351	-2.271	0.023
Health		0.0139	1.173	0.241
Income		0.0015	12.734	0.000
House		-0.0365	-1.363	0.173
Jongyo		-0.0221	-0.938	0.348
City		-0.058	-2.407	0.016
Leisure		-0.014	-0.575	0.566
Cons(상수)		0.3426	2.473	0.014
		0.4235	3.079	0.002

F(12, 1007)= 16.05, Prob>F=0.0000, R^2= 0.1606, Adjusted R^2= 0.1506

자영업자의 경우, 위의 생애주기 효용 함수모델에서 제기된바와 같이 은퇴기간을 강제 받지 않아 일반직장 근로자나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에 비해 늦출 수 있어 노후소득을 금융상품을 통하여 보장받으려는 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수준과 저축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가구주의 저축률이 여성에 비해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에 대해 만족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은 아니다. 즉, 건강에 만족한다는 것은 은퇴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되므로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본다.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으나 주택을 보유와 저축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서울 및 광역시거주자일수록 저축률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시거주자들의 소비성향이 높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축률과 종교를 갖고 있는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를 위해 근로시간과 소득을 줄일 용의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저축률에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 保險·年金商品所有 推定式

두 번째 분석은 금융자산의 범위를 보험 및 연금상품으로 축소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금융자산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직역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보험 및 연금상품을 소유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Hold이고 1인 경우 소유한 경우, 0인 경우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설명변수는 금융자산 비율 추정식과 동일하다.

$$Hold = \beta_0 + \beta_1 Group0 + \beta_2 Group1 + \beta_3 Age + \beta_4 Education + \beta_5 Sex + \beta_6 Health + \beta_7 House + \beta_8 Jongyo + \beta_9 House + \beta_{10} City + \beta_{11} Leisure + \beta_{12} \mathrm{Exp}ect \quad 9)$$

금융상품을 보험 및 연금상품으로 국한시키는 경우,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에 비해 자영자들이 보험 및 연금상품을 소유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表 4-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자의 경우, 은퇴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금 및 보험상품소유가능성을 낮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일반근로자나 특수직역연금대상자 모두 연금이나 보험상품을 보유할 확률이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은퇴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특수직역연금에 의한 노후보장 효과보다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추정된 <表 4-3>과 차이가 나는 변수로는 연령(Age), 교육수준(Education), 성별(Sex), 서울 및 광역도시 거주여부(City)변수 등이다. 연령은 앞서의 저축률 추정식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부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表 4-9〉 保險 및 年金資産所有決定 Probit 推定式

종속변수(Hold: 0, 1)		추정계수	z-value	P>|z|
Group0		0.1978	2.235	0.025
Group1		0.3834	2.969	0.003
	Group1	0.1855	1.439	0.150
	Group2	-0.1978	-2.235	0.025
Age		-0.0369	-4.883	0.000
Education		0.0120	1.711	0.087
Sex		0.4740	2.010	0.044
Health		-0.1778	-0.425	0.671
Income		0.0018	4.204	0.000
House		-0.0320	-0.340	0.734
Jongyo		0.0528	0.635	0.525
City		-0.0634	-0.746	0.455
Leisure		0.1119	1.295	0.195
Expect		-0.0185	-0.348	0.728
Cons(상수)		0.5219 0.7198	1.036 1.439	0.300 0.150

표본수: 1,020, $\chi^2(12)$= 65.78 Prob>, χ^2=0.0000, Psuedo R^2= 0.0479,
Log Likelihood= -653.173

성별의 경우, 남성일수록 연금 및 보험상품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어 저축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거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3. 政策的 示唆點

제 2절은 국민연금제도가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 실시됨과 동시에 개정연금법에 의해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향후 민간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모든 소득활동자들은 자신들의 전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상 근로기간의 한계효용과 은퇴기간의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하는 수준의 저축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연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의 성숙화는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저축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델화하였다.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소득활동자들을 일반근로자, 특수직역연금대상자, 그리고 자영업자로 구분하였을 때 저축률은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간에는 저축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통계자료가 1993년도의 가구실태이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6%수준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가 11%수준에 불과하여 저축에 대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들 세 집단 간 차이점은 연금형태로 노후대책을 마련한 집단, 퇴직금에 의존하는 집단, 그리고 은퇴시기를 구속받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특수직역연금이 퇴직금과 다른 것은 실질적인 누진율의 차이이다. 1993년 가구페널조사에서도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근속연수는 10.2년인 반면, 특수직역연금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20.9년이었다. 즉,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자의나 타의에 의해 전직 및 이직 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여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연금

누진율 보다 퇴직금에 대한 누진율이 실질적으로는 낮다. 따라서 일반직장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대책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화는 일반직장근로자와 자영자들의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9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장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으로 인지하여 저축률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자산을 연금 및 보험으로 국한시키는 경우, 자영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금 및 보험상품을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3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6%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현재에는 9% 그리고 앞으로 거시변수의 가정에 따라 11~18% 이상 인상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의 저축수준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는 경우, 민간의 저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그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날 집단은 자영자라는 것을 본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第 3 節 一般銀行의 運用資産減少에 따른 波及效果分析

1. 家計의 金融資産保有現況 및 國民年金基金運用現況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가구당 1044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4-10〉 金融資産 保有形態

(단위: 만원)

자산형태	표본수[1)]	평균(구성비)	표준편차	최저	최고
주식	1,020	122(11.7)	1,390	0	43,200
채권	1,020	8(0.007)	101	0	2,000
예금	1,020	523(50.1)	1,406	0	32,000
계	1,020	109(10.4)	294	0	3,000
보험[2)]	1,020	282(27.01)	1,081	0	22,000
계	1,020	1,044(100.0)	-	-	-

註: 1) 가구주소득이 있고 가구주연령이 39~59세 이하인 가구만 포함한 경우임. 월가구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가구와 1,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시켰음.
2) 보험자산은 납임금의 총액을 의미함.

資料: 대우페널데이터, 1994년.

한국가구페널조사는 총 4,500가구의 10,460가구원에 대한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 대한 각종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총 4,500가구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누락된 가구와 직장근로자나 자영업, 자유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나 가구 월소득이 60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제외 시켰다. 가구 월소득 하한선을 60만원으로 정한 것은 각 직역별로 소득의 하한선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직장근로자를 특수직역연금대상자와 일반직장근로자로 분류하였는데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최저가구소득이 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39세에서 59세 이하인 가구만을 포함시켰다. 39세 이하의 계층은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그룹별 차별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59세 이상계층은 이미 은퇴하여 노후대책을 관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이다.

금융자산의 구성은 예금이 50.1%로 가장 비중이 높고 보험자산이 27%로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주식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예금부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총 49조 3232억원이 조성되어 금

융부문에 15조 4191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금융부분에 투자된 기금의 74%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채권 중에서도 국·공채에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식은 금융부분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금조성액도 이와 유사한 포트폴리오 상태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4-11〉 國民年金基金運用現況

(단위: 억원, %)

기금조성액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493,232	330,372	1.76	채 권	114,702(74.39)
			금전신탁	3,444(2.23)
			수익증권	10,289(6.67)
			위탁투자	2,000(1.3)
			주 식	17,714(11.49)
			합 계	154,191(100)

註: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0. 6.

2. 一般銀行의 資産 및 人力運營現況

일반은행의 자산규모는 1999년 말 기준으로 550조 3400억원이다.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1996과 1997년의 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서 1998년 1년 동안은 자산이 소폭 증가하였다가 199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4-12〉 一般銀行의 資金調達, 店鋪數, 從事者數 現況

(단위: 억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자금조달	원화	예수금	8,603 (25.3)	10,668 (23.6)	14,941 (27.6)	16,552 (29.6)	22,270 (40.5)
		수입부금	565 (1.7)	1,044 (2.5)	2,813 (5.2)	1,893 (3.4)	1,617 (2.9)
		양도성예금	1,995 (5.9)	2,189 (5.3)	2,117 (3.9)	1,473 (2.6)	1,107 (2.0)
		신탁예수금	10,833 (31.8)	13,861 (33.4)	16,276 (30.0)	14,366 (25.7)	11,634 (21.1)
		차입금	1,328 (3.9)	1,375 (3.3)	1,466 (2.7)	2,824 (5.0)	2,675 (4.9)
		콜머니	173 (0.5)	163 (0.4)	266 (0.5)	797 (1.4)	735 (1.3)
	외화	예수금	2,631 (7.7)	3,166 (7.6)	4,607 (8.5)	6,082 (10.9)	3,738 (6.8)
		차입금	2,203 (6.5)	2,886 (6.9)	4,302 (7.9)	2,598 (4.6)	2,686 (4.9)
		콜머니	868 (2.6)	974 (2.3)	1,220 (3.0)	371 (0.7)	209 (0.4)
	기타		2,777 (8.2)	3,828 (9.2)	6,294 (2.2)	8,228 (14.7)	5,302 (9.6)
	자본계정		2,072 (6.1)	2,228 (5.4)	2,762 (11.6)	2,710 (4.8)	3,056 (5.6)
총자산			34,054 (100)	41,543 (100)	54,255 (5.1)	56,005 (100)	55,034 (100)
점포수			4,557	5,105	5,987	5,056	4,780
종사자수		정규인원	103,182	103,913	113,994	75,677	74,744
		용역인원	8,759	13,514	15,043	19,013	20,796
		계	111,941	117,427	129,037	80,733	95,540

註: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것임.
資料: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일반은행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금(40.5%)과 신탁예수금(21.2%)이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또한 일반은행

의 예수금 또는 신탁예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을 것이다.

<表 4-13>은 일반은행의 운용자산증감과 점포수 및 종사자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자산이 전년대비 20～30%씩 증가하였고 점포수와 종사자수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表 4-13〉 一般銀行의 年度別 資産, 店舖數, 人員의 增加率

(단위: 백억, 개소, 명)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자 산	7,489(22%)	12,712(30.6%)	1,750(3.2%)	-971(-1.7%)
점 포 수	548(12%)	882(17.2%)	-931(-15.5%)	-276(-5.4%)
종사자수	5,486(4.9%)	11,610(9.9%)	-34,347(-26.6%)	850(0.9%)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운용자산이 1998년에는 3.2% 증가에 거쳤고 1999년에는 오히려 1.7% 감소하였다. 이 기간동안 종사자수 및 점포수도 크게 감소하여 1998년에는 종사자가 34,347명 감소하였고 점포수도 931개소 감소하였다.

〈表 4-14〉 一般銀行의 店舖數 및 從事者數當 資産比率

(단위: 100억, 개소, 명)

연도	자산규모	점포수	종사자수	1개점포당 자산규모	종사자1인당 자산규모
1995	34,054	4,557	111,941	7.47	0.30
1996	41,543	5,105	117,427	8.13	0.35
1997	54,255	5,987	129,037	9.06	0.42
1998	56,005	5,056	94,690	11.07	0.59
1999	55,034	4,780	95,540	11.51	0.57

資料: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表 4-14>는 연도별로 일반은행의 점포당 운용자산의 규모와 종사

자 1인당 평균 운용자산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과 1996년에는 1개 점포당 운용자산이 747억과 813억원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친 1998년과 1999년에는 1107억과 115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종사자 1인당 운용자산 규모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30억 수준이었으나 1999년에는 57억으로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가입자의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은 전국의 일반은행 점포에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인상이 가계금융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반은행의 점포당 운용자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대적 수준이 저축의 구축효과를 발생할 정도까지 인상되어야만 가능하다. 저축의 구축효과를 유발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대적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第 5 章 私的年金의 活性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第 1 節 年金制度와 課稅體系

1. 金融稅制體系

가. 金融所得別 課稅體系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원리금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고, 차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타 소득과 종합과세하도록 되어있다.

〈表 5-1〉 金融商品의 課稅體系

소 득	과 세 체 계	근거법
이자차익	① 이자차익1 × 22%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소법16: 이자소득】
배당수익	① 배당수익2 * 22% 원천징수 ② Gross-up 제도 (Imputation 제도) 적용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소법17: 배당소득】
신탁이익	<신탁업법상의 신탁> ① 기준가격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② 과세표준 * 22% 원천징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소법16: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3> ① 과표기준가격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② 과세표준 * 22% 원천징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소법16: 이자소득】 【소법17: 배당소득】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신탁> ①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과 동일과세	【조특 91조의2: 배당소득】
보험차익	① 저축성보험4의 보험차익 * 22%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소법16: 이자소득】
양도차익	양도소득5 과세표준 * 누진세율(20～40%) 분류과세	【소법94: 양도소득】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이자차익에 적용되는 22%의 세율은 소득세(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한 세율이며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表 5-2〉 居住, 非居住에 따른 所得稅(法人稅) 및 住民稅率現況

(단위: %)

구분	거주자(개인)	거주자(법인)	비거주자(개인)	비거주자(법인)
소득(법인)세	20	20	25	25
주민세	2	-	2.5	-
계	22	20	27.5	25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배당수익에 대한 Imputation제도(Gross-Up)는 배당소득 종합과세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당해 배당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나. 金融綜合課稅 體系

200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종합과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부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초과분부터는 주된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소득대상, 무조건 종합과세소득, 조건부 종합과세소득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表 5-3〉 金融所得의 區分

구 분	범 위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A)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30% 기본세율 40%(90%)
무조건 종합과세소득 (B)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④ 국외금융소득	25% 20% 20% -
조건부 종합과세소득	(A) 및 (B)외의 이자, 배당소득	20%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2. 金融商品에 對한 租稅優待制度

가. 稅制優待金融商品

세제우대금융상품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22%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상품에 비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율과세상품으로 구분되며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 종합 저축제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表 5-4〉 稅制優待金融商品種類

구 분	상 품
비과세+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 신탁/투자신탁/보험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①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③ 신협출자금 ④ 신협예탁금 ⑤ 장기저축성보험 ⑥비과세투자신탁
소득공제	① 보장성보험 ② 주택청약저축/부금
11% 저율과세[1]	① 노후생활연금저축 ② 하이일드펀드 ③ 소액가계/채권/보험저축 ④ 주택청약저축 ⑤ 근로자장기저축/장기증권저축
11% 저율과세[2]	가계생활자금저축
10% 저율과세[3]	① 장학적금 ② 근로자증권저축
2% 저율과세[4]	신협 조합예탁금

註: 1) 소득세 10%+농특세 1%, 2) 소득세 10%+주민세 1%, 3) 소득세 10%, 4) 농특세 2%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나. 稅金優待綜合貯蓄制度

2001년 1월 1일부터 현행의 각종 저율과세 저축상품을 상품종류별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도 내에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상상품으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 적용되는 상품은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등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비과세상품, 주택청약저축, 신협출자금, 신협예탁금 등이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일반인의 경우 4000만원까지,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우대세율은 10.5%로 소득세 10%에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한 것이다.

3. 現行 年金稅制體系의 現況 및 問題點

가. 年金制度別 稅制現況

연금제도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고 공적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연금에는 크게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의 특징상 과세는 3단계(갹출금, 운용수익, 연금수급액)에 걸쳐서 가능하다. 아래 <表 5-5>에서 공적연금의 경우 EEE라고 표기된 것은 갹출금, 운용수익, 연금수급액 모두에 대해 비과세됨을 나타낸다. 반면에 기업연금(EET)의 경우 갹출금, 운용수익에는 비과세 되지만 연금수급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表 5-5〉 年金稅制現況

구분	과세체계	부담주체(입구)	운용수익	수급주체(출구)
공적연금	EEE	법인세 손금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기업연금	EET	법인세 손금인정 소득세 필요경비인정	비과세	퇴직소득세 과세
개인연금	EEE	조특법상 소득공제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註: E: Exempt(비과세), T: Taxed(과세)

나. 公的年金의 課稅體系

1) 國民年金의 課稅體系

갹출, 운용수익, 수급단계 모두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EEE형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갹출보험료(4.5%)는 법정공과금으로 손금인정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20,000원이나 국민연금보험료의

40% 중 적은 금액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일반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공제혜택 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운용수익에 대한 법조문이 없으므로 비과세 된다.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의 소득은 퇴직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가입자 사망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은 상속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2) 公務員年金 및 軍人年金의 課稅體系

갹출, 운용수익, 수급단계 모두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EEE형이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에 대한 법조문이 없으므로 비과세 된다.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은 상속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3) 私立學校 敎職員年金 課稅體系

갹출단계, 운용수익, 수급단계 모두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EEE형이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교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과세수익에 대한 법조문이 없으므로 비과세 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가입자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함.

〈表 5-6〉 私學年金의 課稅體系

구분	부담(%)	관 련 조 세
국가	3.0	비과세 단체
재단	4.5	고유목적사업으로 원칙적 비과세
교원	7.5	비과세 퇴직소득 규정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다. 私的年金의 課稅體系

1) 企業年金의 課稅體系

법인세법상 사용인 등에 대한 퇴직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인정제도는 사내유보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외유보제도인 단체퇴직보험 등이 있다. 퇴직금 추계액의 40%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부에 단체퇴직보험 등으로 적립시 손금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 負擔主體의 入口稅制

(1) 退職給與充當金 轉入額의 損金産額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 설립된지 1년이 경과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법인이 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은 설정대상자가 될 수 있다.

〈表 5-7〉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限度

기준	한 도 액
① 총급여액기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10%
② 누계액기준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40%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잔액*
한도액	Min (①, ②)

註: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잔액=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전기충당금부인액-기중지급액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총급여액 기준과 누적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2) 團體退職保險 등의 保險料와 損金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보험료 등은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금신탁 등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表 5-8〉 團體退職保險料의 損金算入限度

기준	한도액
① 추계액기준	(퇴직금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세무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잔액*
② 예치금기준	당기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잔액 - 세무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잔액1)
한도액	Min (①,②)

註: 1) 세무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잔액=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잔액-당기중 단체퇴직보험금-유보잔액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필요경비 산입 후 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3) 負擔主體(法人, 事業者)의 運用收益에 대한 課稅

법조문상으로는 부담주체가 받는 확정배당금 등의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수익은 납입할 보험료 등으로 대채됨으로써 과세되지 않고 있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4) 受給主體(退職勤勞者)의 出口稅制(退職所得)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 묶음효과[8](Bunching Effect)의 과중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초과누진세율구조하의 종합과세를 적용치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한다.

(가) 退職所得의 範圍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6가지 종류가 있다.

---

8) 「결집효과」라고도 하며 과세기간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세액을 부담시키는 효과

〈表 5-9〉 退職所得의 種類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②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③ 퇴직보험의 보험금 ④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금 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해고예고수당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 (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으로 간주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나) 非課稅退職所得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실업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등이 있다.

(다) 退職所得稅 課稅體系

종합과세에 비해 저율의 경과세이며 비과세의 범위가 넓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폭 넓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근속연수로 나눈 과세표준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해 줌으로써 세액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表 5-10〉 退職所得稅 算出過程

급 여 내 용	비 고
퇴직급여액	비과세퇴직소득은 제외
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공제: 급여비례공제[1]+근속연수공제[2]
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과세표준×세율	세율: 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기간) ×기본세율×근속연수
퇴직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세액공제	공제: Min(240000×군속연수, 퇴직소득산출세액×50%)

註: 1) ① 일반적인 퇴직급여= 퇴직급여액×50%
② 명예퇴직수당,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퇴직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급여액×75%

2) ① 5년 이하: 300,000×근속년수, ② 5년 이상 10년 이하: 1,500,000+500,000×(근속년수-5), ③ 10년 이상 20년 이하: 4,000,000+ 800,000×(t-10), ④ 20년 이상: 12,000,000 + 1,200,000×(t-20)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2000년.

2) 個人年金의 課稅體系

개인연금은 크게 적격개인연금과 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취급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보험사, 투신사가 있다.

〈表 5-11〉 個人年金의 種類別 課稅體系

구분	적격 개인연금		비적격 개인연금	
	입구세제	출구세제	입구세제	출구세제
보 험	소득공제	보험차익비과세	-	보험차익비과세
은 행	소득공제	이자소득비과세	비적격 개인연금은 보험회사만 취급함,	
투 신	소득공제	이자소득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적격요건은 가입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된다. 보험료납입은 월납 또는 3개월 납입방식이

어야 하며 납입금액은 월기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지급기간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이며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가) 適格個人年金의 稅制惠澤

부담주체인 개인연금가입자의 입구세제(소득공제)는 연간 720,000원 또는 연간납입보험료×40% 중 적은 금액이 해당된다. 수급주체인 개인연금가입자의 출구세제(이자소득)는 연금개시이후 지급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비과세를 적용한다.

나) 非適格 個人年金의 稅制惠澤

부담주체(개인연금가입자)의 입구세제(소득공제)는 조세감면특별법상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주체(개인연금가입자)의 출구세제(보험차익)는 보험계약유지기간이 5년(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7년)이상인 경우 보험차익[9]에 대해 비과세한다.

4. 私的年金의 稅制上 問題點

가. 企業年金의 稅制上 問題點

1) 稅法上 稅制適格基準에 대한 規定의 不在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 등」에 대한 규정은 ① 퇴직근로자는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③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9)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또는 납입공제료)

또는 해지 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일 것 ④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등에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⑤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세제우대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세제적격기준이 아니라 퇴직보험 등의 적립을 법정퇴직금제도의 설정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실상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적격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2) 企業의 社內積立에 대한 損金認定限度가 40%로 限定

기업의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40%로 정해짐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40%에 대한 사내적립의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運用收益課稅의 問題點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의 보험차익과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또는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다. 보험차익과 신탁이익은 차후 근로자의 근로자 퇴직시 퇴직소득에 포함 될 것이므로 부담주체인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이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배당금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익금과 퇴직소득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 EH는 보험차익 및 배당금과 퇴직소득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4) 出口稅制의 問題點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의 연금형식수령과 일시금형식수령에 대해 무차별하게 과세한다. 연금형식의 퇴직금 분할 수령시 수령하지도 않은 미래소득에 대해 퇴직년도에 일시금과 동일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함으로써 미수령소득에 대한 세금을 선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일시금형식으로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퇴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퇴직소득과 비과세상속증여재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퇴직보험 등이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5) 追加醵出에 대한 稅制의 未整備

근로자의 퇴직보험 등에의 추가갹출 및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있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個人年金의 稅制上問題點

1) 適格個人年金과 非適格個人年金의 租稅差益去來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 다른 세제혜택이 부여됨으로 인해 상품간에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적격개인연금은 비적격개인연금에 비해 세제우대요건은 엄격하나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적다. 조세특례법상의 소득공제 혜택은 그 비중이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계약 후 5

년 이내 계약해지시 과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저격개인연금의 경우 계약기간 중 적격요건 불충족시 과거 비과세 되었던 소득세를 모두 다 소급하여 부담하게 되지만 비저격개인연금의 경우 5년(2001년부터 7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適格個人年金의 中度解止追徵의 輕微

보험가입 일로부터 5년 내에 적격개인연금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720,000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4%를 추징하게 된다. 이는 한계세율이 기본세율 중 최저인 10%를 가정한 추징세액의 산정이므로 적격개인연금의 해지에 대한 실질적인 과거혜택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私的年金의 稅制改善方案

1) 企業年金의 稅制改善方案

가) 退職金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限度의 漸次的 縮小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외적립액의 손금인정 한도를 높이고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사내적립 손금인정한도율을 하향하여야 한다.

나) 勤勞者의 追加醵出分에 對備한 所得控除 惠澤賦與

근로자가 기업이 갹출하는 보험료 등에 추가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이 규정되어있지 아니한바, 적격개인연금가입자와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를 기업연금의 근로자 갹출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다) 運用收益에 대한 非課稅法條文 整備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보험료 등의 부담자가 받는 확정배당금 등은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이를 보험료로 대체하고 있고 세법상 퇴직소득세와의 이중과세분제가 발생하므로 비과세로 처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 退職所得의 年金給付 選擇에 대한 差別的 稅制惠澤賦與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위배되는 미수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선납문제의 해결과 연금수급자 부의 경제적 실질가치의 보장을 통한 연금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별적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2) 個人年金의 所得控除 限度의 上向調整

가) 適格個人年金의 所得控除 限度의 上向調整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18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저축률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나) 中度解約追徵額의 上向調整 및 加算金附課

적격기준의 엄격화를 위하여 중도해지계약 기간을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을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한다. 가입기간동안 혜택받은 소득공제세액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의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 保險差益 非課稅制度의 廢止 또는 低率課稅

은행, 투신에서는 과세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에서만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한다는 규정은 과세차액거래(Tax Arbitrage)를 심화시키고 적격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시장왜곡현상을 야기 시키므로 이에 대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第 2 節 退職金制度의 企業年金化 方案

1. 退職金制度의 現況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당 30일의 임금을,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당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정제도로 강제되었다. 그리고 적용대상 사업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는 1998년 현재 전 산업에서 578만 6천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55.3%이다.

〈表 5-12〉 退職金制度 適用者 推移

연도	대상자수(천명)	취업자에 대한 비율(%)
1970	945	9.7
1975	1,448	12.2
1980	2,841	20.7
1985	3,583	23.9
1990	5,366	29.8
1994	5,734	29.9
1998	5,786	29.0

資料: 노동부, 『사업체 실태 조사보고서』, 각 연도.

퇴직금지급방법에 대한 노동연구원의 조사(방하남, 1998)에 의하면 1978년 누진제를 적용하던 기업이 5.8%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20.1%로, 1996년에는 24.6%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의 평균지급률(박영범, 1992)은 1991년에 근속연수 5년에 6.5개월, 10년에 14.7개월, 20년에 34.1개월, 30년에 55.3개월로 조사된 바 있다.

1996년의 조사에서는 근속연수 10년에 13.3개월, 20년에 30.3개월, 30년에 47.9개월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퇴직금의 부담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누진율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입장에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대기업의 퇴직금 비용의 부담은 근로자 1인당 연간 234만원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16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로자 1인당 총노동비용의 1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 企業年金制度의 機能

기업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 즉, 사회보장적 기능과 기업차원에서의 종업원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노후보장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기업연금제도가 성숙되어있는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기업연금은 후불임금으로 인식하여 임금과 함께 기업연금제도의 설계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가. 社會保障的 機能

미국의 경우, 퇴직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의해 보장받지만 기본적 생계수준의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노령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연금은 사적연금이면서 공적소득보장체계의 일 부분을 맡고 있다.

기업의 재정부담으로 유지되는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일정비용을 떠맡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보험으로서 적용의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가입유도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의 퇴직후 소득에 보탬이 될 경우 정부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해 유인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 人力管理機能

고용주들은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인력으로 키워나가야만 한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각종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인력양성에 투자한 기업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게된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회사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해야만 한다.

근속연수는 직업능력 및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기능향상과 정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장기근속의 유도는 안정적이고 유능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3. 企業年金導入에 필요한 環境造成

사적연금제도인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저축, 기업의 투자환경, 고용제도, 조세, 그리고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제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조세혜택과 같은 적절한 법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기업연금과 관련하여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금융계약에 의해 조성된 근로자의 연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기업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기업연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 制度의 柔軟性確保

기업연금을 규제하는 제도는 각기 다른 기업환경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연금방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은 업종, 종업원규모, 경영자의 경영방식, 노사관계 등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 의해 다양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운영이 양호하고 장기적인 전망도 좋은 기업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후의 급여를 미리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다른 기업으로 전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불확실한 시장환경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야하는 경우 확정각출형 연금제도를 선택할 것이다. 확정각출연금은 근로자의 기여금과 기업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연금기금과 이를 운영하여 얻은 이자수익에 준해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기업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단체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업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관련 조세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유연하지 못한 세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특정 연금제도의 생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나. 稅制惠澤

세제혜택은 연금저축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세만을 적용한다면 연금에 대한 기여금은 기업주의 과세대상 소득에서는 공제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기금의 운영에 의한 투자수익은 면세혜택을 받게되고 은퇴 후 급여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세와 같은 논리를 연금에 적용한 것이다.

근로자입장에서는 2종류의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첫째 혜택은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없이 투자금이 증식될 수 있는 혜택을 받게되고 두 번째 혜택은 근로자가 은퇴 후 급여에 대해 과세되지만 일정 연령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활동을 할 때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은 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시금에 대해서는 연금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4. 企業年金의 運營方式[10)]

가. 確定給與型 企業年金

1) 單位給與算定方式(Unit Benefit Formula)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공식에 의해 연금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형태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급여공식에 따라 다시 Unit Benefit형과 Flat Benefit형으로 나뉜다. Unit Benefit 형태에서는 근속연수 1년

10) Mcgill, Brown, Haley, Schieber, 『The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당 일정단위의 연금급여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부여되는 일정단위의 연금급여는 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해진다. 적립되는 연금급여가 급여의 일정비율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급여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한다.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그리고 성과금 등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범위의 설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급여산정방식이다. 근속기간 중 각 해당연도의 급여에 대해 적립률이 적용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퇴직 전 몇 년의 평균급여에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해당근속연도의 급여에 적립률이 적용되는 방식을 경력평균방식(Career Average Formula)이라 한다. 이 방식에 의한 연금급여는 근속기간의 평균급여에 적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제도도입이전의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제도도입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전 경력분의 급여가 산정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이전의 경력에 적용되는 적립률은 제도도입이후의 것에 비해 낮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년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에게 년간 1%의 적립률이 적용되는 단위급여형 연금제도에서는 당해 연도에 30만원이 적립된다. 이와 같은 급여방식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um_{t=H}^{R-1} b_t \cdot PAY_t \qquad 1)$$

(PAY_t: t 연도의 급여수준, b_t : 적립률, H: 입사연도, R: 퇴직연도)

이 방식의 문제점은 급여가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어도 연금급여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평균급여는 은퇴직전의 급여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최종급여방식(Final Average Formula)이다. 최종급여방식은 근로자의 퇴직 전 3년 또는 5년 전 평

균급여를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퇴직전 일정기간 급여 중 높은 순으로 몇 년간의 급여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퇴직 전 급여하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종급여방식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연금 급여수준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최종임금방식에 의해 최종 5년간의 연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15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을 산정하면 아래 식 2)와 같다.

$$F5PAY_{15} = \frac{3000 + 3200 + 3400 + 3600 + 3800}{5} = 3400 \qquad 2)$$

$$F5PAY_{15} \times 1\% \times \text{재직기간} = 3,400 \times 1\% \times 15 = 510 \qquad 3)$$

은퇴 전 5년간 급여평균이 3400만원인 근로자가 15년간 근무한 경우 년간 연금급여액은 51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은 최종급여방식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text{연금급여액} = \sum_{t=H}^{R-1} a_t \cdot \frac{\sum_{t=R-5}^{R-1}}{5} \cdot PAY_t \qquad 4)$$

식 4)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 5)가 된다.

$$a(R-H) \cdot \frac{\sum_{t=R-5}^{R-1} \cdot PAY_t}{5} \qquad 5)$$

경력평균방식이나 최종급여방식 모두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의 적립률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급여방식에 의한 연금급여액이 경력평균방식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5-13〉 經歷平均方式과 最終給與方式下의 年金額比較

(단위: 만원)

근속 연수	급여수준	경력평균방식		최종급여방식(5년 평균)	
		연간적립액	총적립액	5년 평균급여	최총적립액
1	2,000	20	20	2,000	20
2	2,100	21	41	2,050	41
3	2,210	22.1	63.1	2,100	63.1
4	2,320	23.2	86.3	2,157.5	86.3
5	2,440	24.4	110.7	2,214	110.7
6	2,560	25.6	136.3	2,326	139.6
7	2,690	26.9	163.2	2,444	171.1
8	2,820	28.2	191.4	2,566	205.3
9	2,960	29.6	221.0	2,694	242.5
10	3,110	31.1	252.1	2,828	282.8
11	3,270	32.7	284.8	2,970	326.7
12	3,430	34.3	319.1	3,118	374.2
13	3,600	36	355.1	3,274	425.6
14	3,780	37.8	392.9	3,438	481.3
15	3,970	39.7	432.6	3,610	541.5
16	4,170	41.7	474.3	3,790	606.4
17	4,380	43.8	518.1	3,980	676.6
18	4,600	46.0	564.1	4,180	752.4
19	4,830	48.3	612.4	4,390	834.1
20	5,070	50.7	663.1	4,610	922
21	5,320	53.2	716.3	4,840	1,016.4
22	5,590	55.9	772.2	5,082	1,118.0
23	5,870	58.7	830.9	5,336	1,227.3
24	6,160	61.6	892.5	5,602	1,344.5
25	6,470	64.7	957.2	5,882	1,470.5
26	6,790	67.9	1,025.1	6,176	1,605.8
27	7,130	71.3	1,096.4	6,484	1,750.7
28	7,490	74.9	1,171.3	6,808	1,906.2
29	7,860	78.6	1,249.9	7,148	2,072.9
30	8,250	82.5	1,332.4	7,504	2,251.2

위 <表 5-13>은 가상의 근로자의 연봉이 연간 약 5%씩 인상되는 것으로 하였을 때 경력평균방식과 최종급여방식하의 연금산정액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경력평균방식에 의하면 이 근로자의 30년 근속

기간동안 연금적립액은 1332.4만원이나 최종급여방식에 의하면 2251.2만원이 된다. 따라서 경력평균방식에서 높은 적립률을 적용해야만 최종급여방식에 의한 연금급여와 동일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평균방식에서 1.7%의 적립률을 적용하는 경우 1%를 적용하는 최종급여방식하의 연금급여와 동일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경력평균방식과 최종급여방식을 동일하게 하는 적립률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연간임금상승률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계는 아래의 식 6)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식 6)은 근속평균 산정식과 최종급여 산정식의 상호관계를 등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b(R-H)\cdot\frac{\sum_{t=H}^{R-1}\cdot\ PAY_t}{R-H}=a(R-H)\frac{\sum_{t=R-5}^{R-1}\cdot\ PAY_t}{5} \quad 6)$$

(b: 근속평균 산정식에서의 적립률, R: 퇴직시 연령, H: 입사연도, a: 최종급여 산정식에서의 적립률, PAY_t: t시점의 급여수준)

식 6)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 7)과 같다.

$$\frac{b}{a}=\frac{\sum_{t=R-5}^{R-1}\cdot\ PAY_t}{\sum_{t=H}^{R-1}\cdot\ PAY_t}\cdot\frac{(R-H)}{5} \quad 7)$$

식 6)의 왼편은 근속평균 연금 산정식이고 오른편은 최종급여연금 산정식이다. 식 7)의 오른편은 급여상승률을 나타내는 부분과 근속연수를 나타내는 부분이 곱하여져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근속기간에 따라 두 방식을 일치시키는 적립률은 각기 달라 질 수 있다.

〈表 5-14〉 5年 1% 積立 最終給與年金額으로 轉換할 경우의 勤續平均積立率

연간급여 인상률(%)	근속년수(년)				
	15	20	25	30	35
2	1.10	1.15	1.21	1.26	1.32
5	1.25	1.39	1.54	1.69	1.85
8	1.40	1.63	1.87	2.13	2.40

근속평균산정방식을 최종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데는 근로자의 다양한 경력과 임금특성에 의해 어려움이 따른다. 수정근속평균방식(Modified Career Average)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근속평균방식에 의해 연금액이 적립되지만 일정기간마다 과거 급여상승추세를 검토하여 연금적립액이 부족한 경우 과거경력에 대한 연금적립액을 최근 5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재조정한다. 따라서 수정근속평균방식에 의한 연금적립액은 아래 식 8)과 같이 조정된다.

연간연금적립액= 1% × 근속년수 × 과거 5년평균급여액 8)

수정근속방식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금적립액이 조정되는 경우 30년 근속 후 연금급여액은 최종급여방식하의 연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연금적립률은 대체적으로 1%에서 2% 사이이며 주로 1.5%가 적용된다. 적립률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도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연금산정방식으로 정액적립방식(Specified Dollar Benefit Formula)이 있다. 급여에 상관없이 1년 근속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적립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연금방식을 결정하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의 편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산업에서 1996년 당시 1년 근

속에 30불 또는 이상을 적립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 방식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직종에 따라 적립금액이 달라 질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하여 적용하기가 수월하다는데 있다. 단체협상과정에서 쉽게 이해되어 타협점을 찾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근속기간에 대한 연금적립액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최종연금급여액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협상과정에서 최종금여의 일정비율형태로 최저연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연금급여산정에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기업연금제도에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근속연수에 대해 인정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제한조건으로는 1) 특정연령 이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는 방식 2) 입사연도 또는 입사 후 최초 몇 년을 제외하는 방식 3) 제도 도입 전 경력에서 10년, 15년, 2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하는 방식 등이 있다.

2) 定率給與算定方式(Flat Benefit Formula)

단위급여산정방식과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급여산정방식이 정률급여 산정방식(Flat Benefit Formula)이다. 이 방식은 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근속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속평균급여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근속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대신 30%, 40%, 50%정도의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최소근속기간, 15년 또는 20년, 을 충족시키는 경우 동일한 비율을 적용시키며 기업이 정한 최소근속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시킨다. 단위급여산정방식(Unit Benefit Formula)의 일종인 최종급

여방식(Final Average Formula)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은퇴할 시점에 연금급여수준이 결정되어 근속기간 중 은퇴시 연금수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단위급여산정방식과 정률 급여 산정방식은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평균급여의 60%를 적용시키는 정률 급여 산정방식에서 근속기간 30년에서 부족한 1년 당 1/30을 감하는 것은 단위급여산정방식에서 근속기간평균급여에 2%씩 적립률을 30년 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든 기업연금제도에서 근속연수에 대한 조정을 단체교섭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일정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 이전기간에 비해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근속우대형(Back Loading)이라 하며 오히려 입사초기에서 일정연한까지의 근속기간에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단기근속우대형(Front Loading)이라 한다. 그리고 모든 근속기간에 대해 동일한 적립률을 적용하는 경우 중립형(Neutral Loading)이라 한다.

3) 最低年金保障

거의 모든 기업연금제도에는 최저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단위급여산정방식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와 같이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근속기간 급여수준과 퇴직전 급여수준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4) 年金給與支給時點

가) 正常退職年齡

연금급여액의 산정과 함께 기업연금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가 지급시점이다. 일반적인 지급시점은 일정연령 즉, 정상퇴직연령(Normal Retirement Age)이 도달된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완전연금을 지급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법안에 의해 정상퇴직연령은 기업연금제도에서 정하는 연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987년에는 10년 근속조항이 5년으로 완화되었다. 연금급여의 적립에 있어 중요한 3가지 요건은 급여수준, 가입자의 연령, 그리고 연금지급방식(annuity form)이다. 연금지급방식에는 생애기간연금(life annuity), 부부공동연금(joint annuity), 그리고 유족연금(survivor annuity) 또는 환불단독생애기간연금(single life annuity with a refund feature)등이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지급개시연령과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연금급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정상퇴직연령은 단지 퇴직시점을 의미하기보다는 연금급여의 가치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일정연령이상인 경우 정상퇴직연령(Normal Retirement Age)이전 또는 이후에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정상퇴직연령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5년 근속인 근로자의 경우 65세, 20년 근속자의 경우 60세, 30년 근속인 경우 55세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정상퇴직연령의 설정은 인력관리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특성상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일정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연령에 퇴직하는 경우 연금급여가 극대 될 수 있도록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한다. 미국의 경우 65세가 연금제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상퇴직연령이다.

나) 早期退職年齡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연령을 정하여 정상퇴직연령에 수급하는 연금급여수준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액은 보험계리상 중립적인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나. 確定醵出型 企業年金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확정갹출형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계좌가 개설되어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비례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확정갹출형 하에서는 적어도 1년에 1회에 걸쳐 연금적립금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개인계좌에 더해지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기업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급여수급을 위한 최소근무연한(평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동안의 적립금은 회사의 연금자산으로 이체되며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급여지급방법은 일시불, 일정기간에 걸친 연금형, 생애기간에 걸친 연금형 등으로 구분된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대표적인 형태에는 이익분배형 연금(Profit-sharing Plans), 현금구매형 연금(Money purchase pension Plans), 저축형연금(Thrift and Saving Plans)등이 있다.

1) 利潤分配制度(Profit-Sharing Plans)

이윤분배제도는 소규모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다른 형태의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복잡한 보험계리 계산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행정관리가 단순한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다른 형태의 기업연금에 추가적인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제도가 다른 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기업의 기여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企業의 寄與方式

이윤분배제도에서 기여는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근로자도 연금재정에 기여를 하는 경우 이윤분배저축제도(Profit sharing thrift plan)가 된다.

(1) 寄與確定型式

미국의 경우 이윤분배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확정된 형태의 기여공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여의 규모가 반복적이며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세법상(Internal Revenue Code)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여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는 기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기여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수준의 기여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기여규모에 대해서는 기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도 있다.

(2) 寄與確定公式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의 기여규모를 확정적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기업이윤의 일정비율,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또는 근로자기여분의 일정비율 등으로 명시된다. 기업이윤의 일정비율로 기여를 확정짓는 경우 이윤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만 하며 고용주가 회계상 사용하는 이윤의 개념과 일치시켜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 특정 회계연도의 기업이윤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제3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윤을 정의 할 때는 각종 조세 후 이윤인지 조세 전 이윤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개념정립이 필요로 하다. 이론상으로는 조세 후 이윤이 기여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업의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는 조세감면대상이므로 기업의 조세 후 기여규모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여가 실현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만약 기업의 기여가 조세 후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식을 적용하여 기여규모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이윤분배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지 않은 조세전 이윤을 기여분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윤의 범위에 기업자산의 매각과 같은 일시적인 이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가 기업이윤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기업이윤의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서 일정수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윤이 기업의 순가치의 10%를 넘는 경우 10%를 넘는

이윤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이 적용되어 기여규모가 결정된다. 기업이윤에서 기여규모를 결정하는 일정비율이 적용되는 이윤의 한도(breakpoint)는 미리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윤의 한도를 정해놓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연간 기여규모를 근로자 1인당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기여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금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3) 雇用主의 寄與에 대한 控除限度

고용주의 기여에 대한 각종 세제상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임금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기여금에 대해서만 세제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회계연도의 기여금 총액규모가 근로자임금총액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과 확정갹출형 연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두 종류의 연금제도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근로자임금총액의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연금제도에 대한 공제한도는 유효하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가 임금총액의 5%인 경우 동일한 기업의 확정갹출형 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20%가 아닌 15%가 된다. 공제한도를 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10%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를 넘는 기여금을 기업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시 이 점이 명문화 되어있어야 한다.

2) 金錢購買型年金(Money Purchase Pension Plan)

금전구매형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확정갹출형연금의 일종이다. 금전구매형연금(Money Purchase Pension Plan)이 이윤분배형 연금과 다른 점은 기업의 기여가 미리 공식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이므로 이윤분배형 연금과 주식성과급제도(Stock Bonus Plan)와 마찬가지로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세관련 규정과 근로자노후 소득보장법(ERISA)의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구매형 연금은 확정갹출연금과 같이 재정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기여에 대한 공식은 년간 근로자임금총액의 5% 또는 10%로 정해져 있다. 기업의 기여공식은 이윤분배형 제도와 유사하다. 금전구매형 연금제도와 다른 확정갹출형 연금과 다른 점은 금전구매형 연금에는 급여를 연금화하는 선택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금전구매형 연금은 가입자의 개인계좌로 관리되므로 가입자와 유족에 대한 연금급여지급은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금전구매형 연금의 일종으로 급여 급여설정형 연금(Target Benefit Plan) 이 있다. 이 연금은 기업의 기여를 미리 정해 놓은 급여수준에 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여가 기여공식(Contribution Formula)이 아닌 급여공식(Benefit Formula)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정형적인 금전구매형 연금과 다른 점이지만 확정급여형 연금과 다른 점은 개인계좌에 적립된 기금의 운영손실은 가입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급여설정형 연금은 아주 드문 종류이고 대기업이나 소기업 모두 선호하는 제도는 아니다.

3) 勤勞者貯蓄制度(Thrift and Savings Plan)

근로자저축제도는 근로자들이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업이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순수근로자저축제도(Pure Thrift Plan)라 불린다. 순수근로자저축제도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해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순수근로자저축제도(Pure Thrift Plan)에서는 기업이 제도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대부분의 근로자저축제도에서는 기업이 근로자기여의 일정비율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저축제도는 연금제도, 이윤분배제도, 또는 주식성과제도중의 한 종류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근로자저축제도가 연금제도로 인정받는 것과 이윤분배제도로 인정받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연금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여가 일정한 공식에 의해 설정되어야만 한다. 반면에 이윤분배제도는 기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윤분배제도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이윤이 분배될 수 있지만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근로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제도는 일시불이 아닌 연금급여형태로 지급되어야하나 이윤분배제도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근로자저축제도의 대다수는 이윤분배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순수한 이윤분배형제도 보다는 기업의 기여가 있는 근로자저축제도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이윤분배제도에서는 기업의 기여가 일정한 형태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지만 근로자저축제도에서는 기업의 기여가 근로자기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저축제도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에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미리 공제하여 저축해 주므로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점과 전문적인 투자자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근로자저축이 기금으로 형성되어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므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보다는 금융상품선택의 폭이 훨씬 커 진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들이 적립한 금융자산은 현시점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은퇴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의 기여는 대체적으로 근로자기여의 50%로 운영되며 근로자기여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기업의 기여는 근로자임금의 3%로 정도가 된다.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된다. 연간 1,000시간 이하를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될 수도 있다. 정규직인 경우 입사와 동시에 적용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적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격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근로자들이 과다하게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여는 대체적으로 급여의 2%에서 10%로 다양하다. 급여의 6%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現金利潤分配 또는 延拂型利潤分配制度(Cash Or Deffered Arrangement: 401(k) Plan)

젊은 근로자들 또는 급여수준이 잦은 근로자들은 나이든 근로자들이나 고소득근로자에 비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매년 현금배당을 하는 이윤분배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든 근로자는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해 이윤배분을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Cash Or Deffered Arrangement: CODA)이다.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는 401(k) Plan(미국의 국세청(IRS) 규정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근로들은 급여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근로자기여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급여 6%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 의회는 401(k) 조항을 추가시켜 고소득근로자들만이 연불형 이윤분배로 인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상당수의 저소득근로자도 연불형 이윤분배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는 주식성과제도나 이윤분배제도의 일종이다. 기업의 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이 제도는 입사와 동시에 수급자격요건을 갖게 되므로 근속기간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은 없다. 다른 이윤분배제도와는 달리 적립금 및 운영수익에 대한 수급을 근속 중에는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59세 이상된 근로자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미 국세청 규정 401(k)는 이 제도가 고소득근로자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연불비율(deferral percentage)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불비율에서 분자는 근로자가 현금 또는 연불형 이윤분배제도에 대한 본인 기여금이며 분모는 년간 총 급여이다. 401(k)규정에 의해 비선별적인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소득수준을 고소득층과 나머지소득계층으로 나눈 뒤 2계층의 연불비율을 비교하여 고소득층의 평균연불비율이 나머지소득계층의 평균연불비율의 1.2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소득층의 연불비율이 저소득층의 연불비율의 2배를 넘지 않고 두 비율간 차이가 2%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고소득근로자의 년간 개인기여금의 연불액 한도를

$7,000로 정해 놓고 있다.

5) 우리사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제도는 확정갹출형 제도이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이윤분배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참여의식을 갖게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순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완전공개에 가까운 기업을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 몇몇 대주주에 의해 소유된 형태로 폐쇄형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폐쇄형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경쟁사 등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일부분을 분사시켜 독립시키는데도 유용한 제도이다. 기업의 기여와 주식소유에 따른 이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반면 기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6) 키호플랜(Keogh Plans)

키호제도는 자영자, 개인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며 확정갹출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2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세법에 의해 근로자만이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적연금이나 이윤분배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 자영자고용안정법(Self-Employed Individuals Retirement Act of 1962)에 의해 키호제도가 도입되었다. 키호제도는 뉴욕주 하원의원인 Eugene Keogh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어 키호제도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제도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962년 도입당시 자영자나 개인전문직종사자들의 년간 기여금은 $2,500로 제한되었다. 자영자나 개인전문직종사들은 자신들의 기여금을 과다한 수준으로 정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누릴 것을 염려한 조치이다. 그러나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TEFRA)에 의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금제도와 키호제도(Keogh Plans)에 대한 차별조항이 없어졌다.

현재는 자영자 총소득의 25%이하 또는 $30,000이하로 제한 받고 있다. 자영자 A가 종업원 2명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기여율이 10%인 자영자 A의 키호플랜(Keogh Plan)에 대한 본인기여금산출은 아래와 같다.

$ 150,000(총매출) - $ 50,000(비용)= $100,000(소득)

$$\frac{\text{본인기여율}(\text{소득}-\text{종업원기여금})}{1+\text{본인기여율}} = \frac{0.1(\$100,000-\$4,000)}{1.1} = \$8,727.27$$

第 3 節 企業年金의 導入과 最適勤勞者寄與率選擇

기업연금제도로 인한 세제혜택의 규모는 고소득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만을 고려한다면 저소득근로자나 고소득근로자 모두 기업연금을 이용하여 근로자분 기여금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두 계층간 기업연금 기여율은 달라질 수 있다.

1. 所得階層別 國民年金의 所得代替率差異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이 수지균등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평균소득자에 해당하는 월소득 129,000원(26등급)인 근로자가 9%의 보험료를 납임하고 35년 가입에 약 53%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에 가입되었다면 9%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35년 가입에 생애평균소득의 27%[11]내외의 소득대체율 밖에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은 평균소득자보다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으므로 전 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높은 수익률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보험료수준에서는 현세대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아닐 수 없다.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고소득층의 경우 이자율의 가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오히려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래 <表 5-15>은 국민연금의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보수월액 기준으로 최고등급인 45등급자는 35년 가입에 약 36%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있다.

11) 확정각출형연금제도 에서의 소득대체율은 이자율과 임금상승율에 따라 달리 추정될 수 있음. 27%의 소득대체율은 임금상승율 4% 이자율 4%를 가정한 경우임.

〈表 5-15〉 國民年金의 標準所得等級別 所得代替率

(단위: 원)

등급	표준소득 월액	보험료[1] (원)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소득대체율				완전노령연금 (30년가입)
			20년	30년	35년	40년	
1	220,000	19,800	0.86	1	1	1	220,000
5	260,000	23,400	0.79	1	1	1	260,000
10	370,000	33,300	0.67	1	1	1	370,000
15	570,000	51,300	0.50	0.75	0.87	1	427,790
20	850,000	76,500	0.38	0.57	0.67	0.77	490,790
25	1,210,000	108,900	0.31	0.47	0.55	0.63	571,790
30	1,660,000	149,400	0.26	0.40	0.47	0.54	673,040
35	2,190,000	197,100	0.23	0.36	0.42	0.48	792,290
40	2,800,000	252,000	0.21	0.33	0.38	0.44	929,540
45	3,600,000	324,000	0.20	0.31	0.36	0.41	1,109,540

註: 1)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것임.

아래 <表 5-16>은 확정갹출방식의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표준보수월액 최고 등급자(45등급)가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서는 이자율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이 각각 4%, 6%일 때와 5%, 6%일 때 확정갹출방식에서 36%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위해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각각 7.2%와 8.6%로 국민연금보험료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정하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인 9%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9%의 보험료를 내고 35년 가입에 36%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것과 확정갹출형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표준보수월액 최고등급자의 경우 이자율의 가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12%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표 5-16>의 모든 경우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게됨을 알 수 있다.

〈表 5-16〉 標準報酬月額 最高等級者(45等級)의 確定醵出 保險料

(단위: %)

거시변수 가정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율	이자율	임금 상승율	이자율
	4	4	4	5	4	6	5	5	5	6
보험료율	12		9.5		7.2		11.2		8.6	
소득대체율	36		36		36		36		36	

註: 확정각출연금의 가입기간은 35년, 수급연령은 62세이며 평균기대여명 17년 동안 수급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임.

표준 보수월액25등급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가 12%로 인상되는 경우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이 각각 4%, 6%일 때 사적확정각출연금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9%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게 추정된다.

〈表 5-17〉 標準報酬月額 25等級者의 確定醵出 保險料

(단위: %)

거시변수 가정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4	4	4	5	4	6	5	5	5	6
보험료율	18.5		14.5		11.2		17.5		13.5	
소득대체율	55		55		55		55		55	

註: 확정각출연금의 가입기간은 35년, 수급연령은 62세이며 평균기대여명 17년 동안 수급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임.

표준 보수월액이 15등급이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가 18%이상 인상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사적확정각출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민간의 사적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분 기여율은 최소한도로 낮게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5-18〉 標準報酬月額 15等級者의 確定醵出 保險料

(단위: %)

거시변수 가정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률	이자율	임금 상승율	이자율	임금 상승율	이자율
	4	4	4	5	4	6	5	5	5	6
보험료율	29		22.5		17.5		26.5		21	
소득대체율	87		87		87		87		87	

註: 확정각출연금의 가입기간은 35년, 수급연령은 62세이며 평균기대여명 17년 동안 수급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임.

2. 企業年金下에서 最適勤勞者寄與率

앞에서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에서 설명되었듯이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근로자분 기여를 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연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근로자들이 기여율을 높여 과다하게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기여율에 대한 최고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현재의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적립률 8.3% 이외에도 근로자분 기여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는 당해 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금급여를 수급할 때 과세대상이 되도록 설계될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도 고소득근로자와 다른 소득계층 근로자간 근로자분 기여율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表 5-16>에서와 같이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최고등급자의 경우 이자율과 임금상승률의 가정에 따라서는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12%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

우 모든 거시변수가정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사적확정갹출형 연금의 수익률보다 낮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이 기업연금으로 전환되고 법정퇴직금 적립률인 8.3%에 추가적으로 근로자기여가 허용되는 경우 고소득근로자들은 가능한한 많은 부분의 급여를 기업연금으로 전환시키고자 할 것이다. 평균소득이하인 근로자들의 경우 <表 5-15>에서와 같이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소득대체율 수준이 월등히 높아 사적연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율이 고소득근로자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12%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고소득근로자의 기업연금 기여율이 허용 한도내에서 최고수준이 됨을 아래의 생애주기모델(life-cycle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

근로자의 일생을 근로기간 (0~R)과 은퇴기간(R~T)로 이분되는 생애소득극대화함수를 식 1)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V=\int_0^R (W-(1-\alpha)W-\alpha\Theta W)dt=\int_R^T (P(R,(1-\alpha)W)+g(R,\alpha W))dt$$

1)

기업연금이 확정갹출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int_0^R (1-\alpha)W=\int_R^T P(R,(1-\alpha)W)dt$ 관계가 성립하므로 식 1)은 아래 식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V=\int_0^R (W-\alpha\Theta W)dt+\int_R^T g(R,\alpha W)dt \qquad 2)$$

$$st.\ \ \alpha-\alpha^L\geq 0,\quad \alpha^H-\alpha\geq 0\ ([\alpha^L,\alpha^H],\ \alpha^L>0,\ \alpha^H<1)$$

Θ: 국민연금보험료율, W: 임금, R : 국민연금가입기간, α : 최적기업연금기여율

α^L: 기업연금최저기여율, α^H: 기업연금최고기여율

식 2)는 근로기간 중에는 W만큼의 임금을 받고 (1- α)W를 기업연금에 기여하고 ΘW 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 $g(R,\alpha W)$의 국민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생애주기모델로 표현한 것이다. 기업연금의 최적기여율을 구하는 Lagrangian 방정식은 아래 식 3)과 같다.

$$L=\int_0^R (W-\alpha\Theta W)dt+\int_R^T g(R,\alpha W)dt+\lambda^H(\alpha^H-\alpha)+\lambda^L(\alpha-\alpha^L)$$

3)

$$\frac{\partial L}{\partial \alpha}=-\int_0^R \Theta W dt+\int_R^T g'_{\alpha}(\circ)Wdt+\lambda^L-\lambda^H=0$$

$$\frac{\partial L}{\partial \lambda^L}=\alpha-\alpha^L\geq 0$$

$$\frac{\partial L}{\partial \lambda^H}=\alpha^H-\alpha\geq 0$$

$$\lambda^H\geq 0,\ \lambda^L\geq 0$$

$$\lambda^H(\alpha^H-\alpha)=0,\ \lambda^L(\alpha-\alpha^L)=0$$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2% 이상인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표준 보수월액 최고등급이 45등급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한계수익률은 음(-)이 됨을 위의 <표 5-16>에서 설명되었다.

$$\int_R^T g'_{\alpha}(R,\alpha W^H)dt-\int_0^R \Theta W^H dt<0$$

4)

반면에 국민연금의 표준 보수월액 중위등급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한계수익률은 양(+)이 되는 것을 위의 <表 5-17> 과 <表 5-18>에서 설명하였다.

$$\int_R^T g'_{\alpha}(R,\alpha W^L)dt-\int_0^R \Theta W^L dt>0$$

따라서 고소득근로자집단 W^H의 경우 λ^L 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lambda^L > 0$ 이 되고 $\alpha = \alpha^L$ 가 됨을 알 수 있다.

저소득근로자집단(W^L)의 경우 λ^H는 0이 될 수 없고 $\lambda^H > 0$이 된다. 따라서 $\alpha = \alpha^L$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저소득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급여의 많은 부분을 국민연금의 보험료산정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나,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산정대상 급여를 낮추고 그 대신 기업연금의 기여율을 높여 절세의 효과를 높이려 할 것이다.

第 6 章 公私年金制度間 役割分擔을 위한 制度改善

第 1 節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1. 年金制度改善의 必要性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구성요소와 제도로써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각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법화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제도간 연계성이 미흡하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특수직역연금이 도입되어 발전되어 왔고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제도간 연계가 논의되지 않았다. 제1장의 공적연금제도의 현황에서 밝힌바와 같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제도가 도입된지 12년내외 이지만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위기를 교훈삼아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90년대 중반부터 국내학자들 사이에 일기 시작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제 3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급여구조로는 극심한 후세대전가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특수직역연금과 같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는데 있어 급여구조의 기본방향은 제4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고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

제2장에서 분석한대로 적정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료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각기 연금제도별로 개선과 함께 공적연금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여산식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年金制度의 持續可能性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로 인한 연금기금의 고갈이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 국민들의 제도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대신 급여는 생애평균대비 70%(40년 가입 기준)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의 지속불가능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997년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권고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정책결정과정에서 60%로 인하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여전히 기금고갈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공사연금제도실무위원회가 4개의 개선안[12]을 도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4개안은 장기적인 재정안정 즉 기금고갈의 문제는 해결하고 있으나 부담의 후세대 전가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세대에서도 지속가능 해야하며 다음세대에도 지속가능 해야만 한다. 현세대의 기금고갈문제를 다음세대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해결한다면 연금제도는 지속가능 할 수 없다. 현세대가 높은 보험료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도 높은 보험료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으로는 연금제도를 지속

12) 공사연금실무위원회보고서, 2000.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없다. 급여수준이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도 정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은 정해진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현 가입자들의 높은 보험료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다음세대가 보험료납부를 거부한다면 연금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붕괴가 바로 과도한 후세대 전가가 연금제도의 지속불가능을 야기 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급여수준은 최종소득대비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전세대 가입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수준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보험료의 인상도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미온적인 수준에 그쳐 결국 연금제도가 위기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급여와 보험료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표소득 대체율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현세대부터 부담해야만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져야할 적정소득 대체율을 40%(35년 가입기준)로 책정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수준인 13.5%를 200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流動性制約 解決을 위한 水平的保障體系

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역할을 분담하여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

터 5년에 1년씩 수급연령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특수직역연금은 수급연령을 정하지 않고 20년 이상 가입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고 2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인해 1996년 이후 가입자인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수령하도록 되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은 60세 이후에 급여를 수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적연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수급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선안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층보장체계는 보장수준을 여러 층에 걸쳐 보장하는 수직적인 개념만이 강조되었고 가입자의 유동성 제약 등을 고려한 수평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수평적 보장체계는 가입자의 생애주기별로 공·사연금의 수급시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주어 가입자의 유동성제약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희망수급시점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희망수급시점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크게 직역별로 수급시점을 달리 정하여 수급자의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앞에서도 분석된 바 있지만 직역을 크게 자영자와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고 근로자를 다시 공적연금 대상자와 민간사업체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퇴직시점을 비교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영자에 비해 짧은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자영자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업에 종사할 수 있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위탁운영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퇴직이나 은퇴는 없는 것이 다름이 없다. 반면에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직장을 퇴직해야하며 그 시점은 민간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보다 빠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직역별로 다른 퇴직 또는 은퇴시점을 감안하여 1층 보장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60세부터 수급이 가능

하게 하며 2층 보장인 사적연금(각종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기간은 10년으로 정하였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시점을 55세 이후로 연기할 수 있으며 수급시점부터 10년간 수급할 수 있다.

4. 制度間 連繫

현재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가입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더 유연화되는 경우 직역간 이동이 빈번히 일어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가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일치시킴으로써 제도간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연금제도간 소득대체율의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급시점도 각기 다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도간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통일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 연계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다.

第 2 節 持續가능한 老後所得保障體系

1. 2層 保障體系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1층으로 하고 사적연금을 2층으로 하는 2층 보장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층 외의 소득보장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자산처분에 의한 소득, 기타 금융자산, 가족·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공식적인 보장체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노후소득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며 아래 [圖 6-1]과 같다.

〔圖 6-1〕 老後所得保障體系圖

<table>
<tr><td rowspan="2">2층 보장</td><td>70%
(10%)</td><td>기업연금
(30%)
기업: 8.3%
본인: 1.7%</td><td>자영자
퇴직연금
(30%)
본인: 10%</td><td>공무원퇴직연금
(30%)
정부: 8.3%
본인: 1.7%</td><td>교직원퇴직연금
(30%)
법인: 8.3%
본인: 1.7%</td></tr>
<tr><td rowspan="2">1층 보장</td><td rowspan="2">40%
(13.5%)</td><td colspan="2">국민연금
(40%)
사업장가입자: 본인:6.75%
사업주:6.75%
자영업자: 본인 13.5%</td><td>공무원연금
(40%)
본인: 6.75%
정부: 6.75%</td><td>사학연금
(40%)
본인: 6.75%
정부: 6.75%</td></tr>
<tr><td></td><td>근로자</td><td>자영자</td><td colspan="2">공적직역</td></tr>
</table>

註: 1)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 소득대비 기준임(35년 가입기준).
2) 자영자의 퇴직연금은 비강제 가입임.

2. 年金制度別 制度改善內容

가. 國民年金의 制度改善內容

1) 所得代替率水準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생애평균소득대비 60%(40년 가입기준)에서 40%(35년 가입기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과거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수준이 13.5%보다 낮았던 수준만큼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한다. 1988년 가입하여 35년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88년부터 1992까지는 3%의 보험료율을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의 보험료율을 그리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9%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므로 35년 가입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닌 30%[13]가 된다. 또한 1988년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더라도

1988년 당시 39세인 경우 2008년에 20년 가입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가입기간단축 및 보험료납부액 부족분에 상응하는 소득대체율의 감소가 따라 40%가 아닌 12.5%가 된다.

〈表 6-1〉 加入年度에 따른 所得代替率

가입연도	1988	1992	2000	2006
소득대체율(%)	30	32.4	36	40

註: 35년 가입 사업장가입자 기준

〈表 6-2〉 1988年 加入者의 加入期間에 따른 所得代替率

수급연도	2008	2013	2018	2023
가입기간	20	25	30	35
소득대체율(%)	12.5	18	23	30

註: 1988년 가입된 사업장가입자 기준

2) 保險料率

보험료율은 현재 9%수준에서 13.5%로 인상된다. 인상시점은 2001년부터 시행해야만 하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2005년에 같아지므로 현실적으로는 2006년에 13.5%로 인상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6.75% 사업주가 6.75%씩 부담하게 된다.

3) 受給時點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은 2013년 이후 5년에 1년씩 상향조정하여

13) 보험료율에 따른 소득대체율추정은 부록 참조.

2038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한다.

4) 制度間 連繫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특수직역으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가입당시의 년간소득과 가입기간을 특수직역연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도 제도간 연계를 용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자격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가입자의 보험료납부총액과 납부당해연도 운영수익률을 적용하여 자산이전을 실시한다.

나. 公務員·私學年金의 改善內容

1) 所得代替率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기준으로 70%가 되도록 한다. 공무원연금은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이분화되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40%이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이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기존의 사학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이분화되며 사학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그리고 퇴직연금은 30%가 되도록 한다.

2) 保險料率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13.5%가 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가 6.75% 공무원이 6.75%씩 부담하게 된다. 소득대체율 30%를 보장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10%이며 정부가 일반사업체의 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8.3%를 부담하고 1.7%를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는 총 23.5%이고 본인이 8.45%를 부담하고 정부가 15.05%를 부담하여 생애소득대비 70%의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킨다. 공무원 본인의 부담은 현재 7.5%에서 0.95% 증가하게 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사학연금은 정부와 본인이 6.75%씩 부담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이 8.3%를 부담하고 본인이 1.7%를 부담한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부담은 현재 7.5%에서 8.45%로 0.95% 증가하게 된다.

〈表 6-3〉 加入期間에 따른 退職年金의 所得代替率

가입기간[1]	20	25	28	30	35
소득대체율(%)[2]	20	26	30	31.2	36
수급연령	55	55	55	57	62
수급기간	13	13	13	13	13

註: 1)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일시불을 지급함.
2)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기준임.

3) 受給時點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기존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한 것은 지급시점을 달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 이후 지급되며 2013년부터 수령연령을 1세씩 상향조정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기간은 수급개시 후 13년으로 한정한다. 수령시점을 55세로 한 이유는 퇴직 등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퇴직금과 같이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식으로 보전하기 위함이다. 수급기간을 한정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 30%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보험료율 10%로 35년 가입하여 소득대체율 30%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대여명이 17년이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평균가입연령을 27세로 가정하는 경우 55세까지는 28년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35년이 아닌 28년인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3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급기간을 제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급기간은 수급시점이후 13년이 된다.

4) 制度間 連繫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었던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경우 특수직역가입당시 년간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을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企業年金의 改善內容

가. 退職金制度의 企業年金化

현재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는 퇴직금을 점차적으로 기업연금으로 전화해 나간다. 공·사연금간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적립금 8.3%와 근로자의 기여 1.7%를 합하여 기업연금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업연금화 과정에서 필요한 퇴직적립금의 사외적립은 신규채용자와 현시점으로부터 20년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한 적립금분은 사외적립을 하여 이들에게는 일시불 형태의 퇴직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사업체와 근로자기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조)가 협의하여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연금을 구매하도록 한다.

나. 保險料率

보험료율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과 동일한 10%이며 사업체가 8.3%(퇴직적립금) 그리고 근로자가 1.7%를 추가로 기여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다. 所得代替率

소득대체율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과 동일하여 28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30%를 목표로 한다.

라. 受給時點

수급시점도 공무원의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55세 이후로 정하였다. 일반기업체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시점이 자영업자 보다 빠르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보다 빠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60세 이전에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기업연금형태로 55세부터 지급하여 부족한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급시점을 55세로 정한 근거이다.

마. 企業年金, 個人年金(自營者退職年金), 特殊職域退職年金間 連繫

사업체근로자가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 또는 직역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기관간의 정산을 통하여 연금가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납부 해당연도의 운영자산 수익률을 적용하여 금융기관간 정산을 가능토록 한다.

4. 個人年金의 改善方案

가. 個人年金에 대한 稅制惠澤

자영자의 경우 사업체종사 근로자와는 달리 퇴직적립금을 부담해 불수 있는 사업자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에 부가하여 소득대체율 70%를 이룰 수 있다. 자영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퇴직시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55세 전후로 하여 유동성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적다. 다만 사업의 운영상태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는 자영자가 55세 이후에도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개인연금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강력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자영자 퇴직연금과 같은 상품을 구매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로 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3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영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은 부여하지만 강제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영자가 자영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임금의 10%(연간 약 1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가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나. 保險料率

기업연금,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퇴직연금의 수준과 동일한 10%로 한다.

다. 所得代替率

소득대체율도 타 직역의 기업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동일한 30%로 한다.

라. 受給時點

수급시점도 기업연금과 동일한 55세부터로 하고 20년 가입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시불을 지불하되 소득공제 되었던 만큼 세금을 납부한 잔액을 지급한다.

參 考 文 獻

김현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도현황」,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내부자료, 199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8.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 연금확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개선』, 1997.

_____, 『전국민 연금확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개선』, 자료집, 1997.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9.

_____, 『국민연금법령집』, 1999.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금융감독원, 『1999년도 은행경영통계』, 1999.

금융경제연구원, 『주간 금융동향』, 1995. 4. 15~21. p.17.

노동부, 『사업체 실태 조사보고서』, 각연도.

박영범,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1992.

_____,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연구』, 1998.

_____,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1998, p.33

_____,『3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997

_____,『미국의 기업연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7.

윤석명,『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은행감독원,『은행경영통계』, 2000.

재무부, 생명보험협회,『생협』, 각호.

최병호,『공적연금의 부채·자산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최재식,『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통계청,『도시가계조사』, 각연도.

Everett T. Allen, Jr. Joseph J. Melone, Jerry S. Rosenbloom, Jack L.VanDerhei, *Pension Planning*, IRWIN, 1992.

McGill, Brown, Haley, Schieber,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 seventh edi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7.